

제420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12월23일(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4)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3)
- 지방행정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046)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5)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6)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2)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5)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2)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2)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2)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0)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0)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1)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3)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1)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3)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8)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61)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6)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9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1)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6)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3)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0)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2)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8)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9)
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5)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7)
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5)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4)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8)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8)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1)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7)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5)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8)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2)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5)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3)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3)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1)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6)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9)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4)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11)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5)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83)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2)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5)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4)
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3)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4)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0)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66)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01)
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6)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84)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5)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7)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7)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141)
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8)
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5)

-
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4)
 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9)
 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6)
 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0)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2)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6)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9)
 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9)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8)
 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6)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98)
 7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3)
 8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옹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5)
 8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1)
 8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37)
 8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0)
 8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6)
 8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4)
 8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7. 현안 질의
 88. 현안 질의 관련 서류제출 요구의 건(추가)
-

상정된 안건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6
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4) 6
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3) 6
4.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046) 6
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5) 6
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6) 6
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2) 6
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5) 6
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2) 6
1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2) 6
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2) 6
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0) 6
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0) 6
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1) 6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3)	6
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1)	6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3)	6
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8)	6
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61)	6
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6)	7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94)	7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1)	7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6)	7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3)	7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0)	7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2)	7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8)	7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9)	7
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5)	7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7)	7
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5)	7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4)	7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8)	7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8)	7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1)	7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7)	7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5)	7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8)	7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2)	7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5)	7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3)	7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3)	7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1)	7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6)	7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9)	7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4)	7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11)	7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5)	7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83)	7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2)	7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5)	7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4)	7

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3)	7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4)	7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0)	7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66)	7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01)	7
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6)	7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84)	8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5)	8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7)	8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7)	8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141)	8
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8)	8
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5)	8
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4)	8
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9)	8
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6)	8
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0)	8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2)	8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6)	8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9)	8
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9)	8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8)	8
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6)	8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7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98)	8
7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3)	8
8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5)	8
8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1)	8
8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37)	8
8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0)	8
8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6)	8
8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4)	8
8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87. 현안 질의	11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33
88. 현안 질의 관련 서류제출 요구의 건	134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신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심사기간이 도과한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지난주 내내 법안심사소위원회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지방세 관계법을 의결한 후에 현안질의의 건을 상정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0시14분)

○위원장 신정훈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9건의 청원 심사 중 4건의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이 경과하였습니다.

위원회가 150일 이내에 청원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회법 125조 6항에 따라 의결로써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청원 4건의 심사기간을 연장하고 심사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4)

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3)

4.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046)

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5)

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6)

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2)

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5)

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2)

1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2)

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2)

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0)

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0)

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1)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3)

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1)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3)

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8)

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61)

-
- 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6)
 -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94)
 -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1)
 -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6)
 -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3)
 -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0)
 -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2)
 -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8)
 -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9)
 - 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5)
 -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7)
 - 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5)
 -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4)
 -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8)
 -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8)
 -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1)
 -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7)
 -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5)
 -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8)
 -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2)
 -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5)
 -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3)
 -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3)
 -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1)
 -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6)
 -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9)
 -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4)
 -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11)
 -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5)
 -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83)
 -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2)
 -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5)
 -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4)
 - 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3)
 -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4)
 -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0)
 -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66)
 -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01)
 - 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6)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84)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5)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7)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7)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141)
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8)
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5)
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4)
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9)
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6)
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0)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2)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6)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9)
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9)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8)
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6)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98)
7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3)
8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5)
8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1)
8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37)
8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0)
8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6)
8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4)
8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15분)

○위원장 신정훈 의사일정 제2항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86항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85건의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건영 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윤건영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중 신고·납부 세목에만 해당되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라는 표현을 삭제하면서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는데 동 개정 내용은 단순 표현 변경이므로 적용례를 삭제하면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매 개찰 후 낙찰자가 다른 법령상 자격을 미구비한 경우 매각결정 기한을 10일 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인데 해당 자격의 취득이 낙찰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 매각결정 기한의 추가연장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제도의 시행을 3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만큼 연기하고 있는데 이를 2027년 1월 1일까지 2년만 연기하면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소위원회으로 말씀드리면 3일 가까이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여야 합의로 모든 법안들을 처리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행안부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도 3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행정실 그리고 전문위원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감사합니다.

윤건영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소위 위원님 모두 지난 사흘간에 계속되었던 법률안 심사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신청한 위원님들에 대해서 실시하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이번에 저희들이 담배소비세 가지고 소방의 소방안전교부세를 12월에 일몰될 것을 75% 고정을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통상적으로 지방에 관련된 거는 지방에 다 위임하자가 우리 행안위원들 1법안소위의 다 같은 의견이었습니다마는 저는 작년에…… 작년이 아니지요. 24년 1월 31일입니까, 문경 육가공공장에서 화재가 나서 두 명의 소방관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기리는 마음에서 이번에 법안을 냈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지방의 광역단체장들에게는 재정의 권한이 자율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축소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안위 위원들이 그동안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소방관들의 순직도 기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조금, 지방행정의 자율성을 침해하면서까지 법제화시켰다는 것을 전국 소방공무원께서는 아시고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허석권 소방청장 이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장 허석권 소방청장입니다.

법안소위에서 가결된 안은 앞으로 우리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방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원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이달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전국 6만 7000여 소방공무원과 10만 의용소방대원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업무에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개별 법률안 의결에 앞서서 오늘 상정된 안건 중에 비용추계서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서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하는 일부개정법률안들은 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축조심사를 거친 점을 고려해서 국회법 제58조 5항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부가 제출한 지방행정제재 그리고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9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76항까지 이상 66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의사일정 제77항 지방세특별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8항부터 85항까지 이상 8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의사일정 제86항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법률안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부 측으로부터 간단히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지방세에 납세자의 권리 강화에 관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특례를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지방세입 관련 법률안을 포함하여 6건의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안을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소관 법안을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3일 동안의 심도 있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원활하고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해 주신 윤건영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님과 합리적 대안을 함께 모색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의결된 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87. 현안 질의

(10시26분)

○위원장 신정훈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7항 현안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건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신정훈 예.

○윤건영 위원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진화위원장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짓밟힌 내란 범죄가 일어나고 나서 불과 사흘 만에 윤석열 대통령은 진화위원회장을 임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본인의 탄핵을 대비한 보험용 인사다라는 의혹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임명된 진화위원장과 가까운 인척이 헌법재판소의 주심 재판관을 맡아서 그러한

의혹과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많습니다. 탄핵 기각을 위해서 무슨 수를 쓰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처지에서는 어떻게든 끈을 만들어 두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명백한 위헌과 위법적인 사안이기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뜻을 거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진화위원장 임명은 한마디로 비정상적인 인사입니다. 정상적 상황이라 하더라도 문제적 인사로 인해서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비정상적 상황에서 문제적 인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원천 무효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란주범의 보험용 인사는 있어서도 안 되고 용인해서도 안 됩니다.

위원장님께 견의드립니다. 오늘 박선영 위원장을 현안질의 시간에 이대로 둘 것이 아니라 퇴장을 명령해 주시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용혜인 위원 동의합니다.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정훈 예.

○조은희 위원 오늘 여야가 원만한 합의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행안위 전체 회의가 열리게 된 것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연말에 꼭 처리돼야 하는 민생 회복을 위한 필수 법안입니다.

지난주 관련법 논의를 위해 애써 주신 윤건영 법안1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야 1소위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엄중한 정국이지만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생과 경제의 활력을 되살릴 수 있는 돌파구 마련을 위해 본 위원과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들께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소모적인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서로가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해 상대를 공격하고 편파하는 일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간사님께서 진화위 위원장님에 대해서 인척 관계를 들어서 퇴장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에는 자식도 부부도 제 맘대로 안 되는 세상입니다. 그걸 가지고 새로 임명된 위원장님에 대해서 너무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또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면 우리 위원회가……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하는데 우리 위원회의 성숙한 의식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일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지난 13일 현안질의가 여야 합의 없이 개최된 점에 대해서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국회는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인 주장으로 밀어붙이고 장관급 인사에 대해서 퇴장 조치한다면 정치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민주주의의 정신은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며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자가 모든 것을 갖고자 하는 올 오어 너싱(all or nothing)의 정치를 끝내야 합니다.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권력 독점은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의혹 또 야당이 제기하는 커넥션 등에 대해서도 질의를 통해서 밝히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논란의 중심이 돼 있는 선관위의 쟁점에 대해서도 여야가 국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연말연시 경찰 민생 치안도 국민의 입장에서 처리해 나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살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행안위가 모범이 되어 민의가 반영되는 상생과 협력,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는 그런 배려의 장으로 거듭나기를 간곡히 바라며 저를 비롯한 우리 국민의 힘 여당 위원들도 정치 복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정춘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생 위원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저 역시 윤건영 간사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조은희 간사께서 집안의 문제, 부모와 자식 간의 예를 든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분명히 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박선영 전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내란을 진행 중인, 내란 현행법이 임명을 한 인사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SNS 글을 보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면서 ‘파렴치한 범죄자를 처리를 못 했기 때문에 오늘날 나라가 이 모양이다’ 그러면서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자들이 판치는 대한민국, 청소 좀 합시다, 청소 좀 하고 살자’ 그러면 서 윤석열의 내란에 동조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5·16 군사 쿠데타 부분에 대해서도 찬양을 하는 듯한,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한 이러한 말들을 했기 때문에 정말 과거사를 정리하고 과거 국가 폭력에 대해서 회생된, 피해를 본 그분들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를 보듬고 치유해 주는 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출석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당연히 퇴장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용혜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위원 저 따로 신청하지 않았지만……

정춘생 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란 이후에 행사된 임명권이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당장 임명 철회가 되어야 하고 부적절한 인사로서 본인이 그 자리를 고사했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3 내란 이후에도 내란을 동조하는 이야기들을 한다거나 이런 부적절한 언행들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요. 심지어는 본인의 출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유족들에 대해서 오히려 저것이 내란이고 국헌 문란이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퇴장이 아니라 박선영 위원장이 현재 진화위원장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부적절한 자리에서 물러나는, 임명이 취소되는 모든 방안을 행안위가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인신공격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박선영 위원장 임명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들 그리고 국민들의 문제 제기들을 인신공격으로 치부하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께서 합당한 조치를 내려 주시기를 그리고 퇴장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위원장으로서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으므로.

윤석열 정부가 지금 탄핵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각종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핵심적인 원인은 인사에서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위 말해서 국정 운영에 있어서 참모들이라든가 해당된 직위를 맡은 당사자들의 직무 수행이 정말 편파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된 그런 인사가 한둘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는 행안위 회의 과정에서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진화위는 불행한 역사 속에서 희생당한 피해 국민들의 그 상처를 어루만지고 역사의 진실에 접근하면서도 서로의 화해를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될 굉장히 엄중한 자리입니다. 역사 인식에 대한 편향은 정말 이 진화위원장만큼은 그런 자리가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단히 정말 포용적이고 화해를 주도해 나갈 그런 인사여야 되는데 박선영 위원장은 12월 3일, 12월 6일 탄핵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에 있어서도 정말 어쩌면 이런 발언을, 일반 국민도 하기 힘든, 당사자가 임용을 앞두고 있고, 임명을 앞두고 있는 그 당사자가 임명권자에게 이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언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진화위원장으로서의 처신, 뭔가 자격 이런 부분들을 의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대한 문제까지가 다시 한번 제기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2월 6일 날 탄핵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파렴치한 범죄자 처리를 못 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이다’,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자들이 판치는 대한민국, 청소 좀 하고 살자’ 저는 이 청소가 키링 필드라고 혹시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한국전쟁 전후에 희생된, 수많은 좌우익 대립 과정에서 희생당한, 법이 아닌 그 야말로 감정으로, 주관적인 어떤 의도로 희생당한 수많은 사람들을 보듬어 안아야 될 이 엄중한 자리에 임용이 될 대상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그 엄중한 시기에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탄핵이 그렇게 현법자로서의, ‘탄핵이 부결된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윤석열입니다’…… 그러면 탄핵됐으면 윤석열 아닌가요?

저는 공직자로서의 처신 그리고 진화위 위원장으로서의 처신, 후보로서의 처신 그리고 또한 지금 탄핵 과정에 있어서 임명 절차에 대한 그런 어떤 절차적 하자의 문제 제기, 충분히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조은희 간사님의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또 소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화위 위원장이 그런 처신과 절차적 하자에 대한 문제를 들어서 당분간은 진화위원회장을 저희들이 이 상임위원회에서 인정할 수가 없다는 의견들을 존중해서 진화위원회의 퇴장을 명합니다.

- 김종양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진화위원장님 퇴장해 주십시오.
- 이달희 위원** 일단 의사진행부터……
- 김종양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퇴장하기 전에……
- 위원장 신정훈** 퇴장 먼저 하고 하십시오.
- 이달희 위원** 퇴장하기 전에 주지요.
- 용혜인 위원** 퇴장하십시오.
- 이달희 위원** 퇴장하기 전에 먼저……
- 이광희 위원** 퇴장하세요.
- 정동만 위원** 위원장님, 임명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 이달희 위원** 일단 위원들 얘기 좀 듣고 하시지요.
- 박정현 위원** 위원장의 명령을 따라서 퇴장하십시오.
- 위원장 신정훈** 제가 진화위원장님 임명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회의장에서 퇴장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양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제 이야기 한번……
- 용혜인 위원** 일어나시지요. 위원장님이 퇴장을 명하시지 않습니까? 일어나세요!
- 위원장 신정훈** 박선영 위원장은 일어나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왜 앉아 계세요?
- 박정현 위원** 퇴장하십시오.
- 용혜인 위원** 일어나세요. 본인이 앉아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 위원장 신정훈** 국회법 제49조에 따른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겠습니다. 국회 경위께서는 박선영 진실·화해위원회장을 회의장에서 퇴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은희 위원** 퇴장시키기 전에 위원장님, 진화위원장의 발언을 한번 들어 보시지요.
- 윤건영 위원** 아니, 퇴장하는데 무슨 발언입니까?
- 위성곤 위원** 아니, 들을 이유가 없어요. 계엄에 대해서 사실상 찬성을 하고 있고……
- 김종양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얻고 합시다. 지금 이런 예민한 시기에……
- 위성곤 위원**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 들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 용혜인 위원** 퇴장하고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 박정현 위원** 위원장께서 명령하셨으니까 퇴장하시고 의사진행발언……
- 김종양 위원** 아니, 위원장님, 진행 좀 시켜 주세요.
- 이광희 위원** 위원님, 퇴장한 다음에 얘기하셔요.
- 위원장 신정훈** 의사진행발언 드릴게요.
- 정동만 위원** 간사님, 우리도 퇴장합시다.
- 용혜인 위원** 가세요, 그러면.
- 위성곤 위원** 왜 퇴장하십니까, 국민의힘 위원들은?
- 김종양 위원** 위원장님, 저한테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신……
- 위원장 신정훈** 예, 드릴게요.
- 정동만 위원** 왜 우리 퇴장을 못 해?
- 용혜인 위원** 가세요! 언제 회의에 들어오셨다고……

- 박정현 위원** 국민의힘은 진화위원장 대표입니까?
- 이달희 위원** 발언권 얻고 얘기합시다, 서로. 앉아서 하지 말고.
- 김종양 위원** 박 위원님, 제가 의사진행발언권 얻고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일단 빨리 퇴장하세요.
- 박정현 위원** 위원장님, 일단 퇴장시키고……
- 김종양 위원** 의사진행발언권을 제가 얻었습니다.
- 윤건영 위원** 발언하세요.
- 정동만 위원** 아니, 여야 간사 합의하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 윤건영 위원** 빨리 퇴장하세요, 빨리! 퇴장하시고 발언하시면 되잖아요.
- 김종양 위원** 지금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위원장님한테 드려야지 자꾸 위원들이 이래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 이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빨리 퇴장하셔요. 빨리 퇴장하시고 그리고 발언권 주시면 되겠습니다.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박선영** 저는 자의로 온 게 아니라 출석을 요구받고 왔습니다.
- 용혜인 위원** 나가세요! 나가시라고요!
- 이광희 위원** 빨리 나가세요! 듣기 싫으니까 빨리 나가시라고!
- 용혜인 위원** 나가시라고요! 본인이 지금 앉아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 윤건영 위원** 위원장이 퇴장을 명령했으니까 빨리 나가고 의사진행발언하시면 되지요.
- 김종양 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박선영 위원장에 대한 퇴장 명령은 법에 의한 그런 근거지요. 그런데 지금 박선영 진화위 위원장께서 임명과 관련해 가지고 절차적인, 법적인 위반이……
- 이광희 위원** 지금 발언권 얻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불이 안 들어와 있는데.
- 김종양 위원** 넣어 주세요.
- 위원장 신정훈** 김종양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양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가장 많이 들은 게 '법대로'였습니다, 법대로. 조금 전에 진화위원회장을 퇴장 명령하는 것도 신정훈 위원장께서 국회법을 들추어 보시고 법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진화위 위원장이 임명되는 데 있어 가지고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됐습니까?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런저런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저도 임명 과정을 쭉 찾아 보니까 문제가 없더라고요.

물론 적임자를 그 자리에 앉혔는지 안 앉혔는지에 대해서는 또 이런저런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법적으로 정상적으로 그 당시까지는 탄핵 의결이 되지 않은 대통령께서 임명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위원장 후보로 거론된 것은 제가 보니까 11월 달부터 한겨레신문 등 각 언론에서 박선영 위원장이 가능성이 높다고 그런 식으로 언론에 쭉 비춰지고 그랬었는데 아마 비상계엄 선포를 하고 나서 박선영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명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또 탄핵소추 되기 전에 임명을 했기 때문에 탄핵소추, 직무가 정지되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대통령 권한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법적으로, 절차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임명이었다는 이런 이유로 박선영 위원장을 퇴장시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소속돼 있는 당이 국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모든 게 법대로였잖아요. 법대로 임명한 게 문제가 있다 그런 것 같으면 동의를 하지만 법대로, 임명한 것이 법에 따른 것이다 하면 존중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니까 방금 퇴장 명령하신 것은 재고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광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계속되면 그러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김종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팩트체크를 해야 될 게 있어서……

○위원장 신정훈 제가 좀 정리할게요. 죄송합니다.

12월 5일에 행안위에서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계엄령 지시를 이행한 행안부장관이라든가 경찰청장 또 서울청장 또 이 자리에 있는 인사혁신처장님도 이 자리에 계셨지요? 그렇게 질타를 받고 불법적인…… 그런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일 날 대통령의 전화 한 통화로 인사혁신처장은 박선영의 진화위원장 임명을 전격 처리했어요.

저는, 이 문제가 합법·불법을 떠나서 지금 행안위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국가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진화위라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들 다 확인하셨을 겁니다.

마스크를 쓰고 와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겠다고 우겨 대는 직원 하나를 처리 못 하는 진화위, 진화위원회가 화해와 진실을 규명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진화위, 수많은 국민들의 대의기관이고 대표인 위원들의 회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이후의 후임자의 결정 과정이 어떻게 우리 위원회로서 그것을 용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화위원장 후보자 개인에 대해서도 심각한, 도저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발언을…… 정작 그 전쟁 상황 속에서 불법을 옹호하면서 국민적인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이 발언대를 보면서, 상식적인 일반인으로서도 할 수 없는 발언이에요.

저는 이게 합법적이나 불법적이나 이것을 떠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그 이전의 문제예요. 진화위 문제는요 이런 식으로 진화위가 굴러간다면 수많은 국민들에게 진실이 아니라 거짓을, 그리고 화해가 아니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임명권자가 그렇게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본 위원장은 그것을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선영 위원장을 대신해서 이옥남 상임위원이 기관석에 배석해 주실 것을 바라고, 탄핵 국면이 마무리된 이후에 위원회의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이 문제를 재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대신 배석하는 것은 저희들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퇴장

시키시고 빙자리로 놔두십시오.

○윤건영 위원 아니, 기관을 대표해서 누군가 있어야 되잖아요.

○위원장 신정훈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이달희 위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종양 위원 모든 사람들의 입맛에 다 맞는 그런……

○윤건영 위원 기관을 대신해서 누군가는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정훈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진화위 문제는 야당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당을 위해서도 그렇고 탄핵된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발언하고 함부로 경거망동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을 농락하는 그런 발언 하는 자리는 어떤 국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주의를 주셔야 되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본인의 입장이 좀 더 진화위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데 혼신의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는 별도 현안보고 없이……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정훈 이달희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 진화위원회께서 18대 국회의원도 하시고, 국회의원을 했다고 저희들이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14일 날 탄핵 찬성을 할 때에도 절차, 법치……

우리가 이렇게 가장 혼돈스러울 때는 정말 차근차근 법대로를 따져 보면서 그전에 무슨 발언을 했고 무엇을 하고, 그러면 들어와서 앞으로 일을 시켜 보고 그전에 했던 발언이 본인이 부적절해서 앞으로 잘할 수도 있고 또 편향된 상황에서 진실·화해위원회 와서 다 보고를 받아 보고 스탠스를 세워서 나는 이런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다…… 본인이 편향되지 않은 사고로 업무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첫째, ‘파렴치한 범죄자 이재명, 내란 혐의 윤석열’ 어찌 보면 두 분 다 지금 무죄 추정으로 해 가지고 끝까지 딱딱 따져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동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광희 위원 이달희 위원님, 지금 선 넘고 계세요.

○용혜인 위원 지금 내란이랑 그걸 같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란은 법대로 했습니까?

○이성권 위원 말 좀 들어 봐요.

○이달희 위원 동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용혜인 위원 내란은 법대로 하셨냐고요! 갖다 붙일 걸 갖다 붙이셔야지!

○이광희 위원 지금 최대한 자제하니까……

○이성권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하고 있으니까 좀 들어 봅시다.

○이달희 위원 지금 위헌·위법 이런 상황을 우리가……

○위원장 신정훈 들어 주세요.

○이달희 위원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해서 이게 통과돼서 현재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일 때 임명한……

그러면 왜 자꾸…… 정확하게 우리가 탄핵해야 된다, 국회가 탄핵해서 현재로 보내야

된다고 설득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지금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박선영 의원이 그전에 얘기했던 이런저런 얘기들이, 언론에서 노출됐던 얘기들이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의 소명의 기회도 주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 보고 판단하고 또 앞으로 일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추궁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 소명도 안 시켜 주고 그리고 또…….

이것은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법대로 해 봅시다. 법치국가 살려 봅시다. 위원님들이 좋아하시는 다수결 원칙, 계속 밀고 가실 겁니까? 법대로 한번 해 보시지요. 그리고 일을 편향되게 하면 그때 이렇게 퇴장시켜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광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정훈 그 정도로 하십시오. 이광희 위원님,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당 위원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나름대로의 본인의 의견을 말씀드린 거니까요 함께 감안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좀 생략하고 더 중차대한 현안이 있기 때문에 현안보고 없이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도 위원 한병도 위원입니다.

피의자 윤석열은 계엄부터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을 계속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어디 가 있습니까, 국회와 선관위를 불법 집단화하면서 군을 파견해 놓고? 평상시처럼 그렇게 자신감 있으면 지금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당당하다면? 평상시의 그 호기 있고 당당함은 어디 사라졌습니까?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김현태 대령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계엄 이후에 한 번 나타나서 ‘나는 지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김현태 707특임단장 대령은 나와서 어땠습니까, 국민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죄가 있고 법적으로 처벌받으면 내가 받고 아무 이유 없이 파견된 우리 부대원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내란수괴인 윤석열은 수방사 사령관, 특전사령관, 국정원 1차장 등이 이미 지시 사항을 국민들 앞에 다 발표했는데도 ‘나는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도 전연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님, 검찰에 두 번 조사 응하지 않았지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지금 진행 절차도 전연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조수사본부에서도 1차 통보하고 2차 출석 요구, 25일 했지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그렇습니다.

○한병도 위원 아마 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황 마찬가지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수사기관의 통보를 지금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공범들은 다 구속영장 발부됐고요. 그 수괴에 대해서 체포와 구속은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2차 소환에 불응을 하면 본부장님, 이제 체포영장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아시다시피 동 사건은 공조수사본부의 틀 내에서 이미 공수처에 이첩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차 소환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공수처에서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병도 위원 적절한 절차도…… 만약에 2차 소환도 응하지 않으면, 지금 공조수사를 하고 있지만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한다면 또 3차에도 응하지 않으면……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절차를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병도 위원 그 절차를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걸 빨리해야 되냐면 이미 통상 대통령실의 어떤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 아니고 사건의 성격 자체가 내란입니다. 그 수괴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수많은 증거들이 지금 그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 피의자를 소환해서 조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증거 인멸 이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김용현 국방부장관,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계엄 이후에 휴대폰 다 교체했잖아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예, 일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도 위원 일부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번번이 경호처에 지금 막혀서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그렇습니다.

○한병도 위원 그런데 걱정이, 비상계엄 이후에 비화폰으로 군과 경찰에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렸다고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그 서버 확보가 지금 굉장히 긴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혐의 입증의 스모킹 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그 서버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2차에 걸쳐서 압수수색 시도를 했지만 어쨌든 경호처가 불응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중요 자료에 대한 보존 요청을 하는 공문을 발송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병도 위원 그 서버 확보를 위해서 빨리 신속히 수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 체포조 지원 관련해서 수사기관 간의 갈등 때문에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될 필요가 있어서 몇 가지만 짧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위원님, 양해하시면 위원님 질의 후에 저와 수기국장이 좀 길게 정확한 팩트를 설명드리는 것이……

○한병도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 것은 단답을 좀 해 주세요. 단답으로만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예.

○한병도 위원 본부장님은 23시 7분으로 확인이 됩니다, 처음 보고를 받은 게. 그렇지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23시 한 5분경에 수사기획과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한병도 위원 그리고 방첩사에서 합수본 구성 시에 수사관 100명 파견, 여의도 안내인력 명단, 두 가지를 요청했는데 국수본부장님은 그때 보고를 받으신 건가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당시 출장차 제주도에 있었고요. 제가 그 사안을 처음 보고받은 것은 00시 38분경 수사기획국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최초 보고를……

○한병도 위원 그렇습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이미 조치 후에, 경찰청장께 보고하고 조치 후에 사후 참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병도 위원 그렇게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방첩사가 국수본에 처음 11시 7분에 청한 지 1시간 만에, 수사관 100명 파견을 요청한지 1시간 만에 국수본부장에게 보고로 올라갔던 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그렇지 않고요. 저희 실무 계장이 오늘 와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11시 한 32분경에 방첩사 실무자가, 저희 수사기획계장께서 인력 파견 관련해서 처음 요청을 받은 것으로 저는 확인했습니다.

○한병도 위원 그러니까 그걸 경찰청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경찰청장이 오케이를 해서 파견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수사기획국장이 경찰청장께 보고를 하고……

○한병도 위원 청장한테 보고를 했지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예, 그렇습니다.

○한병도 위원 그런데 왜, 이해가 안 가는 게 국수본부장님한테도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저는 출장 중이었고 수사 인력을 포함해서 경찰 인력을 포함한 총괄적인 책임자가 경찰청장이기 때문에……

○한병도 위원 조정관이 그 판단을 해서……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저는 그 이전에 전혀 전화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한병도 위원 그러니까 전화를 받은 적은 없지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예, 없습니다.

○한병도 위원 그런데 느낌이, 그래도 이 시간 동안에 조정관이 경찰청장한테 그렇게 판단해서 보고를 하더라도 수사 상부 라인인 본부장님께 보고를 안 한 것은 좀 패싱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러면 수사기획계장님 잠시만 나와 보세요.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잠깐만 끊어 주시고요.

○경찰청수사기획계장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입니다.

○한병도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방첩사 누가 전화했고, 그 사람 관동성명 기억하십니까?

○경찰청수사기획계장 이현일 예, 기억합니다.

○한병도 위원 누군가요?

○경찰청수사기획계장 이현일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이라고 했고요. 구 모모 중령이었습니다.

○한병도 위원 오케이.

방첩사가 명단 제공을 요청한 이유는 모르시는가요?

○경찰청수사기획계장 이현일 예.

○한병도 위원 그러면 그 통화 중에 체포조라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아니면 없었습니까?

○경찰청수사기획계장 이현일 체포조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한병도 위원 체포조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경찰청수사기획계장 이현일 예.

○한병도 위원 들어가 주세요.

다음에 수사기획조정관님, 잠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잠깐만 멈춰 주십시오, 시간.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입니다.

○한병도 위원 하나만 확인할게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본부장님께 보고하지 않고 본인이 판단을 해서 경찰청장에게 인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0명 지원 관련된 건 보고를 청장에게 했다는 거지요?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윤승영 예.

그 당시 상황은 12시에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가 있었고요. 제가 그 보고를 받은 시간은 11시 58분입니다. 약 2분 정도의 시간이 있었고요.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본부장님은 1박 2일 동안 제주도 출장을 나가 있었습니다—인력의 파견이나 이런 것은 최종적으로 경찰청장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경찰청장에 먼저 선보고하고 조치하고 사후에 후열을 하는, 참고 보고를 하는 이런 관례가 있습니다.

○한병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지금 한병도 위원님이 하신 것에서 전반적인 그 시간의 상황을 저와 수사기획관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향후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도 도움이 될까 생각돼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약 3분 내에서 간단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일 합동수사본부 100명이라든지 또 영등포서 10명, 5명·5명 파견을 제가 최초 보고받은 시간이 00시 38분부터 한 5분간 수사기획관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당시 수사기획조정관이 저에게 전화를 해 와서 지금 말한 대로 자정에 경찰청장 주재로 열렸던 경찰청 지휘 회의 분위기와 지시사항 그리고 연이어 열린 시도 청장과의 화상회의 지시사항을 저에게 먼저 보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방첩사에서 방첩사 실무자가 합동수사본부 구성에 대비해서 수사 인력 한 100여 명 준비를 요청했다고 하는 사실을 저에게 보고를 했고요. 이와 별도로 국회 주변의 현장 상황이 혼란하니 현장 안내 목적으로 영등포경찰서 인력을 한 5명·5명 해서 10

명을 요청해서 경찰청장께 보고를 드리고 그 지침을 받아서 방첩사에 이미 이 10명은 통보를 했다는 사실을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합동수사본부 구성 100명 인력 지원을 보고받았을 때 즉시 이것을 지원을 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엄격하게 법령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니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제가 아침에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응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 통화 당시, 수사기획관과의 통화 당시에 제 옆에는 다른 출장자들도 있었고 또 수사기획관 옆에는 국수본 내 다른 국장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들도 이 내용은 모두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수사기획국장이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윤승영 조금 전에 한병도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가 최초에 보고받은 시점은 11시 58분이고 그 즉시 경찰청장께 두 가지를 같이 보고드렸습니다.

11시 49분에 보고받았던 100명에 대한 사전 준비 요청, 그러니까 그 100명에 관한 것은 바로 보내 달라는 의미는 아니었고 합동수사본부를 차리게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 달라 이런 보고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 11시 58분에는 우선적으로 국회 쪽 상황이 안 좋으니까 안내하거나 할 지원 병력을 한 5명 정도 연락처를 달라, 이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먼저 경찰청장에게 선보고하고 지침을 받아서 바로 즉시 전화로 계장에게 지시를 하고 그 회의가 끝난 이후에 12시 한 이삼십 분 정도 돼서 내려와서 그때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있었던 일들을 보고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아마 계속적으로 질문이 나올 것 같으니까 참고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질의하기에 앞서 선관위에 자료 요구가 있는데요. 먼저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선관위 대변인이 지난 20일 아침에 MBC 방송에 나가서 선거법 제도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여당 간사실, 저희 의원실이지요. 당일 오후 4시에 아무런 언급도 없이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행위 관련 제도개선’이라는 문서를 사후에 이메일로 보내고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의원실은 계속 이메일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이메일이 왔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알아보니까 신정훈 위원장님실과 윤건영 간사님실에도 어떤 내용을, 이메일을 보내거나 내용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선관위가 오해를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여당 간사실과 야당의 특정 의원에만 사후에 이메일로 통보한 것은 선관위가 헌법 19조와 21조에 반하는 반헌법적인 국민 재갈 물리기 법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알리바이를 맞추기 위해서 한 것 아닌가, 또 야당의 특정 의원과 결탁해서 반헌법적인 재갈 물리기 법안을 추진한 것은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합니다. 선관위 법제과에서 ‘법안 검토 요청,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행위 관련 제도개선’ 제목으로 여야 의원에게 보낸 이메일의 발송 시간대, 그리고 이 법안을 마련하게 된 과정과 법안 내용을 하게 된 과정에서 어떤 의논이 있었는지, 또 여론의 공감대가 있었는지 이메일 발송 캡처본 자료와 함께 타임테이블을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위원장 신정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사무총장님께 여쭈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현수막 이중 잣대 논란인데요.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정연욱 땡땡땡’, 뭐 전국에 있습니다. 의원을 ‘내란공범’이라 하는 현수막은 괜찮다고 하고 정연욱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하는 현수막은 안 된다고 세 차례 얘기를 했지요. 그 이유는 조기 대선 가능성 커졌고 이재명 대표를 대선주자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낙선 목적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라고 하는데요.

총장님, 선관위는 탄핵 재판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조기 대선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렇지 않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런데 왜 이런 해석이 나갔는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조은희 위원** 짧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이 사안은 지금 의원실에서 현수막 관련 내용이 법 위반이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구두질의가 있었고 그 관계로 해서 저희 질의 담당자가 검토를 했는데 법문만 검토를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너무 이른, 선부른 결정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저희가 탄핵소추 의결 전 ‘재명아 감옥 가자’와 같은 플래카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영역 안에 있다고 해서 허용을 했었고요. 저희 기준은 통상적인 정당 현수막과 관련해서 법상 명백하게 제한·금지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제한하겠다고 지침을 밝혔는데 그러면 정당의 현수막과 같은 그런 부분보다도 오히려 254조 사전선거 운동에 대한 조문만 가지고 판단해서 그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간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저희는, 오늘 오후에 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긴급 안건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유권적인 해석 기준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하는 게 아직까지는 결연 안 된다고 하는 선관위 직원의 구두답변이 유효한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여러 각도로 판단을 해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잘 결정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조은희 위원** 아니요, 현재는 그러면 유효한 겁니까? 결연 안 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구두질의에 대한 답변일 뿐 그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부분은, 지금 잠정적인 조치는 그냥 보류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그 조치를 중단했다는 말씀이네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조은희 위원 감사합니다.

또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보통신망, 집회 및 시위를 이용하여 공연히 사전투표나 투·개표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10년, 최대 3000만 원 벌금형으로 강력 처벌하겠다’는 조항을 추가하겠다는 것이 선관위 입장으로 알려져 있는 데요.

이는 사실상 선관위 불신죄를 묻겠다, 선관위 투표 관리에 어떠한 의심도 품지 말라는 선관위 셀프 성역화법으로 오해받기 좋습니다.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소쿠리 투표 사태가 재발하면 비판할 수 없는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아닙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SNS나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하면 10년 이하 징역 처벌하고 싶다는 것이 선관위의 생각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렇지 않습니다.

○조은희 위원 또 나경원 의원이 ‘이러니까 부정선거 의심 지적을 받지’ 한 이 말이 SNS나 유튜브에 나가서 하면 10년 이하 징역 받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지금 얼른 말씀해 보십시오.

총장님, 이 법 개정 검토는 도대체 누구 생각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지금 진행된 내용은 제가 진행하라고 얘기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과거에 부정선거론자들이 2022 그 전서부터도 계속 제기를 해 왔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법적 조치를 취하는 부분이 선거 자유방해죄라든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정보통신망법 이런 부분들로 전부 고소·고발이 이루어졌는데 전체적으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전부 무혐의 결정이 났거나…….

○조은희 위원 총장님, 선관위를 의심한다고, 일부 국민들이 선관위가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한다고 해서…… 선관위 내부의 자정 작용부터, 그런 법 추진부터 먼저 해야지 이런 미묘한 시점에 선관위가 지금 탄핵 정국에 헌법재판소 판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조은희 위원 제기했다고 의심받지 않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지금 위원님 말씀에는 동의를 해서 저희가 저희 내부 위원회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점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 사과를 했고 개선 대책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시국 자체가 부정선거에 기반해서 이루어진

면이 있으니까 저희 선관위 자체에 대해서는 뭔가 이 부분에 또한 책임이 있어서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종전에도 부정선거론자들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조은희 위원 그러면 종전에 개선을 하셔야지요. 지금 이 시점에 한 것은 시점상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저희들이 지금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공감대가 형성이 됐으면 위원님들께서 좀 해 주시고, 이 사안은 기본적으로 처벌 법규로서 국민들의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면이 큽니다.

○조은희 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총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래서……

○조은희 위원 지금 여당 간사, 야당 간사, 위원장하고도 아무 논의가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은희 위원 방송에 먼저 나가서 하신 게 맞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현안질의 시간에 야당 위원님들로부터 질의가 있었습니다. 왜 부정선거론자들에 대해서 선관위가 조치가 미흡하느냐는 그런 질의가 있으셔서 지금 사안대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부정선거론자들을 대응하고 있지만 현행 법규 미비상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차라리 차제에 이런 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국가적인 혼란을 초래하는 이런 부분들을 범죄행위로 봐서 규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고, 거기에 관심을 표명하는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같이 논의를 해 보자는 말씀이 있으신 상황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과거에 연구했던 그 결과를 원하시는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상적으로 만약 행안위 입장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추진한다면 당연히 위원장님과 앙당 간사님한테 먼저 설명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겠지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관심을 가지신 분이 같이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해 보자라고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에게 인터넷상으로 자료만을, 저희가 가진 내부 자료만을 공유해 드린 겁니다. 그런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은희 위원 방송에 나가서 하는 건 뭐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야당 위원 중에 한 두 분 정도에 대해서 자료만 인터넷으로 보내 드렸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민감한 기관이다 보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원하시지는 않았지만 간사님께는 이런 부분의 자료가 위원님들한테 공유가 된다는 내용을 알려 드려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보내 드려라라고 지금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지금 돼 있다고 해서……

○조은희 위원 방송 얘기는 아직 안 하셨네요. 대변인이 왜 미리 하셨냐는 건 답을 안 하시네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러니까 대변인이 어떤 생각 때문에 그런 말씀

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취지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리고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한 부분은 우리 생각으로는 이런 정도가 좋은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를 묻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국민의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영역을 제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의 의견도 들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 공청회도 열어서 전체적으로 의견이 수렴돼야만 이와 같이 형사적 법규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지금 단시일 내에 이런 법률적인 조항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위원장 신정훈 정리해 주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시각의 그 부분이 중대한 국면인 만큼 빠른 시간 내에 이와 같은 논의가 활성화돼서 하기를 바라는 의미였을 뿐입니다.

○조은희 위원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 위원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국수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혹시 답변 시간이 부족하면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예.

○윤건영 위원 윤석열 씨가 지금 계속 소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25일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국수본에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틈을 보인다 그러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봄주기다라고밖에 볼 수 없겠지요. 만약에 25일까지 출석 안 하면 체포영장 청구하시겠지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일차적으로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주체가 공수처의 판단이지만 어쨌든 공수처와 저희가 조율을 한다면 적극적인 의사를 개진할 예정입니다.

○윤건영 위원 체포영장 청구에 적극적 의사를 개진한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예, 그걸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윤건영 위원 지금 윤석열 씨에 적용된 혐의는 내란죄 맞습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그렇습니다.

○윤건영 위원 검찰이 체포조 관련해서 본부장님과 간부들 10명의 휴대폰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그렇습니다.

○윤건영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사 방해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위원님, 저는 비상계엄 선포 전후부터 현재까지……

○윤건영 위원 아니, 짧게, 이 검찰의 행위에 대해서 수사 방해행위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냐고 묻는 겁니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이해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윤건영 위원 좋습니다.

김용현 씨의 체포를 경찰이 시도했는데 실패했고 방첩사 압수수색도 시도했는데 검찰이

먼저 해서 실패했습니다. 일종의 가로채기라고 봐집니다, 검찰이 사전에.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초동수사가 조금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검찰이 왜 이렇게까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글쎄,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른 수사기관보다 제일 먼저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압수수색영장을 12월 7일 저녁에 저희가 발부받아 그다음 날 집행할 예정이었는데 그 몇 시간 전에 김용현 씨가 검찰로 자진 출두를 하면서……

○윤건영 위원 일종의 가로채기를 한 거지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예, 저희도 좀 당혹스러웠고 초기 수사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윤건영 위원 좋습니다.

그리면 검찰이 본부장님의 휴대폰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영장은 왜 발부가 됐을까요, 법원에서? 혹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보셨습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예, 봤습니다.

○윤건영 위원 내용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영장 발부 사유는 ‘내란혐의 관련해서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게재가 돼 있었는데요. 다만 휴대전화 내에서 저희가 추출할 전자정보의 기기라든가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의 영장과는 달랐고요. 또 제가 참고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영장 사본도 제가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윤건영 위원 참고인한테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흔치 않지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윤건영 위원 그리고 경찰 간부에 대해서 검찰이 이렇게 한 것도 이례적인 거지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윤건영 위원 좋습니다.

체포조 관련해서 국수본은 방첩사에 명단만 제출했다고 저희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등포서 직원 10명이 현장에 와 있었어요. 맞지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그렇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러면 명단만 제출한 게 아니지요.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거라고 봐야지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제가 보고받기에는 영등포서 직원 10명이 아니라, 이 자리에도 영등포서장이 와 있는데 이런 통상의 다중……

○윤건영 위원 아니, 말씀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다중집회를 관리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인원들을……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인원들 중에……

○윤건영 위원 중에서 10명을 추려서……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중에서 10명을 줬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윤건영 위원 명단을 주고 그리고 만나기로 했던 수소충전소 앞에까지 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어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예, 그렇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관계에서 국수본부장이 관여됐다라는 의심은 전혀 갖지 않는데 저희한테 설명할 때 명단만 제출됐다라는 게 잘못인 거예요. 현장에 와 있었는데 그걸 이야기 안 하셨어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조지호, 김봉식이 받았다는 계엄 문건, 국수본이 확보했습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파기했기 때문에.

○윤건영 위원 그러면 파기했으면 증거 인멸 아닙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어쨌든……

○윤건영 위원 명백한 증거 인멸 같은데요. 맞습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지금 말씀하신 걸 종합적으로 저희는 판단해서 긴급체포를 했습니다.

○윤건영 위원 아니, 증거 인멸이잖아요. 구체적인 증거를 파기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계엄 문건을 파기한 건 증거 인멸이지요, 내란죄에 대해.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긴급체포를 했습니다.

○윤건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한 내용의 진술이 있었습니까, 계엄 문건에 대한?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있었습니다.

○윤건영 위원 혹시 그 내용 안에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계엄 문건 안에?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어쨌든 경찰청장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진술이 일부 있었습니다.

○윤건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위치추적 이야기도 계엄 문건 안에 있었습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그거는 아마 방첩사령관이 요청했던, 그런 비슷한 진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건영 위원 좋습니다.

이번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조지호 김봉식 조태열 최상목, 4명이 현재까지 보도된 바로는 윤석열 씨한테 계엄 문건을 받은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간담회에 참여했던 12명 중에 조지호, 김봉식은 아닙니다만 이런 계엄 문건을 추가적으로 받은 사람이 더 있습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최상목 부총리에게 받아서 저희 수사기관에, 저희에게 제출을 했기 때문에 수사서류에 첨부를 했습니다.

○윤건영 위원 다른 인원들은 없습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다른 인원들은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윤건영 위원 조사 다 하셨잖아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예. 저희가 받은 것은 최상목 부총리 건입니다.

○윤건영 위원 그러면 최상목 부총리가 받은 건이 하나의 문건 형식입니까, 아니면 그냥 메모 형식 정도였습니까? 내용은 저한테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워드로 쳐 있는 한 페이지짜리, 한두 페이지짜리인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건영 위원 아주 조잡스러운 메모 수준이겠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경찰청 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비화폰 관련해서 여쭐 텐데요.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애초부터 비화폰 썼습니까? 빨리 답해 주십시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경찰청장이……

○윤건영 위원 차장이 모르는 비화폰을 경찰청장이 씁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는 비화폰을 쓰지는 않고요.

○윤건영 위원 아니, 지금 권한대행이시잖아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아니, 지금 지급받아야 됩니다, 경호처에서.

○윤건영 위원 아니 원래,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비화폰 안 쓴 걸로 아는데 언제부터 썼는지 알고 있느냐라는 걸 묻는 거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윤건영 위원 이번 내란과 관련해서 비화폰 쓴 거 아닙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것은 국수본에서 어떻게 수사되는지 모르겠지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제가 말씀드리게 해 주세요.

아마 경찰청장 것은 모르겠고 서울청장은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11월부터 지급을 받아서 경호처에서 쓰다가 이번 계엄 사태 이후 곧바로 경호처에 반납한 것으로 저희가 진술을 받았습니다.

○윤건영 위원 11월부터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11월부터입니다.

○윤건영 위원 그러면 비화폰 통신 내역은 압수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비화폰 통신 내역은 경호처에 있는 서버 압수수색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윤건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빨리 신병을, 체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술이 제일 확실한 건데 구체적 근거를 못 하고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서울청장 권한대행에게 묻겠습니다.

잠깐만 끊어 주시고, 나오시지요.

김봉식 청장은 안가 회동 이후에 서울청에 와서 근무를 했어요, 계엄 선포 3시간 전까지. 계엄 선포 3시간 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울 김봉식 청장이 회의를 소집하거나 또는 계엄과 관련해서 논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 최현석** 저희는 전혀 없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러면 3시간 동안 김봉식 청장이 컴퓨터만 보고 있었어요, 자기 사무실에서? 상식적입니까, 그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 최현석** 저도 사실 계엄 사실을 알고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데 어쨌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구체적인 내용은 공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러면 그 3시간 동안 김봉식 청장은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안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 최현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건영 위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성곤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본 위원이 서울경찰청에 12월 3일 정오부터 12월 4일 정오까지 국회 주변 CCTV 녹화영상 데이터를 자료 요구했는데요. 그동안 서울청은 개인정보, 수사, 재판 등에 관련된 사안이라며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통상적인 사건이 아니라 국회를 군홧발로 짓밟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내란 범죄 사건입니다. 현직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피의자로 구속된 사건이란 말입니다. 내란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이 수사의 주도권은 물론 경찰의 수사 책임자인 국가수사본부장의 휴대폰마저 검찰에 넘겨주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에는 수사를 운운하며 거부하는 상황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제출 요구한 CCTV 영상은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 웹사이트를 통해서 누구나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는 공개된 자료입니다. 이것의 녹화본을 달라는 것입니다. 서울청은 이것을 숨기지 말고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해당 영상은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에 경찰의 차량 배치 등을 포함해서 국회 외곽 현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서울청은 국회에 자료제출을 하고 국가수사본부는 서울경찰청이 마음대로 삭제하거나 훼손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게끔 요청해 주시고 자료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정훈** 예.

○**이해식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1분밖에 안 걸립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이해식 위원** 이해식 위원입니다.

이상민 장관이 언제 계엄 선포를 최초 인지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상민 장관께서는 울산에 있다가 5시 10분쯤 전화를 받기 위해서 자리를 이탈했고 받자마자 KTX를 타고 급히 상경을 했는데 KTX를 타고 올라오던 중에 오후 6시쯤에 김용현 국방부장관 전화를 30초가량 수신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상민 장관 KTX 좌석 그리고 동승한 수행원 KTX 좌석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12월 3일 서울역에 도착한 후에 운전한 수행비서관이 누구인지 명단과 관용차 블랙박스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일 저녁에는 이른바 안가 회동이 있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그리고 관용차만 5대 이상이 들어갔다고 해서 한두 명 정도는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떻든 이때 안가 회동 참석 당시에 이상민 장관이 관용차 이용을 했을 텐데 수행비서관이 당시 누구인지 그리고 블랙박스를 보존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12월 4일 행안부에 3일 당일 날 오후 5시부터 그다음 날 4일 아침 6시 사이에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국무위원급 공직자의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출입기록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앞서 요구한 것 다 요구를 했는데 계속 주지를 않고 있는데 일단 위원회 의결 시에 제출 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위원회 의결로 앞서 요구한 자료와 3일 날 오후 5시부터 4일 날 오전 6시 사이에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위원급, 차관급, 국·실장급 공직자별 서울정부청사와 정부세종청사 각 출입기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의결을 해서 요청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각 기관에서는 해당된 자료들을 철저히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회 의결은 두 간사님들이 협의해 주셔서 협의 결과를 저에게 알려 주시면 최종적으로 의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관의 기관장님들 잘 아시겠지요?

(「예」 하는 기관장 있음)

다음은 모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경종 위원 인천 서구병 검단에서 온 모경종입니다.

지금 국민을 대신해서 저희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국민들도 너무 많이 헛갈리실 것 같아요, 워낙 가담한 사람도 많고 가담이 의심되는 사람도 많다 보니까.

저는 방첩사에서 국수본에게 요청했던 100명의 요청과 10명의 요청을 나눠서 10명의 요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일 수사기획계장님 나오십시오.

국수본 소속인 이현일 계장님.

○경찰청수사기획계장 이현일 예, 이현일입니다.

○모경종 위원 11시 32분 방첩사에서 최초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경찰청수사기획계장 이현일 예, 그렇습니다.

○모경종 위원 그때는 100명과 차량 20대에 관한 내용이었지요?

○경찰청수사기획계장 이현일 예, 맞습니다.

○모경종 위원 그러고 나서 20분 후에 다시 10명 파견해 달라 또는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연락받은 것 맞습니까?

○경찰청수사기획계장 이현일 예, 맞습니다.

○모경종 위원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어떻게 연락이 왔나요, 어떤 내용으로?

○경찰청수사기획계장 이현일 방첩사에서 국회 쪽으로 출동을 가는데 체포 인력이 온다, 그런데 현장이 혼란스러우니 안내할 인력이 필요하다, 5명의 명단을 달라 이렇게 요

청이 왔습니다.

○모경종 위원 구체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형사 파견을 요청받았는데 체포조라는 표현을 했습니까?

○경찰청수사기획계장 이현일 형사 파견이라고는 안 했고요. 국수본에서 인력을 5명 달라고 했고요. 형사를 보낸 것은 저희가 판단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체포조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모경종 위원 안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안내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경찰청수사기획계장 이현일 현장이 그때 당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지역을 통행하고 할 때 인솔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모경종 위원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정말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에서 영등포경찰서에서 형사를 파견해 가지고 길 안내를 해 달라고 하는 게, 경찰 인력을 그렇게 활용하려고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경찰 역시 체포에 가담하기 위해서, 체포행위를 하기 위해서 간 것 아닙니까?

○경찰청수사기획계장 이현일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저희 형사들은, 당시에 명단을 준 형사들은 수갑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길 안내라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활동을 한 것이지 뭐 체포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한 것이 아닙니다.

○모경종 위원 예, 들어가시지요.

국수본부장님, 워낙 엄중한 상황입니다. 경찰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이미 바닥에 떨어져 있고 국수본부장님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경찰이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스스로 짚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예, 그렇습니다.

○모경종 위원 그 범위는 경찰,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국수본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국수본 내에서도 방금 수사기획계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이 국수본부장님을 참고인 조사를 했고……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조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모경종 위원 핸드폰을 압수해 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예, 그렇습니다.

○모경종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수본 내에서도 잘라 내야 될 부분을 잘라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 전후부터 현재 이 시간까지 저는 대통령실이나 군 관계자나 경찰청장으로부터 계엄 관련해서는 어떠한 연락이나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계엄 발효 직후 11시 15분에 한 차례 경찰청장과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지금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가겠다는 내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경찰청장이 알겠다는 답변입니다. 이 내용은 곧바로 저희 수사기획과장한테 문자와 통화로써 공유하고, 이게 유일한 소통입니다.

○모경종 위원 좋습니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저희 실무자들한테 확인한 것은 방첩사 실무자들로부터 어떠어떠한 특정인을 체포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저는 현재까지 확인을 했고요. 경찰청장으로부터도 그런 지시를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모경종 위원 국민들은 그 말씀을 정말 믿고 싶을 겁니다. 지금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국수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대한민국이, 특히 경찰이 바로 설 수 있는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그 부분, 방금 말씀하신 부분 철저하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명심하겠습니다.

○모경종 위원 인사혁신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장님,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인재개발원장에 대해서 지적한 것 기억하십니까?

○인사혁신처장 연원정 예, 그렇습니다.

○모경종 위원 제가 그때 인재개발원장이 본인의 유튜브 영상을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이런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강사진에 대해서 지적을 했단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없다고 생각하느냐고 했더니 문제없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의 유튜브에 있던 섭네일들을 가져왔습니다. 다 부정선거 관련된 이야기예요.

다음 PPT, 무슨 이야기를 했나 봤더니 ‘부정선거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은 자유의 말살이다. 독재로 가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지 않냐’, 뭐 이 말이야 그럴 수 있지요. 그렇지만 ‘만에 하나라도 4·15 선거가 부정선거라면……’이라고 하면서 계속 부정선거에 대한 군불 때기를 해 왔어요.

다음 영상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됐습니다. 더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계엄 이후에 특히 12월 12일 윤석열 씨가 대국민 담화에서 극우 유튜버나 할 것 같은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마지막까지 대통령은 그들의 주장을, 김채환 원장 같은 사람의 주장을 사실로 믿고 있었던 것 아닌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역시 2024년부터 극우 유튜버 출신인 김채환 원장이 임명돼서 재직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혁신처장님? 이런 사람이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기관장으로 있는 게 맞습니까?

○인사혁신처장 연원정 위원님, 지난번에 감사 때 제가 답변드린 것은 문구에서 나왔듯이 국정철학이라는 교육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차원에서 문제없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내용에 대해서 문제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 위원님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유념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모경종 위원 혁신처장님, 지금 당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대해서 해임 건의하십

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인사혁신처장으로서 선제조치…… 아니,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저런 사람들이 기관장으로서 공무원들을 교육하고 있고 저런 사람들이 대통령의 사진을 올려 가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겁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인사혁신처장님, 인재개발원장 지금 관리가 되는 사람입니까?

○인사혁신처장 연원정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받아들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신정훈 지금까지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간에 국가기관이 시민이라든가 국민들을 관리할 때, 진영을 관리할 때 여러 가지 논리를 개발한 경우는 있었지만 같은 국가기관, 헌법기관, 소위 말해 선관위의 업무를 가지고 저렇게 정도까지 유연비어와 괴담을 날포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방금 전에 진실화해위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이 정부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을 지켜 내려고 하는 것인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국민의 일반 상식에 맞지 않잖아요. 여러 번 지적했잖아요.

인사혁신처장, 인재개발원장 정확히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업무 관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사혁신처장 연원정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지금 지적만 계속되고 있는데 아무 조치도 안 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국회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인사혁신처장 연원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 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 울산 남구갑 김상욱입니다.

경찰청 이호영 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집회·시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집회·시위 대응 원칙이나 아니면 사전 교양 원칙 같은 것이 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일단 경찰청에서는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유연하게 집회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김상욱 위원 지금 예전에 그냥 가지고 있던……

○위원장 신정훈 잠깐만요.

차장, 마이크를 좀 더 당겨 쓰십시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김상욱 위원 예전에 가지고 있던 원칙만 얘기하기에는 지금 시위 현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더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집회 참가 시민 그리고 그 현장에 있는

경찰관 그리고 참가는 하고 있지 않지만 주변에 계신 시민 모두 다 정말 보호받아야 될 국민들이시고요, 아무도 다쳐서는 안 됩니다.

또 집회·시위의 자유가 훼손되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일반 시민들이 겪는 불편은 최소화되어야 됩니다. 날이 많이 차갑습니다. 날씨를 고려해서 시위 주최자와 좀 더 많이 소통하고 배려하고 원만한 집회·시위가 되도록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남태령 집회·시위 현장에 있었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욱 위원 관련해서 경찰청 게시판에, 아무리 익명 게시판이라고는 하지만 납득할 수 없는 글이 게시된 것 알고 계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 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

○김상욱 위원 보지 못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블라인드……

○김상욱 위원 예.

그 내용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도 좀 면구한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또 아무리 익명 게시판이지만 경찰관이 지금 시국에 그런 글을 게시한다는 것이 저는 좀 납득할 수 없었고요. 또 지금 물론 경찰청 내의 분위기가 어수선한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최소한의 통제마저도 잊어버린다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남태령 관련해서 이호영 차장님 생각은, 남태령 집회·시위 관리가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잘잘못을 떠나서요 어제 집회가 약간 집회까지 연이틀 이어지고 있었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최 측과 협의해서 마무리했습니다.

○김상욱 위원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부분이 그겁니다. 뭐냐 하면 집회·시위 참가하셨던 일반 시민들은 이 추운 날씨에 이를 동안 엄청난 고생을 하셨고요.

또 불필요하게 서로 간의 감정대립이나 아니면 물리대립이 심해지면서 집회·시위 참가 시민들도 홍분하셨고 또 경찰관들도 홍분하고 충돌이 일어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겨우겨우 트랙터 10대 정도 통과하면서 합의점을 찾아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일찍 소통할 수는 없었을까, 좀 더 배려할 수는 없었을까, 좀 더…… 지금 같은 시국에 경찰은 어떻게 보면 대립을 격화시키는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되고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대립을 완화시키면서 시민들께서도 충분히 주장을 할 수 있게 하되 충돌은 최소화시키는 성숙한 태도가 정말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처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모자란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앞으로 세심하게 집회 살펴 가지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위원 말씀만이 아니라, 사실 지금 보통 정보과 형사분들께서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데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대화경찰이 있습니다.

○김상욱 위원 대화경찰이 지금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까?

남태령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완벽하게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의, 현장 직원들은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욱 위원 또 집회·시위에 참여했던 트랙터가 국도를 통해서 올라왔다 국도를 통해서 내려갈 텐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어야 되고 동시에 또 일반 시민들의 불편도 최소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 배려 대책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지금 순찰차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에스코트 개념에서 안전을 유지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상욱 위원 정말 각별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시위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데요. 집회·시위 자유가 침해돼서도 안 되고 또 국민들이 다치셔도 안 됩니다. 또한 충돌이 격화돼서도 안 됩니다.

충돌이 격화되어 버리면 본질에서 어긋나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각별히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관들에게 사전 교양이나 이런 부분들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아무리 익명 계시판이지만 그런 글이 올라온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경찰 수뇌부에서 사전 교양이나 문제의식을 좀 덜 가진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단 한 명의 잘못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시국에는 더더욱 더 그렇습니다. 경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정말 인내하고 현명하게 소통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대응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알겠습니다.

○김상욱 위원 그리고 선관위 사무총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김상욱 위원 부정선거론에 대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많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부 계층에서는 부정선거론을 근거로 해서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하려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물론 처벌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처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주장을 정리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홍보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오해는 오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셔야지 국민들께서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지금까지 나름은 홍보 조치를 해서 영상물도 만들고 그렇게 대응은 해 왔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입장 표명도 하고 주요 언론사에서 그 부분을 다뤄도 주셨고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국민들께서 제대로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서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홍보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욱 위원 지금 국민 갈등과 오해를 줄인다는 측면에서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는 것이 빨리 국민 갈등을 줄이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 선관위 사무총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김성희 위원** 혹시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김성희 위원** 개인적인 종교가 있으시냐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김성희 위원**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렇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런데 부정선거, 신앙촌에서 계시는 분들의 자유까지 저희가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국가권력을 찬탈하려고하거나 국가권력에 개입하려는 행위…… 개인이 무슨 종교를 믿든 자기 집에서 자기 신앙생활 하는 것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공적인 권력을 가지고, 특히나 선거관리위원회처럼 정부의 중요한 기관에 대한 공적인 침탈을 시도하고, 사적인 침탈을 시도한다면 그것은 막아야 됩니다. 그것은 민주당·국민의힘 이렇게 정당을 따질 문제도 아니고 선거 중립을 따질 문제도 아니고 그러한 신앙인들의 공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

방금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설득해서 될 문제 같으면…… 아니, 외부랑 연결돼 있지 않은 폐쇄망이, 폐쇄망에 있는 정보를 건드리면 전체 선거 결과가 바뀐다라는 정도의 정신나간 소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과학적 설명을 더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단호한 태도를 취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경찰청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남태령, 결국은 시민단체와 경찰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모든 것이 평화롭게 끝난 점에 대해서 정말 잘됐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차장님, 저기 트랙터를 왜 막으신 거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잡시법상 남태령이 ‘주요 도로’에 해당되고요. 서울 시내의 극심한 교통불편 또 안전사고가 우려돼서 제한했습니다.

○**김성희 위원** 경기도는 괜찮고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경기도는 교통이 저희들만큼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김성희 위원** 경기도에 트랙터가 다니는 건 되는데 서울에 트랙터가 다니는 건 안 돼서 남태령을 싹 다 막으셨다라는 얘기를 국민들이 들으면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 당시 토요일에 광화문에는 자통당 집회하고 이쪽 민노총 집회에 6만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그쪽으로 진입하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 문제가 좀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성희 위원** 안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냥 트랙터를 다 막아도 되는 건가요? 법이 허용하는 건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현재는 판례상 이런 거 보면 일부 제한 통고는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어떤 분들이 시위를 하기 위해서 집에서 나서면 지금의 경찰 태도대로 하면 문 앞에서, 광화문 집회 나가려는 사람인데 ‘당신 나가지 마’라고 막을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것은 논리적 모순 아닙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런 비약적인 논리는 아니고요. 그것은 사실과 다른 의견이……

○**김성희 위원** 법원 판례 말씀하시는데 법원 판례 한번 볼까요?

2016년의 판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 한번 보셨습니까?

행정법원 2016구합81505에 보면 집회 또는 시위의 전면적 금지를 위해서는 그전에 시위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수단으로 약간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체 집회를 막지 말고 필요하다면 트랙터 정도의 움직임을 막는 것에 대해서 고려해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가지고 ‘우리는 트랙터는 막을 수 있어’라는 기적의 논리를 만들어 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 취지는 큰 자유를 허용하기 위해서 일부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어떻게 저 판결 하나 가지고 트랙터가 들어올 때마다 막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희들이 행진 같은 경우는 허용을 했고요. 단지 트랙터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일부 제한 통고한 겁니다.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예요. 트랙터가 일반도로를 주행할 수 있나요, 없나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일반도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런데 남태령에서 왜 막으셨나는 질문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아까 집회·시위……

○**김성희 위원** 그런데 보기에 저 사람들이 광화문 집회에 참여할 거고 광화문 집회에 참여하면 혼란스러워질 거니까 우리는 막아야겠다라고 막으셨다는 건데, 정상적인 법 집행이라고 한다면 광화문까지 와서 광화문에서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지면 그때 공권력을 동원해도 되는 문제라고 보고 그런 일들이 누적이 되어서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됐을 때는 법원에 판단을 구해서 해결하실 문제지 경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신 점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희들은 실무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김성희 위원** 막아도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김성희 위원** 그러면 이 다음번에도 트랙터가 시내에 진입을 하면 그대로 막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개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김성희 위원** 그러면 어제는 왜 길을 열어 주셨나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어제는 일부가, 10대 정도만 한강진에 가서 참여하고 바로 회차하는 것으로 농민회 측이 얘기했기 때문에 일부가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안전을 같이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해 줬습니다.

○김성희 위원 어제 저희 민주당 이소영 위원님 포함해서 저도 그렇고 채현일 위원님 등 함께 직접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트랙터가 정지해서 도로를 막는 행위에 대해서 경찰이 제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저는 할 수 있는 범위라고 봅니다. 어쨌든 교통의 안전을 보장해야 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트랙터가 단지 길을 다니는 것까지도 통제하겠다라는 것은 안 된다고 저희가 지적을 했고 결국 경찰청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진행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신 것 아닙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트랙터가 한두 대 다니고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교통관리만 하면 상관없지만 일제히 34대라는 트랙터가 한꺼번에 집회·시위 현장에서 움직인다는 것은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그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다시 드리지만 거기에 운전을 하고 있는 농민들이 집회 현장에 가서 트랙터를 갖고 난동을 부릴 거라는 전제를 하고 계시는 게 말이 되냐는 말씀인 걸 여쭤보는 겁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난동.....

○김성희 위원 같은 의미에서 제가 고양에 살고 있는데요, 고양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 광화문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30명, 50명, 100명씩 모여서 같이 지하철을 타고 이동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찰이 제지할 수 있어요, 깃발을 들고 같이 몰려다닌다는 이유로,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못 하지 않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현재는 제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통행의 자유, 운행의 자유에 대해서 경찰청이 더 폭넓게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번에 그렇게 했는데 다음번에 막을지 안 막을지 저희가 또 지켜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은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이고 매우 엄중한 시국입니다.

여기에서 경찰이 현재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 권력이 바라는 방향대로, ‘한남동은 쉽어하……’, 이것을 막기 위해서 공권력을 무리하게 집행한다면 그것이 시민들로부터 지대한 지탄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날 저녁에 농민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그 현장에 모였던 시민들, 저체온증으로 굉장히 괴로워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통받는 상황에서 구급차의 진입도 막고 난방버스의 진입조차도 허용하지 않았던 경찰의 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좀 따져서 앞으로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양부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부남 위원 수사계장!

지금까지 체포조 운영과 관련해서 언론에 나온 기사를 제가 잘 읽어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검찰은 체포조 운운해서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이야기돼 있고 경찰에서는 체포조라는 말은 듣지 못했다, 방첩사에서 국회에 나오는 인원에 대해서 인솔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보도가 됐는데, 방금 전에 수사계장이 중언하신 걸 보면 체포조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경찰청수사기획계장 이현일 예, 그렇습니다.

○양부남 위원 방첩사에서 지금 국회에 사람 체포하러 가는데 체포조를 인솔할 사람을 보내 달라……

○경찰청수사기획계장 이현일 예, 그렇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러니까 ‘체포조’라는 말이 나온 건 맞네요?

○경찰청수사기획계장 이현일 ‘체포조’라는 정확한 표현까지는……

○양부남 위원 사람을 체포하러 간다……

○경찰청수사기획계장 이현일 예, ‘체포’라는 표현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양부남 위원 체포하러 가는데 인솔해 달라?

○경찰청수사기획계장 이현일 예.

○양부남 위원 그러면 이럴 때 인솔의 의미가 뭘까요?

○경찰청수사기획계장 이현일 당시에……

○양부남 위원 방첩사 사람들이 국회 지리를 몰라서 단순히 인솔한다 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아니면 방첩사에서 사람을 체포하러 가는데 열 명의 형사들이 그 조에 합류해서 같이 체포를 도와주는 의미로 해석하는지,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경찰청수사기획계장 이현일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누구를 체포하러 오는지 몰랐기 때문에……

○양부남 위원 좋아요. 누구를 체포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분명히 방첩사 직원들이 국회에 가는 목적이 사람을 잡으러 간다, 체포하러 간다, 누군지는 모른다, 그런데 이것을 인솔을 해라, 인솔해서 경력을 지원하라고 했다는 여기까지는 팩트이지 않습니까?

○경찰청수사기획계장 이현일 예.

○양부남 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인솔의 의미를 일반 사람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방첩사 직원들이 길 모르니까 길잡이 하라는 의미인 것인지 아니면 방첩사 직원들이 사람을 체포하는데 같이 도와달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까요? 나는 사람들이 후자로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찌 됐든 그러한 내용을 수사본부장한테는 보고를 안 했다는 거지요? 우종수 본부장한테 했어요, 안 했어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저에게 사전 보고나 지침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양부남 위원 아니, 내가 수사계장한테 묻고 있어요.

○경찰청수사기획계장 이현일 제가 본부장님께 직접 보고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요. 저는 보고드린 사실이 없습니다.

○양부남 위원 직접 한 것은 없고요?

○경찰청수사기획계장 이현일 예.

○**양부남 위원** 그다음에 10명 명단을 제출했지요?

○**경찰청수사기획계장 이현일** 예.

○**양부남 위원** 10명 명단은 영등포서에서 제출했겠네요?

○**경찰청수사기획계장 이현일** 예, 그렇습니다.

○**양부남 위원** 영등포서장은 나오셨습니까? 나와 보세요.

영등포 형사 명단 10명 제출했지요?

○**서울영등포경찰서장 강상문** 예.

○**양부남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명단이 여기 타임 테이블의 자료를 보면 23시 30분에 영등포에서 국회 1문에 10명이 도착했어요, 형사. 그 사람들인가요, 명단이?

○**서울영등포경찰서장 강상문** 그 사람들 중에서 일단 5명 명단을 보내고……

○**양부남 위원** 잠깐, 지금 최초에 5명 명단을 보내 달라고 했지요?

○**서울영등포경찰서장 강상문** 예.

○**양부남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5명을 제출하지요?

○**서울영등포경찰서장 강상문** 예.

○**양부남 위원** 근데 최초의 5명은 23시 30분에 국회 1문에 도착했던 사람들의 명단이었지요?

○**서울영등포경찰서장 강상문** 예, 그중에서 아마……

○**양부남 위원** 그러면 이걸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여기서 대기한 사람 명단을 준 거예요, 23시 30분에 가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장 강상문** 당시에 계엄 사실을 인지하고 23시경에……

○**양부남 위원** 그러니까요. 알아요. 아는데, 이게 오비이락인지……

○**서울영등포경찰서장 강상문** 저희 형사들이……

○**양부남 위원** 아니면 사전에 방첩사로부터 체포조 지시 연락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 전화가 있기 전에 숙지하고 나서 이미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 명단을 제출한 것인지를 내가 묻고 싶어요.

○**서울영등포경찰서장 강상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양부남 위원** 오비이락이다?

○**서울영등포경찰서장 강상문** 예.

○**양부남 위원** 근데 수사한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오해하겠는데?

○**서울영등포경찰서장 강상문** 그래서 조사를 받고 있고요. 시간이 아마 국수본에서 방첩사에 요청받은 시간하고……

○**양부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방첩사에서 국수본에 요청한 시간은 이 이후가 됩니다. 그런데 그 명단에 5명이 먼저 대기했던 경력을 제출했다는 걸로 해서 검찰로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미리부터 방첩사에서 수사본부의 수사계장한테 연락하기 전에 사전에 연락받은 거 아니에요?

○**서울영등포경찰서장 강상문** 그런 일 없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러면 하필이면 먼저 기다렸던 사람 명단을 제출했습니까?

○**서울영등포경찰서장 강상문** 제가 형사과장한테 설명을 듣기로는 본청에서 명단 요청이 있어서 처음에 형사들이 동시에 다 나오는 건 아니고 저희 형사 기능에 야간에 근무하는 2개 팀이 있습니다. 그 팀들이 먼저 나가 있었고요. 그 팀들 중에 일단 명단을 5명을 뽑아서……

○**양부남 위원** 우선 나가 있었기 때문에 했다 이것이지요?

○**서울영등포경찰서장 강상문** 예.

○**양부남 위원** 됐습니다.

PPT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우종수 본부장.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예.

○**양부남 위원** 저것 보면 제가 우리 행안위에서 처음 수사본부 방문해서 본부장께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예, 그렇습니다.

○**양부남 위원** 계엄사나 방첩사로부터 전화받은 사실이 없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없습니다.

○**양부남 위원** 왜 그러냐? 수사는 수사의 기술과 자질과 수사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수사하는 사람의 손이 깨끗해야 돼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그렇습니다.

○**양부남 위원** 수사하는 사람의 손이 깨끗하지 못하면 아무리 수사의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수사의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제일 처음에 가자마자 우종수 본부장님께 질문했던 게 계엄사나 방첩사로부터 연락받은 게 없냐를 질문했는데 저렇게 답변했고, 또 통신 조회 내역은 이렇게 연락한 사실이 안 나타나요. 본부장은 계엄사나 방첩사로부터 일체의 연락받은 흔적이 없습니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지금 현재까지 없습니다.

○**양부남 위원**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에서 휴대폰을 압수수색 당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상황인데……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종수 본부장은 계엄사나 방첩사의 연락을 일체 받지 않았다 치더라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않았다 치더라도 지금 수사계장이 방금 증언한, 진술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방첩사에서는 체포하는 데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경찰에 인력을 요청했고 경찰이 명단을 제출한 것까지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명심해서 앞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할 때 미리 대기했던 경력이 왜 명단에 포함된 것인지,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한 것처럼 체포조가 사람을 잡으려 가는데 일반 국민이 인솔의 의미를 뭘로 해석할 것인지…… 그러한 의심을 받고 있어요. 지금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본부장 본인은 의심을 안 받더라도 수사본부에 있는 그 시스템이 거기의 인력이 지금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자각해서 수사를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영등포서장, 10명이 그때 활동한 게 있었습니까? 명단 제출한 사람들이 조우를 했어요?

○**서울영등포경찰서장 강상문** 만나지는 못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양부남 위원** 만나려고 시도는 했지요?

○**서울영등포경찰서장 강상문** 아마 그 방첩사 쪽에서 저희 나가 있는 팀장들하고 전화는 있었던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양부남 위원** 서로 만나려고 했는데 그 상황이 혼잡해서 만나지 못한 것이지요?

○**서울영등포경찰서장 강상문** 제가 나중에 듣기로는 국회에서 해제 가결이 되어서 군에서 자기들이 철수한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양부남 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서울영등포경찰서장 강상문** 그리고 위원님, 아까 제가 답변드리는 도중에 형사 명단에 관한 부분을 제가 직접 통보를 한 게 아니라서 약간, 답변하고 들어갔는데 착오가 있었다고 해서요.

○**양부남 위원** 착오가 있어요?

○**서울영등포경찰서장 강상문** 저희 형사과장이 정정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예,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서울영등포경찰서형사1과장 박창균** 안녕하십니까? 영등포서 형사과장입니다.

지금 양부남 위원님께서 서장님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조금 수정, 정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날 아까 말씀하신 먼저 나가 있던 10명은 제가 한 23시 30분경에 야간 당직을 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 필수요원 제외하고 10명을 먼저 데리고 정문에 나가 있던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5명 최초의 명단 준 거는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고 비상소집을 제가 지시를 해서 그 시간 이후에 비상소집에 응소해서 거기 정문, 1문 쪽에 있던 사람들 중에 준 겁니다. 저희 그때 대기하고 있던 그건 아닙니다.

○**양부남 위원** 이런 부분을 꼭 소명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행입니다.

○**서울영등포경찰서형사1과장 박창균** 예, 맞습니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인솔 부분 그 얘기 하셨는데 어쨌든 제가 이미 경찰청장 지시를 받고 한 후에, 사후에 수사기획관 보고를 받았을 때 사실 그 부분을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질책을 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형사들이 왜 하필 오비이락으로 있었느냐 하는 것은 저희 경찰 업무에 대한 이해가 좀, 그러신데 저희가 이런 재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집회·시위 상황이면 이상식 위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현재 당직 중이거나 이런 형사들은 자동적으로 동원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오비락이라기보다는, 그런 점은 일응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런 점을 잘 검찰에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예.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영등포서 형사과장 잠깐 나와 보세요.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방첩사하고 영등포서에서 동원된 명단 5인과 5인, 그러니까 10인 아닙니까?

○서울영등포경찰서형사1과장 박창균 예.

○위원장 신정훈 이 동원 과정에서 체포조에 대한 이야기 설명 들으셨습니까?

○서울영등포경찰서형사1과장 박창균 제가 국수본 수사기획계장한테 전화를 받아서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면 방첩사 체포조가 오는데 인솔해 줄 형사 5명이 필요하니 명단을 좀 작성해 준비를 해 달라, 이게 제가 최초에 받은 연락이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체포조는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서울영등포경찰서형사1과장 박창균 제가 이해하기로는 당시에 저희가, 현장에 형사들이 나가 있는 거는 시민들 안전 관리하고 국회 질서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당시에 시민들이 많이 몰려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업무를 하고 있던 중이었고 그래서 그때 전화를 받았을 때도 방첩사에서도 경찰과 시민과의 충돌이라든가 시민들 간의, 군중들 간에 무력을 수반한 충돌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온다고 저희 생각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혹시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는 국회의장이나 야당, 여당 대표 또 그 명단 14명 이런 요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건 아니지요?

○서울영등포경찰서형사1과장 박창균 일절 없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런 것에 대해서 언질이라든가 상상을 한 적도 없지요?

○서울영등포경찰서형사1과장 박창균 그 당시에,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의심을 받고 있지만 그 당시에 현장에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했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양 위원 먼저 이번 계엄 사태로 크게 놀라고 불안해하시는 우리 국민들께 여당 위원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것으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현안질의에 앞서 가지고 간단하게, 의사진행적 발언일 수도 있는데요 먼저 간단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잘사는 나라에서 이렇게 민주주의에 큰 위기가 온 것은, 얼마 전에 제가 읽었던 스티븐 레비츠키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하는 거기에 보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핵심적 규범은 상호관용과 제도적 자제였습니다. 다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가진 권력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적혀 있었는데 아마 대통령께서도 그러지 못해 가지고 이런 큰 위기 상황을 초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구가 더욱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평소 참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이신데 회의 진행을 잘 해 주시는데 오늘 박선영 위원장 퇴장 명령을 한 것과 관련해서 소수의견도 존중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의힘의 이야기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권력을 자제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사실 제가 조금 전에 국회법을 죽 읽어 보았습니다. 국회법에 보면 우리 회의장 내의

어떤 질서 유지라든지 이런 모든 권한은 우리 의장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퇴장할 때는 회의장을 소란하게 만들었거나 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퇴장 명령을 한 부분에 대해서 설사 그런 권한이 있다손 치더라도 좀 자제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 회의 진행하실 때 좀 더, 현재 우리 여기 상임위에서의 권력은 지금 위원장님하고 오히려 야당한테 지금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권력을 갖다가 좀 자제할 줄, 절제할 줄 아는 그런 멋진 위원장님의 모습을 보여 주시길 바란다는 당부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이러한 국가적인 어려운 시기에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공직사회가 빨리 안정을 찾아 가지고 민생 회복과 국가발전에 전력투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동 직무대행님, 하여튼 지난 8일 사직한 전 장관을 대신해서 직무대행 수행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직무대행 하시자마자 또 부단체장 회의 등등 개최해 가지고 나름대로 본업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지금 공백이잖아요. 공백으로 인한 업무 차질에 대한 걱정도 많이 갖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별씨 지금 행정체제 개편안 문제라든지 또 부처 문제라든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문제라든지 급작한 어떤 국정 현안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재난·재해가 많은 겨울철에 중대본 운영조차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이런 우려도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차관님 지금 어떻습니까? 직무대행으로 수행하는 데 지금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기관장 공석이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재난 상황이라든지 또 지자체와 여러 가지 협력하는 관계, 중점적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양 위원** 하여튼 다른 업무는 차치하더라도 무엇보다도 지금 이번 사태로 안전, 치안, 안보와 관련된 기관의 수장들이 모두 다 지금 공백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매우 크다는 걸 잘 알아 주시고.

그래서 저는 행안부장관, 경찰청장을 새로 임명하는 것이 우리 대내외적인 신뢰와 안정에 시급히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직무대행께서도 동의를 하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종양 위원** 하여튼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할 수 없는 안전·치안·안보 관계 기관장들에 대한 임명과 인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회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찰청장직무대행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번 주말 전농총 트랙터 시위 관련해서 언론에서 여러 가지 시각에서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트랙터 동원한 상경 시위가 사전에 신고된 합법적 시위였나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트랙터 행진은 신고가 됐는데요. 서울 진입하는 것에서는 저희들이 제한 통고를 했습니다.

○**김종양 위원** 그러니까 주요 도시, 주요 도로에서는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잖아요, 금지할 수 있잖아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제한할 수 있습니다.

○**김종양 위원** 아마 그것 때문에 저기 남태령에 있는 과천 농가……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서울시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 통고를 했고요.

○**김종양 위원** 제한 통고를 했잖아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지방청에서는 경기남부하고 충남에서 일부 제한이 있었는데 그것은 전체 제한은 아니었고요. 나머지는 제한 통고가 없었습니다.

○**김종양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농총에서 트랙터를 동원한 시위에 대해서 남태령을 넘어서 과천대로로 서울로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쪽에 통보를 했습니다.

○**김종양 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또 일부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합법적인 전농총의 트랙터 시위를 경찰이 제지하고 막았다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물론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이 되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그런 법 규정을 잘 홍보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보수든 진보든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으면 더 과격한 집회·시위가 빈발해 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럴 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그런 가치가 뭡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김종양 위원** 가장 중점적으로 우선적인 기준으로 대응해야 될 그런 우선적인 기준이 뭐냐 이거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희들은 적법절차 준수를 하도록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관리하겠습니다.

○**김종양 위원** 저도 한 25년 동안 경찰 조직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듣고 했던 말이 엄정한 법 집행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엄정한 법 집행이 중요합니다. 우리 경찰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불법을 용인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불법에 대해서 타협하는 그런 모습은 절대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힘들수록 엄정한 법 집행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대전 대덕구 박정현 위원입니다.

이호영 경찰청장직무대리, 엄정한 법 집행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 안 되겠지요, 그것은?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집회·시위는 신고제지 허가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경찰은 여러 집회·시위를 지금 허가제처럼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 김성회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에도 서울시청 앞 광장을 차벽으로 둘러싼 경찰의 행위에 대해서 이것은 위헌이라고 결정이 난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16년 박근혜 탄핵 정국에도 트랙터가 등장됐지요. 그때도 막아서 이게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1심에서는 결정이 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2009년, 2016년, 지금 2024년입니다. 그간에 경찰들이 집회·시위와 관련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직무대행께서 이 트랙터를 막은 이유가 ‘교통 통제’, ‘안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사실은 안전을 경찰이 해친 거예요. 28시간 대치 상황을 만들었고 그리고 실제로 농민들이나 그 주변의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갔던 수많은 시민들의 안전을 오히려 경찰들이 해친 결과가 됩니다. 교통 문제도 차벽을 그렇게 완전히 치지 않았으면 일부 구간을 소통할 수 있었는데 경찰 자체가 교통을 오히려 통제하면서 교통 혼란이 더 일어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직무대행이지만 경찰 전체의 집회·시위와 관련된 기본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희들은 신고제의 취지를 충분히 존중하고 있고요. 극히 예외적으로……

○박정현 위원 존중하면 28시간 대치 상황을 만들지 말았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남태령이 금지 구간도 아니고 서울로 왜 못 올라옵니까? 필요한 집회·시위가 있으면 서울로 올라와야지요. 서울에 모든 게 다 있고 용산도 서울에 있고 국회도 서울에 있는데 왜 서울은 안 됩니까? 그런 잣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김상욱 위원께서 굉장히 점잖게 말씀을 하셨는데 익명 게시판의 글을 저도 몰랐다가 지금 봤어요. 봤더니 정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을 익명 게시판에 올렸는데, ‘요즘 어린 여자애들 왜 이렇게 정신머리가 없냐’, ‘범죄 농민들을 옹호하는 뇌에 우동사리 MZ……’, 욕이라서 제가 엑스라고 하겠습니다. ‘엑스들은 대체 무슨 생각이냐’. 이것 완전히 여성 편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답변……

○박정현 위원 확인 당장 하셔야지요. 당장 확인하셔서 이것은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익명 게시판이라 하더라도 경찰서 소속 직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확인하셔서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MZ 엑스’ 이것도 정말 가관인데 지금 보니까 ‘유럽이었으면 이런 살인미수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사범들 대갈통에 총알 구멍 승승 뚫어 버렸을 텐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박정현 위원 이것은 묵과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것은 자기 마음에 안 듣다고 군

경을 동원해 가지고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아바타예요. 윤석열 아바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독려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씨가. 마찬가지지요. 그날 집회도 어쨌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금의 문제를 밝혀내고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런 주장을 하는 시민들을 향해서 ‘대갈통에 총알 구멍을 내야 된다’는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저는 공직자로서 자세가 안 돼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누군지 밝혀내야 됩니다, 이것은.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고요.

○박정현 위원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아니, 사실이지요. 여기에 있는데 제가 거짓말로 작명을 했겠습니까, 지금?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아니요, 저희들 블라인드고 실명이 돼 있지 않아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모른다는……

○박정현 위원 확인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아니, 금방 말씀하셔서 제가 안 거지요. 지금 안 것은 아닙니다.

○박정현 위원 조치를 취하세요. 조치를 취하고 보고해 주세요.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아시겠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저는 경찰이 지금과 같이 집회·시위를 그렇게 계속 막는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집회·시위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집회·시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찰의 업무라고 생각하고요. 집회·시위는 경찰법에 돼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헌법에 보장돼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데 이것을 경찰이 자의적으로 막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경찰청이 집회·시위와 관련해 전향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익명 게시판에 드러난 문제는 반드시 어떻게 조처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도 경찰이 성 관련 비위 징계율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것도 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인지, 성과 관련해서 교육도 더 철저하게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2월 3일 윤석열 내란 사태가 일어난 지 20일이 지났어요. 내란수괴 윤석열은 용산에 빠리 틀고 있습니다. 철옹성을 쌓고 지금 출석요구서도 거부하고 현재 탄핵심판 서류 수령도 거부한 채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묻고 있고요.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버티고 있고요. 오히려 나를 엄호하라고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양곡법 등 민생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김건희 특검이나 내란 특검을 공포하는 것조차 지금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한덕수는 내란대행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한덕수 지금 직무대행과 당일 내란 계엄을 논의했던 국무위원들

9명 비공개 조사했지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예, 다 조사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왜 비공개 조사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분들이 참고인 아니고 피의자 아닙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아니, 비공개라는 것은 출석일자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모든 조사는 다 비공개로 합니다, 위원님.

○박정현 위원 그렇지 않지요. 연예인 이선균도 그렇고 대부분의 정치인들을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습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저희가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은 공보 규칙에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개별 취재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박정현 위원 이런 분들은 공개해서 어떻게 조사하는지 알리셔야지요. 지금 안 그래도 국수본이 내란 사태에서 가장 적절하게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국수본의 내란 사태에 대한 수사 역량이나 수사 의지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정확하게 좀 인지하시고 일을 처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위원님, 저희가 다른 어떤 수사기관보다 가장, 소위 이른바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조사를 했고요.

○박정현 위원 가장 먼저 조사하면 뭐 합니까. 지금 국민들은 이분들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예의를 갖춰서 조사하는 것 아니냐, 정말 국수본이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제대로 조사할 의지가 있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의지가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의지가 있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국수본장님, 방금 지금 ‘의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국무위원회, 총리까지 포함돼 있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당사자들, 특히 총리는 어떤 협의가 있습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협의라기보다는 일단 피고발인 신분이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고기동 차관님,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비상계엄의 필수적인 행정절차 중의 하나인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실체, 형식, 절차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실제로 지금 제출돼 있는 회의록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입증하는 회의록으로서는 충분하지 않지요, 제안자도 없고 제안 내용도 없고.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회의록이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회의록이 없다고 봐도 되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회의록이 없는 회의는 회의가 정상적인 회의입니까,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그 회의에 관한 사항은 아마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우종수 본부장님,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계엄령 선포는 어떤 판단, 어떤 처분이 가능합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법적으로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리고 그런 임무를 처리해야 될 국무총리, 소위 말해서 국무총리는 내란행위에 대한 공모 내지는 묵인과 방조의 혐의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1차적으로 조사를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그 행위자가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를 추가 조사를 통해서 입증하려고……

○위원장 신정훈 국무총리는 내란, 계엄령이 발표되기 2시간 전에 대통령실에 도착했어요. 이미 계엄령 사태에 대해서 인지했다고요. 본인이 횡설수설하는데 실제로 소위 말해서 계엄령 법적인 발효를 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가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이렇게까지 발언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 국무회의는 법적으로 계엄령의 심의 절차로서 심대한 하자가 있다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요.

또 본인이 이 계엄령을 막기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반대 의견을 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위헌적인, 명백한 계엄령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불법 계엄령을 방조했어요. 사후에 그 조치 과정에서도 본인이 반대하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그리고 반대했다 그러면서도 사후에 이 불법적인 계엄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수수방관하고 거기에 동조했어요. 국회에 통고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어요. 이런 중차대한 혐의로 봤을 때 국무총리는 다른 계엄을 직접 현장에서 지휘했던 사령관들보다도 훨씬 중차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건의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해야 될 위치에 있는, 어찌 보면 본인의 의사가 분명하게 위법·불법을 가늠해야 되고 위헌과 합헌을 가늠해야 될 위치에 있는 자가 그 문제에 대해서 방관하고 또 공모하고 같이 동조하고 아무런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하면 어찌 보면 특전사 사령관보다도, 방첩사 사령관보다도, 국방부장관보다도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이 국무총리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엄정히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엄정히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의지 있어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예, 엄정히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지금 그렇게 비공식적으로…… 아니, 비공식적이 아니라 비공개적으로 수사하고 사후적으로 조사했던 내용들을 살짝 언론에 흘리고 이런 방식으로는 안 돼요.

이 문제는.....

계엄의 수괴가 대통령이고 또 지금도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총리가 지금 직무대행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야기했듯이 현장의 경찰청장보다도 몇 배 더 큰 책임 있는 자가 지금 구속되지 않고 직무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잘할 수 있겠어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엄정히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관련돼서 이 관련 법들을 철두철미하게 적용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다음에 이 역사의 불행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마지못해서 명령으로 이 명령을 수행했던 그런 경찰이나 국군도, 군대도 책임이 큽니다마는 그 위법성을 가장 핵심적으로 판단하고 그 문제를 지적해야 될 그런 책임 있는 자가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라고 생각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정확히 규명하는 것, 국가수사본부가 담당해야 될 내란죄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철저한 수사를 촉구드리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내란죄라고 하는 이 업무가 국가수사본부에 왔다는 것은 경찰에게 부여된 위상이 시대적으로 달리하는 시대에 지금 임해 있습니다.

그 업무의 중차대함이 국가수사본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착오적인 경찰의 수사 방해 또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무력화, 이런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물타기 또 소위 말해서 가로채기, 이런 일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용납되지 않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국회에서도 관심 갖겠지만 국가수사본부장으로서 막중한 사명을 이해하시고 또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현안질의가 계속 중이지만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현안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생 위원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이호영 경찰청장직무대행께 묻겠습니다.

경찰의 남태령 차벽 봉쇄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경찰은 지난 21일 낮 12시부터 22일 일요일 16시 40분까지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을 막았습니다. 이 엄동설한에 무려 28시간 동안 농민들과 시민들은 꿈쩍도 하지 못하고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농민들은 16일부터 전남 무안 그리고 경남 진주시 양쪽에서 트랙터를 몰고 출발한 뒤 충남 공주시에서 만나 세종청사를 지난 후 남태령으로 올 때까지 어떤 폭력도 없이 질서

를 유지하며 평화롭게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태령 고개 부근에서 서울청의 시위 제한 통고가 내려왔고 경찰은 8차선을 차벽으로 봉쇄하고 농민들의 서울 진입을 막았습니다. 마치 2008년 촛불시위를 막아선 명박산성을 연상케 했습니다.

이호영 직무대행님, 시위 제한 통고는 누가 지시한 겁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통고는 집시법에 신고된 대로 절차를 현장에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현장에서 누가 통보했습니까? 누구의 지시를 받고 누가 통보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아마 서울청에서 누가……

○정춘생 위원 명확히 얘기하십시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누가 통보했는지는 제가 지금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춘생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정춘생 위원 서울청장직무대행도 나와 계시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 최현석 예.

○정춘생 위원 누가 지시하고 누가 통보했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 최현석 경비 기능에서 지시를 할 겁니다.

○정춘생 위원 거기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 최현석 아닙니다. 위원님, 그 당시에 저희가 남태령 고개 그 인근에서 트랙터가 오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제한 통고가 된 사항이다 보니까 차선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트랙터에 타고 있던 분들이 갑자기 역주행을 하셔 가지고 반대 차선까지 다, 왕복 8개 차선을 모조리 다 점거를 해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질서 유지 차원……

○정춘생 위원 왕복 8개 차선을 정복했다는 것은 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점거했다는 것은.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 최현석 그거는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정춘생 위원 확인을 해 보겠고요.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 최현석 예, 맞습니다.

○정춘생 위원 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와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즉 허가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 최현석 예.

○정춘생 위원 그런데 무슨 법적 근거로 트랙터의 행진을 차벽으로 봉쇄하고 막았습니까?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 최현석 당시……

○정춘생 위원 청장대행님, 답변해 주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법상 신고제로 돼 있는 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공공질서 차원에서 제한 통고 정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저는 그 당시에 트랙터를 봉쇄한 것 자체가 위헌·위법한 경찰의 조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시법 제12조에 따르면 질서유지인을 두고 행진하는 등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대안이 있으면 집회를 금지할 수 없습니다. 맞지요?

대행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맞지요, 이호영 대행님?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정춘생 위원 집시법 제12조에 따르면 질서유지인을 두고 행진하는 등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대안이 있으면 집회를 금지할 수 없습니다. 맞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정춘생 위원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경찰은 경찰버스로 도로를 봉쇄하고 농민들을 막아섰습니다. 트랙터 유리를 부수며 농민을 강제로 내리게 하고 농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교통 혼잡을 이유로 저지했다고 하지만 이 또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약간의 불편은 있을 수 있으나 평화롭게 행진 중이었습니다. 8차선 전체를 봉쇄하면서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한 것은 오히려 경찰입니다. 경찰의 차벽 봉쇄와 집회 제한 통고는 반현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보십시오. 농업용 트랙터가 12·3 내란에 동원된 장갑차라도 됩니까? 농민들이 무슨 무장 군인이라도 됩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 장면은.....

○정춘생 위원 이러니 경찰이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보위에만 앞장선다는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경찰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 경호처를 방패 삼아 현재의 탄핵심판 서류조차 접수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입니까, 아니면 한밤중에 혹한에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선 시민들입니까? 대행님 답변해 보십시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비약적으로 거기까지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정춘생 위원 이게 비약입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희들이 그거를 탄핵 반대 이런 것 때문에 집회·시위를 막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집시법이나 이거에 따라서 제한 통고했고 제한 통고에 따라서 적법하게.....

○정춘생 위원 경찰이 제한하지 않았으면 평화롭게 짧은 시간 내에 서울에 진입해서 다 마무리될 평화로운 행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막아서면서 일이 커진 거예요. 아직도 그것 인정하지 못하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희들은 제한 통고한 것이 적법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할 말은 없습니다.

○정춘생 위원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제한 통고 자체가 불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춘생 위원 거기에 어떠한, 시위 행렬이나 거기 참가한 사람들의 어떤 불법적인 요소가 있길래 왜 제한을 하십니까? 그것 자의적인 판단 아닙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왜냐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트랙터라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크고요, 그것이 34대가 한꺼번에 도로를 주행했을 때는 극심한 안전이라든가 교통 불편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교통 불편은 차벽으로 다 봉쇄하면서 더, 경기도민의 서울로의 진입을 더 막은 건 경찰입니다. 장시간 동안, 28시간 동안 그렇게 혹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아까 서울청장도 얘기했듯이 저희들이 제한 통고하면서 정지를 했는데 트랙터가 전 차선을 전체적으로 연좌해서 점거하다 보니 저희들도 교통안전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차벽을……

○정춘생 위원 질서 있게 갈 수 있도록 안내만 잘 해 드리면 아무 문제 없이 진입이 가능했고 조용히 끝날 일이었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집회·시위하는 분들 보호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만 트랙터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 제한 통고에도 같이 따라 주는 것이 상호 간의 민주적인 질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춘생 위원 대행님, 농민들이 고령이 많은 것 아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래서 저희들도……

○정춘생 위원 그 엄동설한에 저체온증에 시달리고 응급실에 실려 간 분들도 계세요. 이분들에 대해서 보상할 계획 있으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아직 그거는 법적인 검토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춘생 위원 법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나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을 비롯한 많은 야당 의원들이 남태령에 달려가 농민들과 함께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나서서 강력 항의하고 행진 보장을 요구하고 나서야 경찰은 봉쇄를 풀었고 농민들은 한남동 관저 앞까지 행진할 수 있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받는 그날까지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시민들의 집회와 시위는 계속될 것입니다.

헌법에 명시돼 있듯이 모든 국민의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직무대행에게 요구하겠습니다. 남태령에서의 차벽 봉쇄, 농민들의 진입을 방해한 그 조치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 있으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희들이 아직 충분히 판단은 안 했지만 그거를 아직 사과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춘생 위원 왜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당연히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희들이 적법 절차를 진행했고 시민 안전을 위해서 119라든가 난방차 다 들여보내 줬고요. 저희들이 상호 간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사실 집회·시위의 건전한 질서……

○**정춘생 위원** 그러니까 이호영 대행님, 이 엄동설한에 난방 버스도 그렇게 다 보내 주시고 정말 밥차도 보내 주시고 핫팩도 보내 주시고 이런 민심이 왜 일어나는 건지 현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평화로운 집회가 보장이 안 되고 그렇게 막아서기 시작하면 예상 못 한 소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경찰의 임무는 평화롭게 시위를 보장하고 질서를 유지해 주는 겁니다. 막아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평화롭게……

○**정춘생 위원** 공감한다면 남태령에서의 진압, 봉쇄에 대해서 사과해 주십시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필요합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것 지금 사과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춘생 위원** 사과해 주십시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사과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춘생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 부분은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경찰의 그 조치는 당연히 저는 위헌·위법적인 행태라고 생각을 하고 경찰의 대표로서, 대표 수장으로서 반드시 행안위에서 사과를 받아야 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정춘생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경찰이 좀 더 신중하고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회의 마무리하면서 제가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선관위 사무총장님, 비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방은 상대방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한다라는 뜻이지요.

공직선거법에서 후보자 비방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안 되어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제가 읽어 드릴게요.

공직선거법 제251조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전에 조은희 간사님께서도 현수막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총장님, 후보자가 뭐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선거에 출마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거기에서는 앞둔 해당 선거의 선거 후보, 나가는 자를 얘기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에도 이 선거에 나갈 것이 예상되는 자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배준영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공직선거법 아까 읽어 드렸던 251조를 보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렇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런데 지금 계엄, 탄핵 이 와중에 국민의힘 의원님들 대부분 지역에 이런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계엄 해제 불참, 내란 동조한 공공공 의원님’, 오른쪽에 ‘민주당’. 이것 비방입니까,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비방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비방으로 볼 여지가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배준영 위원** 비방으로 볼 여지가 있으면 이것 못 붙이게 유권해석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지금 이 문제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렇지요. 오늘 논의하신다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공직선거법 그 규정과 지금 정당법 규정에서 허용되는 규정과,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그러니까 해당 선거 그다음에 후보자에 대한 비방 이런 부분들은 모든, 그러니까 시간적 제약이 없이 허용되고 작동하는 조문이 아니고요……

○**배준영 위원**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해당 선거를 전제로 한 조문입니다. 그래서 그 공직선거법 조문을 보시면 국회의원선거 같은 경우에는 120일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선거에 대한 부분이 선거에 임박하거나 시점 그리고 이 사람이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준들이 거기서 설정됐을 때 비로소 공직선거법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이 현수막은 정당에서 내거는 정치적인 표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수막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바로 적용시킬 수 없고 정당법에서 허용되는 현수막에 해당하는 부분이냐 아니냐를 검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얘기한 대로 그 ‘내란공범’ 이런 것도 왜 안 하느냐와 덧붙여서 11월 달에 ‘이재명 감옥 가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법적 판단 기준을 다른 의미에서 저희들이 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오전에 조은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허용하지 않겠다고 잠정적으로 조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도 선부른 결정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의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배준영 위원** 잠깐만요. 제가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총장님, 그런데 저는 말이지요, 총장님 말씀은 한쪽의 비방일지 모르는 것을 허용했으니까 다른 쪽도 얼마든지 비방해도 상관없다 이런 쪽으로 결론을 내신 것 같은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아닙니다.

○**배준영 위원** 잠깐만요. 제 얘기 좀 들어 보세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공직선거법 251조를 보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하는데 글쎄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이 앞으로 의정활동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잠재적인 후보자입니다. 그리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다음

선거에 나오실 거냐 안 나오실 거냐. 그래서 나오실 의사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역으로 말하면 그게 비방이 되는 겁니다. 비방죄 성립하는 거지요. 그래서 총장님께서는 ‘이 것도 비방했으니까 되고 저것도 비방했습니다’ 그렇게 다 풀어 주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대한민국에 현수막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지역별로도 정당에서도 시끄러운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배준영 위원** 그러니까 서로를 헐뜯거나 비웃거나 비방하거나 그런 것을 보면요 시원하다고 박수 쳐 주는 사람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다 같이 그냥 싸잡아서 ‘비방해도 상관없으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비방을 못 하게 바로잡아 줘야 되는 게 선관위의 할 일이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국민들의 정서를 정확하게 읽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배준영 위원** 손 놓고 계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 행안부차관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이것밖에 안 남았네요.

지금 여러 가지 사태로 경찰관분들의 사기가 굉장히 저하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배준영 위원** 그래서 사기 저하를 막고 끌어올리려고 하는 게, 조직 개편에 관련된 얘기인데 아까 존경하는 김종양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매년 1월에 실시되던 경찰의 정기 인사가 이번 사태에 따른 지휘부 공백으로 당분간 미뤄질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총경 이상의 승진과 임명 권한은 경찰청장, 나아가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또 좀 더 얘기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도 저희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나서 줄 생각 있으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어쨌든 경찰청의 추천을 받아서 행안부장관이 제청을 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경찰청하고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 위원입니다.

김용빈 사무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장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이미 계엄 선포 2주일 전에 선관위 간부 30명 체포 명단을 작성했고 그리고 계엄 선포 이틀 전에 노태액 중앙선관위원장 체포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 당일 날, 계엄 선포 당일 날에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30명 체포 명단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 모 대령 진술로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언론에서 보셨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이해식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총장님, 그 보도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일단은 안타깝게 생각이 든 게 저희 기관이 가지고 있는 서버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부정선거의 그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왜 서버를 압수수색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알겠습니다.

30명 명단에 사무총장님 이름도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저는 지금까지의 그 기사 내용에는 우리……

○**이해식 위원** 알지 못하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못 합니다.

○**이해식 위원** 국수본부장님, 어떻습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저도 30명 명단을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해서 지금 현 사무총장님이 계신지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알겠습니다.

경찰청 청장직무대행께 묻겠습니다.

조지호 청장이 법사위에 출석을 해서 김승원 법사위 간사께서 이렇게 물었어요, ‘계엄 요건이 되느냐, 경찰이 그런 것을 검토를 했을 것 아니냐’. 그래서 ‘당연히 그런 검토를 해 봐야지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조지호 경찰청장이 어떻게 답변했냐 하면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22시 31분에 전화를 해서 긴급하게 국장급 이상 그리고 시·도청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열린 게 0시 회의지요, 지휘관회의.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그것 맞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그 0시 회의 때 비상계엄 요건이 되는지를 검토를 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 당시 회의에서는 검토하지 않았고요. 조지호 청장이 그 당시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런 경우에 처음 있는 일이니 법적 검토를 한번 해 보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해당 기능에서는 법적 검토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 정도 하고 끝났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 얘기는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식 위원** 아니, 그런데 계엄 선포한 지 한 시간 반이 지났는데, 거의 두 시간이 가까이 됐는데 법적 검토를 못 합니까? 포고령도 그 이전에 나왔고……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여하튼 그 당시에는 국회니 이런 상황을 지휘관들은 잘 몰랐고요. 청장이 와서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4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니’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해식 위원** 알겠습니다.

차장님께서는 그때 발언을 하셨어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는 발언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서요.

○**이해식 위원** 그때 여러 가지 브리핑도 하고 그랬을 텐데, 관련된 부처에서……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브리핑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해식 위원** 어떻든 30분간 회의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 회의 내용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계속 안 주고 계세요.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게 시·도청장 회의 같은 경우에는 화상회의를 했잖아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래서 화상회의 기록이 있을 테니까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리고 그 지휘 회의는 누가 참석을 했고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이해식 위원** 그리고 좀 시간 끊어 주시고요.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앞으로 나와 주세요.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 방첩사의 인력 요청과 관련해서 국수본부장을 패싱을 하고 경찰청장한테 보고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윤승영** 그렇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런데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가 있었습니까?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윤승영** 우선 형식적으로는 국가수사본부장은 개별 수사 지휘에 있어서 경찰청장으로부터 감독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합니다. 다만……

○**이해식 위원** 이게 수사 사항이 아니잖아요.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윤승영** 예, 수사 행정이라든가 인력의 배치 이런 부분들은 경찰청장에게 최종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계통을 맟아서 가도 되지만……

○**이해식 위원** 그런데 보고를 했잖아요. 국수본부장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윤승영** 예, 사후에……

○**이해식 위원** 국수본부장한테 보고를 한 게 11시 58분경에 경찰청장한테 보고를 마치고 그 이후에 12시 반경에 보고를 했는데……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윤승영** 그렇습니다.

○**이해식 위원** 30분 이상의 시간이 걸렸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윤승영**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는 경찰청장 지휘부 회의에 참석했었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 지휘부 회의 때문에 못 했다 그런 얘기군요?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윤승영** 예, 그렇습니다.

○**이해식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권한대행, 직무대행님, 그런데 지금 KBS의 보도에 따르면 11시 39분에 100명 정도…… 11시 32분입니다, 정확하게 자료로는 100명 정도의 수사관 명단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는데 국수본부장 보고에서 국수본부장께서는 이것 시간을 끌고 내가 아침에 올라갈 때까지는 어떤 별다른 조치를 하지 마라 그랬는데……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100명 정도의 명단이 작성이 됐고 서울청 수사부장이 명단을 정리하고 사무실에 실제 대기하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보셨지요? 그렇지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봤습니다. 어제 봤습니다.

○**이해식 위원**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이것은 위원님, 저도 어제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기 때문에 우리 수사기획과장하고 서울청에서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식 위원** 서울청 수사부장, 기획관 나와 보세요.

답변해 보시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수사부장 임경우** 서울 청 수사부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과 관련해서 최초로 보고를 받은 것은 00시 10분경입니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2계장한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수본에서 수사관 100명의 파견 요청을 군 관계자로부터 받았으니 명단을 작성해 달라는 요청이 왔었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물론 그때 저하고 수사차장이……

○**이해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단을 작성을 해서 대기를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수사부장 임경우** 제가 그래서 그 지시를 요청을 받고 그러면 명단만 작성해 달라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구체적으로 왜, 이유가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지시를 다시 했고 그 이후에 국수본에서도 명단 작성만 하라고 해서, 제가 그때 광역수사단장을 겸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역수사단에 지시하기를, 그때 00시부터 경계 강화가 발령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명단 작성뿐만 아니라 경계 강화 때는 비상연락 체계 및 출동 대기 태세를 유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단은 작성하되 사무실에 출근하라고 제가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다만 그때 제가 지시를 한 게 00시 22분부터 36분 사이인데, 제 판단은 그랬습니다. 명단을 작성하되 국수본에서도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한테 요청한 게 없기 때문에 명단을 국수본이나 다른 기관에 주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제가 광역수사단 담당 실무팀장한테 명단은 작성하되 그 명단은 절대 아무에게도 보내지 마라, 나한테만 보고해라라고 해서 결국은 제가 명단을 받기는 01시 26분에 받았고 이미 국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계엄 해제 의결을 한 이후이기 때문에 제가 2시 1분부터 3분 사이에 사무실 대기는 해산을 시킨 사안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해식 위원** 그러니까 실제 80명이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수사부장 임경우** 예, 그때……

○**이해식 위원** 그것은 경계 강화가 된 시점하고 겹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수사부장 임경우** 예, 그렇습니다. 경계 강화가 00시에 발령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경계 강화 규정에 따라서 비상연락 체계 및 출동 대기 태세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명단을 작성하고 일단은 출근하라고 지시를 했고, 직원들이

제가 알기론 순차적으로 한 80명 정도가 사무실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 제가 명단 보고를 받고 난 이후에 종산을 시켰습니다. 아울러 그때 저희들이 대규모 집회·시위……

좀 설명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해식 위원** 예,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세요.

○**서울특별시경찰청수사부장 임경우** 그 상황 외에도 보통 대규모 집회·시위 상황이 있으면 즉 대규모의, 국회 앞에서도 그때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모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수단의 경계 강화 기간 동안 발령된 이후에 명단 작성하고 사무실 대기 이후에도 경찰서 지능팀 같은 경우에도 그때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집회 상황에서 신고된 집회든 미신고된 집회든 시민들이 대규모 모여 있는 상황에서 우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통상적인 절차와 시스템에 따라 가지고 경찰서 지능팀 직원에도 출근 지시를 했었고 그렇게 조치를 한 겁니다.

○**이해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되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일단 정리를 하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를 서면으로 정리를 하고, 증빙할 수 있는 자료까지 붙여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서울특별시경찰청수사부장 임경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 위원** 부산 사하갑의 이성권 위원입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계엄 사태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고 야당 위원님들 다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회에 있는 여당 위원들도 똑같은 심정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고 언론에 많은 기사들이 나오는데 우리 국정감사에서도 사실 야당 위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계엄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야당 위원님들 질의의 핵심 내용들이 행안부장관이 충암고 출신이고 그리고 또 방첩사령관이 충암고 출신이고 그래서 충암고 출신에 의해서 계엄이 논의되고 있고 또 행안부장관이 방첩사령부를 방문해서 또 몇몇의 소수 인원으로 식사를 하면서 계엄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큰 틀에서의 문제 제기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그때 당시는 믿을 수 없는 일인데 결과적으로 계엄이 이루어진 걸 보면 좀 복기를 해서 한번 따져 봐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언제부터 논의가 됐는지 이런 것도 좀 알고 싶기도 하고요.

이 과정에 행안부와 그리고 또 방첩사령부와의 관계성 속에서 국가수사본부장님이 보니까 자주 방첩사령부하고 업무적인 만남을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대적으로?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예, 공식적인 방문이 있었고요. 방첩사령관도 저희를 방문했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씩 좀 이렇게…… 제가 꼭 그게 단정 짓는 건 아닙니다. 하나씩 좀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가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2023년 4월 26일 날 본부장님께서 방첩사를 방문하셨지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그렇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때의 방문 목적은 무엇이고 누구를 만났는지 그냥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제가 작년 3월 29일 날 부임을 했고요. 부임해서 안보수사국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안보수사국장이 내년 안보수사 경찰로 완전히 국정원에서 저희 경찰로 이관되면서 그것 때문에 안보수사국장이 방첩사 방문을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황 방첩사령관은 저하고 국가방첩회의에서 만나서 같이 회의를 하던 사이니 그러면 내가 직접 방문하는 것이 어떠냐 하니까 방첩사 측에서 환영을 해서 그때 저희 국장과 과장이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이성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절 계엄과 관련된 논의는 당연히 없었던 거겠지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그렇습니다. 전임 사령관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성권 위원** 그렇지요.

1월 10일 날도 방첩사령관이 그때는 국가수사본부를 직접 방문을 했지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그때는 신임 방첩사령관이 부임 인사를 공식적으로 오겠다고 저희 안보국으로 연락이 와서 그때 만났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리고 3월 20일 되면 방첩사령부를 행안부장관하고 직접 우리 본부장님이 같이 가셨지요? 그렇지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행정안전부장관께서 저와 당시 정보국장과 해경 정보외사국장하고 업무 관련성이 있으니 같이 가시겠다고 제안을 했고요. 당시 저로서는 안보수사국의 조직과 인력을 어느 정도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장관님을 더 뵙고 저희 안보수사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때 야당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했던 핵심은 뭔가 하면 안보수사국장, 국가수사본부장하고 방첩사령부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이관 문제로 인해서 업무 협의할 게 있지만 장관이 잘 필요 없다 이런 게 문제 제기였거든요, 제 기억에. 맞지요, 본부장님?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러면 그때 가셔 가지고 어떤 행사를 했고 그리고 별도의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또 본부장님이나 장관님, 극소수의 인원이 별도로 만나거나 회동하거나 식사할 그런 공간이 있었습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극소수의 공간은 아니고요. 방첩사에서는 방첩사 영관급 장교 이상이 전원 참석해서 저희에게 업무 브리핑을 해 줬고 또 그 사진 촬영 현장은 방첩사 홈페이지에도 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 소개가 끝나고 그 역내에서 방첩사장성급 이상과 저희 방문한 정보국장을 포함한, 장관까지 해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성권 위원** 예를 들어서 별도로 행안부장관과 방첩사령관이 따로 만나거나 별도의

시간을 가진 거는 없었습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그런 적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러면 그때 상황에서는 계엄과 관련된 논의가 일절 없었던 거고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없었습니다.

○이성권 위원 이 결과 이후에 나중에 MOU 맺어지지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그렇습니다.

○이성권 위원 MOU 내용과 관련해서도 사실, 국회의원들한테 지금 제공을 했습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제공했습니다. 위원님실에도 제가 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다 제공했지요. 그래서 제가 받아 보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이 내용이 의혹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제가 제공받은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검토해 보니까 대공수사와 관련된 업무 협력에 관해 한정이 돼 있더라고요. 맞지요? 그렇지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그렇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래서 결국은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처럼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일절 계엄과 관련해서 사전에 어떤 지시나 명령 이런 거는 받은 적이 없는 거라고 봐도 됩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계엄이라는 건 상상도 못 했습니다.

○이성권 위원 상상도 못 했다…… 알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국정감사 기간 나왔던 걸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려고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국정원하고 그다음에 KISA하고 함께 합동으로 보안점검을 한 적이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렇습니다.

○이성권 위원 이때 10월 10일 날 결국은 국정원과 KISA가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이성권 위원 그 발표된 내용이 대통령의 12월 12일 날 담화에 보면 국정원으로부터 충격적인 내용을 전달받았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이성권 위원 그 10월 10일 날 발표했던 내용에 대해서 선관위 입장이 뭐지요? 공식적으로 그때 기자회견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보안 사항, 즉 해킹의 가능성이나 보안 사항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의 점검만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이성권 위원 그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국정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저희가 보안 방책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기 위한 과정에서 일부 보안 대책을 하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일부 기술적인 조치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보안 부분에 미약하다고 지적당한 그런 일부 내용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했었던 것은 그때 당시에 서버 전부를 저희들은 보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으로 해서 발표하게 될 전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우리 보안 서버를 보여 줬으니 다 봤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부정선거 혼적, 소위 해킹의 혼적이 있었냐 없었느냐를 확실하게 발표를 해 달라라는 것이 저희의 요구였었고요. 국정원은 우리는 보안 대책에 대한 그것만을 지금 검증한 것이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명의로는 발표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바람에 각자 보안 사항 이후에 발표가 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성권 위원** 알겠습니다.

30초 만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대통령께서 엄청나게 오판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담화 내용을 보면서. 그런데 그 근거가 된 게 작년 10월 10일 날 KISA하고 국정원이 합동으로 결과를 발표하고 그 내용을 보고한 거에 따라서 대통령이 그렇게 판단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만일에 그 내용이 잘못된 게 있다면, 저도 내용을 다 봤거든요. 국정원에서 발표한 내용들 보면 자칫하면 심각한 내용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선관위가 그때 당시에 사실관계와 관련된 별도의 대통령 보고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오판이, 그러니까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역할들을 선관위가 해 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 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원래 합동점검이 이루어진 시점이 5월 16일 날 행안위나 언론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 가지고 5월 23일 그때 선관위가 요청을 해서 합동점검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자료 요구를 좀 하고 싶은데 6월 9일 날 그때 선관위가 국정원한테 공문을 보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올해 3월 26일까지 엄청나게 많은 공문이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발신한 것과 회신한 공문들 있지요? 그거를 제출해 줘 보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알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걸 보고 다음에 한번 판단을 할 테니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때 당시에 국정원의 발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박 성명 비슷하게 조목조목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따로 대통령께 보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국정원의 보안 컨설팅에 대한 이행 결과를 금년 1월 달과 22대 국선 전에 3월 달에 2차에 걸쳐서 점검을 다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이 국정원 컨설팅과의 관계에서 남아 있는 의혹은 없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일단 하여튼 주고받은 공문들 다 제출해 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이 공문은 다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목록 말고 내용까지 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아, 내용까지요? 예.

다만 보안에 관계된 것은 나중에 위원님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예.

.....

○**위원장 신정훈** 총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위원장 신정훈** 방금 이성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요 국정원의 발표에 대한 선관위의 반박 입장을 낸 사실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위원장 신정훈** 그 주된 내용이 뭐였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언론에도 다 발표가 돼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북한에 의한 해킹 혼적은 발견할 수 없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보안에 미흡한 점은 있지만 국정원이 발표한 내용처럼 마치 모든 우리 서버의 보안 전산망이 취약한 것은 아니고 보안점검을 위해서 보안 방화문을 일부 해제한 상태에서 모의실험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저희들이.....

○**위원장 신정훈** 그러니까 충분히 국정원과 함께, 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점검한 내용은, 그러니까 선관위가 함께 점검한 내용은 이 서버의 어떤 해킹의 가능성이라든가 데이터의 어떤 조작이나 손실 그런 결과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런 걸 확인했는데 그게 국정원의 발표라든가 대통령에게 전달된 내용은 뉴앙스가 좀 다르게 전달되었다 이렇게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저희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성권 위원** 위원장님, 설명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료를 좀 보고 싶은 겁니다.

○**위원장 신정훈** 저는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하셔 가지고.....

사실 지금 국가의 계엄령이라고 하는 이 사태를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이 뭐였을까 아직도 의문은 남는데요. 근본적인 책임은 수사를 통해서 더 밝혀져야 되겠지만 특히 이 선관위를 둘러싼 부정선거 음모가 여전히 광장에서 뜨겁게 지금 되고 있고 또 유튜브에서 계속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이 국가기관의 검증 과정조차도, 국가기관의 소명조차도 계속 괴담으로 이렇게 퍼 나르기 하고 재생산되는 것이 이번 불행에 굉장히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 하는 것들 때문에 저희 위원회가 그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발언과 질문 답변을 통해서도 그 사실에 많이 접근했지만 여전히 그 문제가 사회적으로는 정리가 되지 않은 탓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임위원회에서 또 절차를 좀 가져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 뭐 이 정도로 저의 의견을 드리고요.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또 양당과 서로 상의해 가면서 그 과정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청주 서원구의 이광희입니다.

지난번 현안질의 때 경찰청 직무대행님하고 확인한 것은 경찰이, 또 특히나 국회경비대가 의원들을 출입 통제하고 회의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막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셨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이광희 위원 두 번째…… 오늘 말씀드릴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경찰의 비상계엄, 그러니까 내란의 공동작전을 수행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하고 다르게 오늘은 영등포서 무전 내용 녹취록을 가지고 분석을 해 봤더니 23시 55분에 영등포 경비과장이 87기동대장에게 ‘정출에 도착한 군 계엄 관련자들을 국회 안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 그리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명인지 확인 후에 국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 조치해 주세요, 최대한의 병력으로’ 이렇게 무전을 합니다. 맞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이광희 위원 안내하신 거 맞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이광희 위원 그리고 23시 57분에 이어서 실제로 국회 안내를 정출 쪽으로, 대기하는 64기동대장이 했다는 그런 무전 내용이 있고요. 1시 36분에도 ‘군인 10명이 도보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담장이 많이 높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해 주시고 3문하고 4문 쪽 안내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이렇게 그쪽으로 안내하라는, 결과적으로 공동작전을 수행한 거라고 봐도 되는 거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저희들이 통제한 건 맞고요. 공동작전이냐 공모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이광희 위원 이거는 공동작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아니, 어렵다는 뜻이 아니고요. 구체적인 경위나 이런 것은……

○이광희 위원 안내하셨잖아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일단 무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광희 위원 제가 지금 일부만 말씀드린 건데 여기 보면 헬기 내리고……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그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고요. 다만 그것이 고의나 공모나 이런 문제는 수사 파트에서……

○이광희 위원 그러나 공동작전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겁니까, 아니면 공동작전이라는 표현이……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거는 수사를 통해 좀 더……

○이광희 위원 수사를 통해서 알아봤으면 좋겠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그런 뜻입니다.

○이광희 위원 저는 이거를 공동작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수본부장님, 이 내용도 수사에 포함이 되는 거지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 위원장, 윤건영 간사와 사회교대)

○**이광희 위원** 국회가 군인들에게 유린되고, 더 참담한 거는 군인들은 그래도 일부 멈춰멈칫했거나 그런 흔적들이 있는데 경찰들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게 증명이 됨으로써 경찰의 국회에서의 존재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때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도 필요하고 다시 한번 헌법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이광희 위원** 세 번째는요, 서울청 경비단이 국회 경내에 무단 침입해도 되는 겁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무슨……

○**이광희 위원** 직무대행님……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무슨 뜻인지 제가……

○**이광희 위원** 경비단이 국회 경내에 들어와도 되는 겁니까, 허락 없이?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무단으로 침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광희 위원** 지금 국회법 제144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국회 경호를 위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서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지 스스로 들어올 수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이광희 위원** 그런데 경찰기동대의 국회 경내 무단침입이 확인되는 것을 또 발견을 했습니다. 들어온 거 맞지요?

자, 3시 40분경에 8기동단 경비과장이 4기동단 경비과장에게 ‘8기동단 경력들이 국회 정출 안에 대기 중에 있어요. 교대하는 기동대가 몇 개인지 그리고 내 안으로 좀 보내 주십시오, 교대 기동대를’…… 내부에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국회를 국회의장의 허락 없이, 지시 없이 들어오신 거예요. 이거는 국회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이 계엄군의 국회 침탈을 안내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경찰기동대가 국회 경내에 무단침입했다는 게 확인되는 사실들입니다.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읽어 드릴까요? 03시 43분에는 4기동단장, 8기동단장이 수신자 인데 ‘2문 쪽, 어떻게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또 8기동단은 4기동단장에게 ‘예, 국회경비대 경력한테 열어 달라고 하면 됩니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들어와서 활동 다 한 겁니다. 작전 다 수행한 거잖아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일부 기동대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광희 위원** 들어갔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이광희 위원**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희들은 아마 국회경비대가 열어 줘서 들어간 것 같기는 한데 허가를 받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광희 위원** 기본적으로 국회에 경찰병력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의 동의가 있고 국회의 동의가 있거나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야 되고 운영위원회 동의가 받기 어려울 경우는 사무총장의 결정으로 경내 경찰인력 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경우에도 사무총장의 요청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

려면 경찰들도 군인들과 함께 국회를 유린한 것 아닙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 점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졌으면 하는……

○이광희 위원 자꾸 수사, 수사 말씀하시는군요. 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찰이 국회 경내로 함부로 들어와서 함부로 작전을 수행하고 군인들을 안내하고 더군다나 국회를 보호해야 될 국회경비대가 회의에 참석하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을 막고……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도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광희 위원 이 세 가지가 다 제가 보기에는 공동작전이다, 내란의, 군인들과 함께한.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 점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이광희 위원 수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게 공동작전하신 거잖아요.

국수본부장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여기에 어떤 분이 어떻게 통신을 했는지 다 나와 있어요. 지금 그분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다 이분들 조사 중입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예, 지금 그 당시……

○이광희 위원 지금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경찰인력의 전반이 다 국가 내란 사태에 포함이 돼 있다는 점이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제대로 수사해서 책임자들을 엄벌에 처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의 권위를 살리고 그러는 일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을 긴급체포하면서까지 대단히 엄중하고 신속하게 수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달희 위원 국민의힘 이달희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불안해하셨던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로 인해 많은 사회적 혼란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 집권여당 국회의원으로서 먼저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차관님, 국가가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국민들께서는 나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까요? 차관님은 무엇이 지금 가장 시급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일단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요. 자기가 어쨌든 해야 할 일들 흔들림 없이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달희 위원 해야 할 일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의 대통령도 지금 탄핵소추되어 있고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이럴 때는 우리 많은 법학자, 헌법학자들의 기고에 의하면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법과 원칙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공직사회가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를 지켜 나가고 국가를 지속 성장시키고 유지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틀이 법과 원칙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달희 위원** 지금 우리가 믿을 것은 그동안 국회가 만든, 입법한 법 그리고 헌법, 그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우리 국회에서, 국회는 사실 국민을 대의해서 여러 가지 협안을 질의하고 또 입법하고 보완 입법도 하고 법을 해석도 하고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수사본부장님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두 페이지짜리인 것으로 기억한다’ 또 ‘국회의원 체포와도 관련해서 비슷한 질문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모호한 답변을 할 것 같으면 안 하시는 게 맞고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퍼즐을 조각조각, 국회의 많은 상임위에서 또 해당되는 많은 공직자들한테 질문을 조각조각 합니다. 그렇지요? 조각조각 하면…… 지금 공수처, 국수본 그리고 검찰 이 3개 기관에서 합동으로 물론 하시게 됐습니다마는 이 3개 기관에서 시기적으로 사람도 다르고 질문도 다르고 각각 퍼즐을 하나씩 막 이렇게 던져댑니다. 이 모든 것을 해내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한 수사를 해서 나중에 이게 호랑이 그림이었는지 고양이 그림이었는지 정확하게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다 시기적으로, 어떤 때는 나와서 이 말 했다가 그 뒤에 또 뒤집어진 그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먼저 했던 얘기가 가짜뉴스가 되어 막 돌아다니고 우리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차관님 생각 어떠세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법과 원칙을 강조하시는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이달희 위원** 그리고 또 이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하는 부분은 우리 입법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 정부에 이송된 이후에 15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이달희 위원**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이 부여한 기간 동안 법률안의 위헌성과 타당성을 검토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15일이 안 됐는데 며칠까지 내놔라 이렇게 해서 오늘 그동안 듣던 계엄군이라는 얘기도 정말 듣기가 민망하고 힘들었는데 또 야당발 ‘점령군’이라는 얘기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서 이 부분도 우리 국민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용어들이 언론 지상에 막 적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입법부도 반드시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말씀 주신 것처럼 헌법에는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서를 붙여서 국회에 환송, 환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래서 우리 야당 위원님께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입법부부터 우리가 만든 이 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한번 기다려 주는 것도, 우리가 지금 가장 혼란스러운 사회를 바로잡아 가는 길은 법과 원칙을 지켜 가는 길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 차장님, 아까 말씀 중에 경찰 안의 익명 게시판 그것 대외적으로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겁니까, 자체 내의 겁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는 그 게시판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전에도 비슷한 게 하나 있었는데 압수수색영장 받아서 그 쓴 사람을.....

○이달희 위원 아니, 제 질문을 지금.....

내부에만 보는 거예요, 국민들하고 공유하는 게시판입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것을 제가 여기 와서 알게 돼서 그 자세한 내막을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달희 위원 아니, 직원들이 쓰는 게시판 한 번씩 안 보십니까? 모른다고 하실 일이 아니지요. 이게 정확하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는 사이버상의 공지사항이나 이런 걸 보는 거지요.

○이달희 위원 기관마다 직원들의 게시판이 다 있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위원님, 저도 여기 와서 처음 알았고 어디 사이트에 뭐가 있는지도 처음, 모르는 상황에서.....

○박정현 위원 아니, 아까 점심 때 그것 확인하셨어야지요.

○이달희 위원 아니, 점심 때.....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하셨는데 그걸 모른다고 하시면 됩니까? 보고 다시 정리해서.....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아니, 기관마다 다 내부 게시판이 있습니다. 익명으로 하는 경우는 저는 익명성은 보호되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간부들이 보면서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 번씩 체크도 하고 보고도 받으셔야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지금 뒤에서.....

○이달희 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서 성인지가 떨어지면 그 사람을, 법에 의하면 익명은 보호해 주고 우리 직원들이 이런 성인지가 나쁘다 싶으면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고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모른다가 어디 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방금, 외부망 온라인 '블라인드'랍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부망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식 위원 용인갑 이상식입니다.

검찰에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휴대폰을 압수했습니다.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방첩사에서 체포조를 지원해 달라 그랬는데 그 지원하고 관련된 일이라고 합니다.

그날 밤에 동원된 경찰관들의 총수가 한 40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영등포서 10명만 이렇게 관심을 갖느냐? 저는 체포조라는 말 그리고 경찰에서 동원된 사람이 다른 경비인력이 아니고 강력계 형사들, 이 두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대답만 크게 하시면 됩니다.

영등포서 형사과장님.

○**서울영등포경찰서형사1과장 박창균** 예.

○**이상식 위원** 형사들이 거기서 대기하고 있을 때 체포조라는 말, 영등포서 형사들이 누가 안에 들어가 가지고 국회의원 누구를 체포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까?

○**서울영등포경찰서형사1과장 박창균** 아닙니다. 받은 적 없습니다.

○**이상식 위원** 형사들 사이에서 오늘 밤 우리가 오늘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체포할지도 모르겠다는 위법성의 인식이 조금이라도 있었습니까?

○**서울영등포경찰서형사1과장 박창균** 전혀 없었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때 수갑이나 총기 휴대했습니까?

○**서울영등포경찰서형사1과장 박창균** 장구 소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식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청 임경우 수사부장님.

○**서울특별시경찰청수사부장 임경우** 예, 수사부장입니다.

○**이상식 위원** 그때 80명 대기하라고 수사2계장한테 연락받았지요. 그렇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수사부장 임경우** 예.

○**이상식 위원** 그 사실을 국가수사본부장한테 보고했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수사부장 임경우** 저는 그때 국가수사본부장님한테 전화 직접 드린 적 없습니다. 지시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상식 위원** 서울청장한테 보고했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수사부장 임경우** 아닙니다. 저하고 수사차장이 의사결정을 한 겁니다.

○**이상식 위원** 그날 밤에 혹시 어떻게, 체포조로 동원된다는 그런 위법성에 대한 인식을 조금이라도 했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수사부장 임경우** 전혀 들은 바 없습니다.

○**이상식 위원** 앉으십시오.

제가 경찰을 한 경험에 의하면 대형 재난이나 또는 대형 집회·시위가 있으면 지능팀이나 강력팀에서 당연히 현장에서 대기를 합니다.

윤승영 국장님, 그렇습니까?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윤승영** 예, 맞습니다.

○**이상식 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윤승영** 예, 그것은 똑같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날 밤에 명단을 준 게 별도로 무슨 체포조를 구성하고 한 게 아니고 이미 나가 있던 강력계 형사들,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갔던 사람이 아니고 관행에 따라서 질서 유지나 시민 보호를 위해서 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 있으니까 명단부터 주고 그런 식이잖아요. 그렇지요?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윤승영** 예, 항상 그랬듯이 대형 집회나 그런 게 있으면 항상 강력이 나가고 그중에 명단을 준 겁니다.

○**이상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에서 경찰관들이 국회의원들 체포에 가담하겠다는 그런 일체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종수 본부장이 지금

까지 한 진술이 사실이라고 본다면 우종수 본부장은 이 체포조와 직접적인 관련이,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검찰에서 우종수 본부장의 휴대폰을 압수합니까?

그런 똑같은 논리라면, 검찰에서 왜 그랬지 않습니까. 특전사령관에 대해서 신문을 하면서 이것은 윤 대통령이 아니고 김용현 장관이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유도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신문에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검찰의 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세현 고검장에 대해서도 ‘당신 누구한테서, 혹시 대통령한테서 전화받은 게 없느냐?’ 이런 식으로 검찰 수뇌부에 대해서도 똑같이 압수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왜 우종수 본부장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합니까, 휴대폰을, 그것도 참고인이면서. 압수수색영장 사본도 그것도 제시를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합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매우 의심하면서 여기에는 앞으로 권력을 다룰 잠재적인 경쟁 기관, 권력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하여튼 수사권을 놓고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최대의 잠재적인 경쟁 기관인 경찰에 대해서 흔들고 흔집 내기 시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종수 본부장에 대한 휴대폰 압수수색이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관할권을 공수처로 이관한 후 하루 만에 이루어진 것 맞지요, 본부장님?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맞습니다. 제가 확인했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교통정리가 이루어졌어요.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하고 수사가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 하루 만에 이러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

또 국방부 조사본부장까지도 압수수색을 했어요, 휴대폰을. 저는 지금까지 언론이나 일체의 기사에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무슨 이런 내란 혐의나 체포조에 관련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검찰에서 앞으로 향후 자기들의 권력에 대한 입지가…… 이제 까지 검찰이 얼마만큼의 권력을 행사해 왔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최대의 내란 사건에서 자기들이 소외되고 있다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 위기감 속에서 앞으로 자신들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놓고 직접적인 관련이 전혀 없는 우종수 본부장까지—조금 전에 양부남 위원께서 말씀하신—오염시키기, 흔들기, 흔집 내기에 나섰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검찰 총수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에 당연히 검찰에 타격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 권력이 또 재창출되고 하면 자신들의 입지가 굉장히 위태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는 전혀 권력이 아닌, 살아 있는 권리가 아닌 죽은 권력에 불과한 윤석열 대통령을 놓고 이렇게 검찰이 자기들의 존재를 과시하려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이렇게 돼서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그냥 듣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문제를 방치할 경우에 이러한 문제가 저는 계속되리라고 보고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검찰에서 이렇게 상대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에 대해서 훼방 놓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장관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을 맨 처음 신청한 것도 경찰 아닙니까? 그래서 김용현 장관이 그걸 눈치를 채고 자진 출석하는 형식으로

검찰에 출석을 하니까 그걸 긴급체포 형식으로 발표를 해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치적으로 활용하는 이러한 집단이 검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를 통해서 검찰에서 이러한 수사방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결의문을 채택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예.

○이상식 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이상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신정훈 위원장님 나오시면 그때 가서 의논하기로 하고요.

다음, 존경하는 조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승환 위원 부산 중구영도구 조승환입니다.

먼저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에게 계엄 사태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 드리고 또 잠못 들게 하고 또 이 추위 속에 계속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을 시위로 내모는 것에 대해서 정말 참담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탄핵의 강 그리고 내란의 강을 견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핵의 강은 지극히 정치적인 사안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재로 넘어갔습니다. 최장 180일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내란의 강에 대해서는 이게 넘어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 자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란에 대해서 참 내란의 구성요건이나 위법성이나 또 헌법상의 내란 부분에 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논란을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따지고 싶지 않고, 오늘 저희 당 위원님 질의 속에서 내란죄하고 혐의사실 공표, 위증교사, 배임, 제삼자 뇌물죄 등의 범죄와는 완전히 다르다…… 분명히 다릅니다.

왜 다르냐,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 내란은 예비음모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선전·선동 까지 관련자를 모두 잡아들이는, 조금이라도 걸려 있으면 다 잡아가는, 사실 부화수행자, 그냥 여기 따라와서 문 지키고 있던 경찰관들까지도 다 잡아가는, 동원된 병사들까지도 ─뭐 병사는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사관이라 그러는데─다 잡아가는 그런 정말 위중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수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2020년도 우리 형법에서 이게 너무 선동적이고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다 그래 가지고 사실 우두머리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더러, 저희 당 위원님들도 있으신 것 같아서 지금 법률상의 용어는 우두머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내란죄에 대해서는 정말 국수본부장님, 엄중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또 정치적 판단이나 예단 이런 것보다는 사법적 법리적 판단이 훨씬 더 강하고 중하게 접근돼야 된다라고 보는 본 위원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예, 동의합니다.

○조승환 위원 정말 엄중하고 신중하게 사법적 법리적 판단을 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또한 오늘 야당 위원님들 중에서는, 저는 자료 요청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수사에 직접적인 자료 요청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국수본이나

경찰청에서도 명백하게 법령상…… 내란은 지금 형법상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예, 형법상의 문제입니다.

○조승환 위원 지금 수사 중인 사항이지 않습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그렇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러면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저희가 그런 점을 감안해서 여태까지 자료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가짜뉴스 이야기를 지금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이나 소위 얘기하는 공무원들의 독직 사건들의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결국 올라 올라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 과정이 됐든 재판 과정이 됐든 그것은 봉급 많이 주고 권한 많은 사람의 숙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각조각의 진술들을 가지고서, 제가 보면 피의자 변호인들이 나와서 이런 진술을 했다, 또 상대편 변호인이 이런 진술을 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그리고 이런 진술들이 방송을 통하고 완전히 진실인 양 호도돼 버리고 이런 부분들에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진술 부분은 경찰 진술이 다르고 검찰 진술이 다르고 법원에 가서 진술 다 바뀔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본부장님?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예, 그렇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러면 큰 의미에서 보면 피의사실 공표가 될 수가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확고하게 수사 보안을 유지하는, 가짜뉴스 양산을 막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저희는 공보 규칙을 최대한 준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피의자들의 변호인들이 방송이나 언론상에 얘기하는 것까지 저희가 제지할 수는 없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러면 보안각서 같은 것 쓰고 할 수 없습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변호인들에게 저희가 그것을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조승환 위원 이게 가짜뉴스의 진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짜뉴스가 퍼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게 대통령에 관한 사안이고 많은 사람들이, 국민 대다수가 너무나 관심이 많은 사건이기 때문에 특히 가짜뉴스 문제에 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수본부장님, 저는 지금 이 사건을 접근해 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자료나 이런 것들이 모두, 뭐라고 표현합니까, 수명과 하명과의 관계가 겹치는 사람은 모두 처벌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면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승환 위원 그런데 지금 내란죄의 법리를 가지고, 구성요건상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내란죄가 성립이 되는 순간 저는 수·하명 관계에 대한, 수명과 하명이

동시에 일어나는 직위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경찰 같으면 초급간부들까지 내란의 부화 수행 내지는 그보다 더 중한 직접수행의 어떤 그런 의미로까지 쳐벌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수사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너무 나간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존경하는 조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현일 위원 우종수 본부장님, 아까 국수본에서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잖아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국무회의가 성립되지 않은 거지요?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불법 국무회의인 거잖아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제가 아직, 지금 조승환 위원님 말씀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 이런 문제가 있지만 저희는 어쨌든 굉장히 절차적으로 법률상 흠결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계엄법 제2조 5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계엄이 결국은 불법 계엄이 되는 거고, 그런데 여기 국무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고 부의장은 국무총리입니다. 그러면 어떤 책임이 있나요,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내란죄의 혐의로 지금……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내란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채현일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총리가 내란죄 공범으로서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부의장으로서 묵인하고 방조하고…… 부의장이라면 불법 계엄이 되지 않도록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참고인 조사를 했잖아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일부 참고인 조사를 했고요. 일단은……

○채현일 위원 저는 피의자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그 국무위원들 중에는 이미 피고발자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피의자 조사를 했습니다.

○채현일 위원 국무총리는 피의자인가요, 지금 현재?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피의자입니다.

○채현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등포서 강력팀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오면서 들으세요.

국회 앞에 언제 가셨나요?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국회 앞에 언제?

○서울영등포경찰서강력7팀장 정일현 그날 택시를 타고 한 23시 사오십 분경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때 어떤 지시를 가지고 갔나요, 그 앞에?

○**서울영등포경찰서강력7팀장 정일현** 비상소집 연락을 받고 바로……

○**채현일 위원** 그때 누구를 체포하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간 거예요?

○**서울영등포경찰서강력7팀장 정일현** 전혀 못 들었습니다.

○**채현일 위원** 방첩사하고 여섯 번 통과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통화하고 했나요?

○**서울영등포경찰서강력7팀장 정일현** 저희가 만나서 협조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다고 해서……

○**채현일 위원** 어떤 협조를 해 달라고 그랬어요?

○**서울영등포경찰서강력7팀장 정일현** 그 자세한 내용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치……

○**채현일 위원** 협조만 해 달라 그러던가요?

○**서울영등포경찰서강력7팀장 정일현** 예.

○**채현일 위원** 체포를 누구를 할 텐데 도와 달라 그런 얘기 있었어요?

○**서울영등포경찰서강력7팀장 정일현** 그런 얘기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 앞에서 혹시 국회가 봉쇄가 되고 계엄군이 들어오고 그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혹시 팀장님?

○**서울영등포경찰서강력7팀장 정일현** 예, 기다리면서 봤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떤…… 그러면 본인의 임무가 체포하는 데 인솔하는 임무라고 했는데 본인 생각은 어땠어요, 현장에서? 내가 하는 게 어떤 임무고 체포는 누구를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서울영등포경찰서강력7팀장 정일현** 저는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채현일 위원** 아까 형사과장님인가는 지금 국회에서 충돌이 나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 그런 막연한 체포나 그런 과정에서 협조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는데 국회의원이나 이런 체포하라는 인식은 없었다는 거지요?

○**서울영등포경찰서강력7팀장 정일현** 예, 맞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래서 만나지는 못했잖아요. 만나서 무엇을 하기로 했나요, 그러면?

○**서울영등포경찰서강력7팀장 정일현** 그것도 만나기 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듣고 그때 지휘관에게 보고를 하려고 했던 건데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채현일 위원** 알겠습니다.

국수본의 수사기획계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계장님은 방첩사 구 모 중령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 당시 상황이 국회가 봉쇄가 되고 계엄군이 난입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체포조, 체포를 하고 인솔하고 안내한다는 게 국회의 의원 이런 것에 대한 인식 같은 건 있었어요? 국회의원들을 체포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셨어요?

○**경찰청수사기획계장 이현일** 국회의원까지 체포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요. 다만 그날 계엄사범 같은 게, 계엄법 위반으로 계엄사범 같은 게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곳에 와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잡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채현일 위원** 지금 검찰이 무리하게 내란 수사의 유일한 책임자, 책임이 있는 국수본을,

국수본 본부장 그리고 고위 관계자들의 핸드폰을 압수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검찰권력, 수사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상황, 그러니까 전혀 체포조 사실도 몰랐고 다만 단지 인솔한다는 그런 그냥 지시에 따라서 했고 국수본부장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있었고 전혀 현장 상황도 몰랐고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의 행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수사기획계장 이현일 사실 저도 참고인 조사를 두 번 받았는데 참고인인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적이라 가지고 당황했습니다. 특히 피의자 같으면 압수수색영장 사본도 받을 수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것도 받지 못해서 당장에 제가 어떠한 혐의점을 두고 수사를 받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하여튼 국수본 관계자분들이나 경찰 고생하시는 분들 이 상황에서 하여튼 정밀하게 대응을 해 가지고 경찰의 위상을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찰청수사기획계장 이현일 예, 알겠습니다.

(윤건영 간사, 신정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채현일 위원 경찰청장직무대행님께 말씀드릴게요.

어제 남태령 트랙터 행진 차단 관련해서 경찰청의 협조로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저도 위원님……

○채현일 위원 다만 몇 가지 부분 명확하게 지적하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트랙터 행진 시위에 대해서 ‘공권력을 무너뜨리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난동 세력에게는 놓동이가 답이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이 놓동이예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다시, 제가 이해를 못 하겠……

○채현일 위원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지 놓동이입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현일 위원 아니, 트랙터 행진한 농민단체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난동 세력이었어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난동 세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채현일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체포를 했어야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희들은 집시법에 따라서 제한 통고를 했고요.

○채현일 위원 그날 하여튼 경찰이 한 그게 마지막에 했는데 아쉬운 점은 많지만 마지막에 10대 트랙터 행진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하여튼 차선의, 그나마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상현 의원이나 이런 불합리한 것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요.

아까 익명 게시판 얘기가 나오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럽이면 머리에 총알 구멍 뚫렸을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

해서는 경찰청 차원에서 경찰의 명예를 복원하는 차원에서, 특히 경찰 수뇌부가 두 명이나 구속된 상황에서 경찰의 위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익명 게시판에서 경찰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채현일 위원 감찰도 하고 진상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그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채현일 위원 하셔 가지고.....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망이고 온라인 블라인드 망이라고 방금 확인을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저희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채현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경찰청 차장님, 오늘 채현일 위원님과 대화를 쭉 보면서 양측이, 어제 집회·시위 주최 측들과 또 집회를 관리해야 될 경찰청이 굉장히 인내심을 가지고 서로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가 최종적인 그런 어떤 평화적인 집회의 마무리로 왔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희들도 사실 시민들이 약간에 장시간 있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약간의 원칙이 무너져도 시민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마지막에 열어 드렸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서울청에서도 집시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신고를 받아 줬고 또 제한 통고도 했고 또 현장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법 집행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전후사정 따지지 않고 사과나 이런 것은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위는 인권과 안전을 위주로 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원칙과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고지식하게 글자 그대로, 그 문맥 그대로 관철시키는 것이 원칙과 기준은 아닌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그래서 유연하게 저희들이 대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지난번에 한창민 의원이 사고, 소위 말해서 부상을 당한 현장도 갑작스럽게 집회의 규모가 굉장히 커졌고 그런 상황 속에서 경찰이 좀 더 전향적인 어떤 결정을 할 때, 집회·시위라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보장이 될 때 치안의 임무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제 집회 과정도 시위를 하는 주최 측이나 또 경찰이나 간에 첫째는 안전 보장과 또 집회의 보장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 해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끊임없이 양보하고 타협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것은 서로 존중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일부 이런 최종적인 집회의 어떤 마무리 과정을 일방적으로 편하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현장을 지켜 주셨던 채현일 위원님과 모경종 위원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그것을 끝까지 인내심 있게 이렇게 집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던 경찰 지휘부에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런 점에서 경찰이 앞으로도 광장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또 보장하면서 질서 있는, 평화적인

집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위원 위원장님, 저 자료제출 요구 의사진행발언 1분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용혜인 위원 경찰에 자료제출 요구를 한 가지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7월 여름에 예산경찰서에 근무하던 청년 경찰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유족들이 유품을 정리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에 대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것에 대해서 충남경찰청에 가해자 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 결과가 갑질은 불인정되고 직권경고 조치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충남청 감찰처 분심의회 결과와 이 사건을 검토하면서 자료로 사용했던 외부 전문가 노무사 3인의 의견을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용혜인 위원 이호영 차장에게 묻겠습니다.

‘국민께 책임을 느끼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열흘 전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 약속하고 가셨어요. 지금도 동일합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동의합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

○용혜인 위원 내란 사태에 대해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철저히 수사하겠다라는 의지도 밝히셨는데 동일합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동의합니다.

○용혜인 위원 약속 잘 지키고 계신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국수본을 통해서 철저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용혜인 위원 저는 내란 사태 이후에 지난 2주간의 경찰 행보를 보면 다시 내란 동조 세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듭니다. 반성과 성찰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용혜인 위원 대통령실 압수수색 하나 밀어붙이지 못하면서 대통령 관저 앞에서 국민들이 집회, 그것도 1인 시위로 주권자의 뜻을 전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걸 다 금지하고 심지어는 불법적인 불심검문까지 부활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내란수괴에 대한 심기경호에 앞장서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비판이 나옵니다.

관저 앞 집회 금지 관련해서 헌법불합치 판정 나온 지 2년 넘은 것 차장님 알고 계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용혜인 위원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관련돼서 여러 판결들도 있었고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용혜인 위원 그런데 왜 경찰이 내란수괴의 심기경호 같은 걸 하려고 헌법으로 하지 말라고 몇 차례나 법원과 국회가 경고한 일을 지난 내란 사태 때 국회를 봉쇄했던 것마냥 또 벌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희들이……

○용혜인 위원 1인 시위까지 관저에서 그렇게 금지해야 할 일인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집회·시위 관련 법령으로는 1인 시위 금지할 명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혜인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지하고 계시잖아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게 경호법의 관련 법을 보면……

○용혜인 위원 국민의 분노는 두렵지 않고 내란수괴의 심기, 분노는 걱정이 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거는 제가 어떻게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용혜인 위원 부정하지 않으시네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아니, 국민들 분노나 이런 거를 제가 판단하기가……

○용혜인 위원 국민의 분노를 판단하기 어렵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어렵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 말씀에 대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는……

○용혜인 위원 저는 정말 경찰이 지난 내란 사태 이후에 철저하게 책임을 느끼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는 말이 진심이라고 국민들께 느껴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차장님의 그 답변은.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철저하게 수사해서……

○용혜인 위원 더군다나 지난 남태령 상황에서 내란수괴의 심기경호가 저는 정점을 찍었다고 보는데요. 고작 서울 가는 트랙터 17대를 막겠다고 1000명 넘는 경찰을 동원했어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34대입니다.

○용혜인 위원 국민들은 영하 7℃에 밤새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물도 못 받아서 저체온증에, 탈진에, 탈수에 기절하고 쇼크로 생존을 위협받는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그만치 병력을 좀 동원해 보지 그러셨어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당시에 원래 트랙터만 있었는데 저녁에 이쪽……

○용혜인 위원 대통령실 압수수색과 윤석열 신병 확보에는 그만큼 경력 동원도 못 하면서 농민들한테는, 국민들한테는 집회·시위 금지하려고 그만큼 경력을 동원한다는 게 지금 국민들이 그걸 납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거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국수본에서도 철저하게 압수수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혜인 위원 경찰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이 저는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8년 전의 경찰의 모습에서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든 말든 우리는 집회·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 트랙터로 상경하는 것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2016년부터 법원의 판결 아닙니까? 그런데 8차선 도로를 누가 막았어요? 경찰이 막았어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아까 서울청장이 위원님께 잠깐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일렬로 오는 걸 저희들이 제한 통고해서 막았는데 트랙터 하신 분들이 전 차선을 점거함에 따라서 교통통제 차원에서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전 차선을 다 막고 있어서 저희들도 차벽을 어쩔 수 없이 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혜인 위원 트랙터 타고 온 분들에게 트랙터 통행 자체를 막는 것은 제한 통고를 가장한 금지 통고지요. 그리고 도로교통법상 트랙터는 우마차의 한 종류입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차에 해당됩니다.

○용혜인 위원 도로교통법을 어기지 않았으면 집단으로 통행을 하든 개별적으로 통행을 하든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트랙터를 막았다라는 것은 현법상의 이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트랙터가 집회 현장에 가서 무질서를 야기할 것이다, 판저 앞에 가서 무질서를 야기할 것이다라고 하는 건 경찰의 상상의 영역이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뭐 한두 대……

○용혜인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엄 내란 당시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 전혀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경찰에서 답변이. 계엄에 대해서는 위헌·위법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못 했다고 하면서 왜 유독 집회에 대해서는 제멋대로 불법, 합법을 막 판단하시나요, 경찰이?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내란 혐의가 충분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혜인 위원 당시에 판단하지 못했다면서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당시에는 상황이 국회를……

○용혜인 위원 당시에 판단하지 못했다, 그런데 왜 집회에 대해서는 벌어지지도 않은 상황에 대해서 불법과 합법을 경찰이 마음대로 판단합니까? 그건 법원이 판단할 일이지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 같은 사람이 국민들 상대로 ‘집회·시위 하는 사람들, 몽둥이가 담이다’ 따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찰이 그 권력의 몽둥이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반성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찰이 국민 때려잡는 정권의 몽둥이로 쓰이는 것이 적절한가요? 그건 경찰의 자부심에 훼손을 입히는 일 아닌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위원님, 그건 13만 경찰을 모욕하는 거고요.

○용혜인 위원 그러니까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런 말씀은 저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용혜인 위원 그런데 그런 행태를 경찰이 하신 거라고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희들도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용혜인 위원 심지어는, 아까 이야기한 블라인드 같은 이야기 왜 나오는지 아세요? 경찰이 내란수괴의 심기경호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 긋지 못하고 압수수색에는 경력 동원하지 못하면서 집회·시위 막는 데는 기를 쓰고 경력을 동원하니까 일선 경찰들이 그래도 되는구나 생각해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제가 그거를……

○용혜인 위원 정확하게 저희부가 내란수괴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겠다, 압수수색 빈틈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신병 확보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국민들의 편에 서겠다라는 의지를 밝혀 주셔야 일선 경찰들이 저렇게 블라인드에 말도 안 되는 글 써 젖히는 걸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위원님, 블라인드 문제는 제가 책임지고 꼭 파헤쳐 보겠습니다.

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 정말 발본색원해서 경찰관이면 반드시 처벌하겠습니다.

○**용혜인 위원**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이상으로 지휘부가 명확하게 시그널을 보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민주경찰이고 이게 무슨 국민의 경찰입니까?

저는 내란 동조로 경찰청장 구속되고 서울청장 구속되고 국수본부장 핸드폰 압수수색 까지 당하고 되게 불명예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돼요, 경찰의 입장에서.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건 정말 죄송하고 경찰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용혜인 위원** 그런데 이 불명예스러운 상황을 반전시키려면,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하는 그 오명을 벗으려면 정확하게 내란수괴에게는 법 집행 철저하게 하고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는 철저하게 보장하는 것이 경찰이 해야 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그 법 집행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용혜인 위원**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의 의무는 중요하지 않고 내란 세력이 언제 다시 권력을 잡을지 모르니 살려면 눈치를 봐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국민적 의혹이 등장하지 않도록 대통령실 압수수색 그리고 윤석열 신병 확보 그리고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 빈틈없이 해 주셔야 되고요.

앞으로는 집회·시위와 관련돼서 지난 남태령 상황처럼 집회·시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경찰이 예단해서 봉쇄하는 일만큼은 없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십시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희들이 집시법이나 국회에서 만든 법을 무시해서 법을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은 근본적으로 법 아래 법을 집행하는 데 사명으로 하고 있고요. 이번에 그 비상계엄 같은 경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우리 조직에도, 우리 밑의 일선 직원들한테도 지휘부로서 얼굴을 들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런 집시법, 남태령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청에서도 최대한 적법하게 하고 또 유연하게 법 집행하고 앞으로 집회·시위 문화를 좀 바꿔 보려고 하는, 제가 또 물론 그렇겠지만 바꿔 보려고 하는 시도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좀 지켜보시면 거기에 따라서 좀 유연한 법 집행이나 그런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고 맡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혜인 위원** 유연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 집행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격한 말씀이 좀 있으셨는데요. 사실 이 어려운 시국, 계엄령이라고 하는 내란 사태를 종결시킬 수 있었던 힘은 사실은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과 또 주권 의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위기의 해소 국면까지 국민들의 어떤 주권이 라든가 또는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찰이 좀 더 달라진 시각에서

적용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통령실 앞에서의 1인 시위가 금지되고 있다 하는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우종수 본부장님, 윤석열 씨는 지금 어떤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나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내란 혐의입니다.

○위성곤 위원 내란 혐의인데 윤석열 씨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관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관저에서 실질적으로 혐의를 사실상 부인하고, 그렇지요? 언론에 보면 사실상 본인은 혐의 없음을 주장하고 있지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담화를 통해서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게 확인하고 있고 그리고 압수수색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도 응하지 않고 있고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예정입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그 부분은 이미 공수처에 이첩을 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일차적으로 판단하지만 공조수사본부의 틀 안에서 같이 협력해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체포영장이 신속히 발부되어서 실질적으로 인신구속이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일차적으로 공수처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공수처가 저희에게 의견을 물어 온다면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관련되어진 통화를, 여러 공모자들과 통화를 한 비화폰을 그곳에 갖고 있고 서버가 그곳 안에 있는데 그것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의 혐의를 입증하기가, 다 입증됐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 빨리 관련되어진 비화폰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대통령경호실에 대해서 압수수색 시도를 했지만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해서 관리자의 허가가 없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자료 보존 요청을 하는 공식적인 문서를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 문서 보존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이번 내란 사태는 저는, 여당 위원님들께서 오늘도 질의 과정에서 보면 내란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란에 동의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여당 위원님들 다 그러시지요?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조승환 위원 법적 판단을 기다려 보자는 거지요. 왜 저희들한테 질의를 하세요?

○**위성곤 위원** 법적 판단을……

○**조승환 위원** 수사해서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지요. 그걸 갖다가 예단할 필요는 없지요.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요. 저만 본 게 아니라, 저만 겪은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실제 유튜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했어요. 국민들이 TV를 통해서 다른 사실이란 말입니다.

국회 안에 헬기가 들어오고 군이 배치되어지고 그 들어가고 있는 시민들을 막고 국회 의원을 막고 있는 것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된다, 수사를 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국익을 지켜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국익을 지키는 건지에 대해서 여당 위원님들께서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국회의사당 본청을 창문을 깨고 공수부대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총을 들고.

본부장님, 왜 들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국현 문란의 목적성이 있지 않았나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국회의장을 체포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그리고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회의를 방해하기 위해서 실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지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목도하고 보고 참여했던 여당 위원님들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잊어버리셨습니까, 도대체?

○**김종양 위원** 위원들 질타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 연 겁니까?

○**위성곤 위원** 예, 질타를 좀 해야 되겠어요.

○**위원장 신정훈**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 가급적이면 지금 참석한 기관증인들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들어 보면 피의자들이 변호인들이 하는 얘기까지 가짜뉴스라고 하고 그것을 통제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도대체 무엇을 보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술자들의 이야기가 피의자들의 변호인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나 그들의 그 사실에 대한 진실을 얘기하기 위해서인데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가담자들이 자기가 경험했던, 자기가 들었던 사실을 얘기하는 게 그게 민주사회 아니겠습니까, 본부장님?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어쨌든 그건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들의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들은 또 수사기관의 요원도 아니기 때문에 저게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을 가짜뉴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께서는 ‘민주당의 지지자들로부터 국회가 포위되는 바람에 경내에 들어오지 못해서 계엄 해제의결에 모두 참여하지 못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본부장님, 사실 그렇습니까, 이제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위원님의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담을 넘어서 들어오는 국회의장이 있었고 담을 넘어 들어오는 여당의 국회의원도 있었고 야당의 국회의원들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의회를 지키기 위해서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담을 넘었는데 그것을 방해한 것이 경찰이었고 경찰이 동원돼서 그걸 방해하고 해 왔는데…… 아니, 그것을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포위되는 바람에 못 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발언 자체가. 도대체 어떤 근거로 나베라는 분이, 친일 나베라고 얘기되어지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지……

지금 현실적으로 내란이 진행 중에 있고 내란의 수괴는 검거되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은 국민의힘에서는 그 내란의 수괴를 보호하고 있는 행위다, 그들과 공범이거나 아니면 방조세력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비서실 관련해서요, 경호처에 있는…… 정진석 비서실장부터 조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저희가 어쨌든 필요한 조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성곤 위원** 왜 조사를 안 하는 거지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저희가 한정된 인력으로 조사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국민적 상식으로 보면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구로서 가장 최측근이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을 거고 계엄을 모의했을 거다, 내란을 모의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정진석 비서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등은 탄핵소추안 1차 표결이 있었던 지난 7일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수사하고 휴대폰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도 저희가 지금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대통령실에 대해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국수본부장님, 오전의 질의 과정에서 답변이 조금 애매해서 확인 한번 해 봅니다.

계엄령 이후에 방첩사라든가 수방사 또 특전사 뭐 이렇게 사령관으로부터 그리고 국정원 차장에 이르기까지 체포자 명단 이야기를 죽 했었는데요. 특히한 부분이 한 분 있었어요. 판사,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무죄 판결을했던 김동현 판사가 체포 대상이었다 하는 것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발언으로 확인된다 아니면 그 변호인으로부터 계속 언론을 통해서 짐작되게 하는 발언이 있었는데 그것 확인하셨습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예,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조지호 피의자의 변호인의 발언이 어쨌든 조지호 청장의 진술 내용에 거의 부합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조지호 청장의 진술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어쨌든 제가, 구체적인 피의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변호인의 발언 내용을 어느 정도 확인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오전 중에 또 어떤 위원님 질문에 애매하게 답변하셨는데 선관위 직원들, 그러니까 언론 보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는 중앙선관위 위원장뿐만이 아니고……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체포자 명단에 들어 있다 이게 하나 있고요, 선관위 직원들 30명을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두건을 써워서 수갑을 채워서 체포할 그런 계획이 있었다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것도 조사 결과 증명되고 있습니까? 그런 증언이 있었습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그게 뭐 객관적 증거를 저희가 확보한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계자들 통화를 통해서 어쨌든 그런 진술을 저희가 확보한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저희가 지난번에 선관위 방문해서 현장 확인하는 과정에서 선관위에서 유일하게 분실된 문건이 하나 있다고 그랬었지요, 총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조직도, 사진 붙어 있는 조직도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신정훈 예.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 조직도 사진이 이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지금 보여 주는……

○위원장 신정훈 방첩사하고 정보사의 인력이 가서, CCTV에 찍혀 있는 내용입니다. 현장에서 조직도를 확인하고 아마 30명의 체포자 명단을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문건을 가져갔다 하는 사실하고요,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30명 체포 계획이 있었다 하는 언론하고…… 정말 섬뜩하게도 이렇게 지금 이 CCTV에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사무총장,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CCTV에 찍힌 그 조직도는 저희 3층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었던 것 맞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단지 그게 아니고 선관위 직원들을 출근과 동시에 두건 써워 가지고 수갑 채워 가지고 연행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다 하는 것과 연관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참 업기적이지요. 이 계엄령의 동기로서 선관위의 부정선거 음모가 아주 유력한 동기가 되었다는 것조차도 지금도 상상하고 또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하나 그런 사실이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정진석 비서실장 왜 조사 않습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제가 지금 구체적인 특정인에 대한 소환 일정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위원장 신정훈 제가 볼 때는요,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범죄 이외에도 총리나 비서실장이 중요한 것은 계엄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대통령의 계엄 의사결정이 과정에 있어서 유력하게 역할을 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해 가지고 계속 방치하고 또 비서실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 청와대, 용산 대통령실의 모든 증거가 그 사람들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잖아요.

내란의 당사자는 지금 혐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또 그 관련되어 있는 정보, 증거는 철저히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있고 이것이야말로 증거인멸에 가장 유력한 심증이, 합리적인 추론이 될 수 있는데, 뭐 휴대전화 역시 다 바꾸고 있고 압수수색 거부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대통령실의 유력한, 이 모든 행정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정진석 비서실장은 직접적인 내란 과정에서의 역할도 있었을 테고 이런 모든 과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제압해야 될 당사자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지금 저희 수사에 필요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출석 요구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필요한……

○위원장 신정훈 지금까지 대통령실 관계자들 출석에 대한 정보가 언론에 거의 나오지 않고 있어요. 정진석 비서실장 조사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왜 없습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출석 일자를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증거 다 인멸해도 좋습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위원장님, 참고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로 구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출석 요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위원장 신정훈 경호처장, 정무·민정수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증거, 행적이 다 보이는 유력한 인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적극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리고 아까 용혜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실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이나 이 과정에서…… 경찰청 차장, 적극적으로 법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영장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경찰력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있고요. 다만 국수본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위원장님, 현재 저희가 압수수색을 못 한 것은 경찰력 지원이나 물리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해서 관리자가 그것을 허가 안 했기 때문에, 법률적 한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위원장 신정훈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라도 그런 경호처의 불법적인 법 집행의 방해

는 철저히 제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체포영장은 압수수색과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언제든지 저희가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국민들이 지금 경찰청 국수본부의 수사 과정에 대단히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이고 강한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충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조은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조은희 위원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법과 상식에 따라 결론이 이루어질 것이고 법과 원칙에 따른 정치 일정도 진행될 것이다’ 이 말은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한 이 말을 우리 행안위 위원들도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당부를 드린 바 있는데요. 국회의원 서로가 상대의 발언에 대해서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거나 편파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일은 자제되었으면 합니다. 이 점을 위원장님께서는 깊이 유념해 주시기를, 그래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박선영 진화위원장에 대한 상임위원장 퇴장 조치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박 위원장이 진화위원장으로서 어떤 입장으로 직무에 임하고 있는지 최소한 그 입장을 밝히는 시간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한 팩트 체크 역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 언론에 따르면 진화위의 제93차 전체위원회에 올라온 안건이 51건이었는데 이는 평소 안건의 2.5배에 이른다면서 박 위원장이 독단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제기된 의혹과 달리 실제 본 위원이 팩트 체크를 해 보면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23건이 처리됐습니다. 안건들 역시 전남 화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충남 아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사북 사건 관련 인권침해 사건, 전남 영암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등입니다. 50여 건에 대한 처리는 내년으로 이월시켰고요, 충분한 토론 없이 안건을 표결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은 뇌피셜에 의한 억측일 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박 위원장 본인도 처형을 제부한테 뇌물로 보내는 나라는 없다고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억측에 의한 단죄가 아니라 박선영 위원장이 직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연좌제를 하는 나라도 아니고 최소한 본인 입장은 들어 볼 기회를 상임위 차원에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박 위원장 본인이 설령 치우치거나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 정정하거나 전향적인 의견 표명할 의사는 없는지 그러한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되지 않도록 위원장께서 균형 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윤건영 위원님.

○**윤건영 위원**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내란이 뭐 홍길동도 아니고 내란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온 국민이 다 보신 것 아닙니까. 특전사가 총 들고 국회로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총부리를 국민한테 겨눴습니다. 그게 내란이 아니면 도대체 뭡니까? 그런데 내란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오천만 국민이 다 본 일입니다.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하지만 뻔히 현실 속에서 드러난 사실들에 대해서 왜 외면하십니까? 왜 한쪽 눈으로만 보려고 하십니까? 저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화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오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원천 무효인 겁니다. 윤석열 씨가 비상계엄이라는 내란죄를 저지르고 나서 일종의 보험용으로 인사를 했다라고 많은 사람이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즉 박선영 씨의 진화위원장으로서의 업무에 대한 평가 이전에 그 인사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겁니다. 재고할 가치가 없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다 철저하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여하튼 진행 과정에서 지금 참석해 있는 위원님들의 인격과 발언권을 충분히 존중해 주시는 그런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남은 문제는, 제기해 주신 문제는 추후 양당 간사님과 함께 상의해 가면서 위원회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면 다음, 보충질의는 5분씩 하겠습니다.

먼저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 위원**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국수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국수본 특수단에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노상원이라는 전 정보사 사령관, 지금은 민간인이지요. 이 양반의 수첩에서 정말 엄청난 것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NLL에서 북에 유도'라든지 '국회 봉쇄'라는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심지어 수사단 하나를 새롭게 구성해야 된다라고 해서 인사안까지도 이 수첩에 나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맞지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그게 구체적으로 실행됐는지까지는 모르지만 메모 내용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윤건영 위원** 지금 이번 내란 사건의 핵심 주범입니다, 이 양반이. 햄버거집에서 혁직 정보사령관과 군인들을 모아서 내란을 모의했던 자로 지금 의심받고 있잖아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그렇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 사람의 수첩에서 나온 결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NLL에서 북에 유도’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오물 풍선’이라는 표현들이 들어 있었습니까, 수첩에?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윤건영 위원 좋습니다.

수첩에 수거대상을 일종의 격리를 한다, 체포의 의미로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브리핑에서 하셨습니다. 수거대상, 즉 정치인·언론인·종교인 등에 대해서 수거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위원님, 제가 여기서 너무 피의사실을……

○윤건영 위원 아니,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지금 말씀하시는 게 거의 뭐 저희가 조사한 거와……

○윤건영 위원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면 되겠지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예, 부합합니다.

○윤건영 위원 좋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란 모의에 가담했던, 최소한 양보해서 봐주더라도 그 사람의 수첩에서 ‘사살’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런 것도 내란이라고 말을 못 합니까, 우리가? 너무 한심하고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안가 CCTV에 대해서 영장이 19일 날 발부됐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름 일정한 분석이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본부장님?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러면 대통령 이외에 안가에 대한 출입자, 의원들이 많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위해서 CCTV라든지 또 그 당시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수행원이라든지 해 갖고서 필요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건영 위원 좋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경호처장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안가를 담당하는 부서가 경호처입니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예, 그렇습니다.

○윤건영 위원 경호처장에 대한 조속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이미 두 차례 조사를 했고요. 이 외……

○윤건영 위원 신병 확보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본부장님.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어쨌든 경호처장을 포함해서 경호실 관계자들에 대해서 지금 최대한 신속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번에 수원 연수원도 계엄군이 왔다 갔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윤건영 위원** 거기에서 감금과 통제 사실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제가 알고 있지 못한 사안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청사 내에 진입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보고 받았습니다.

○**윤건영 위원** 본 의원실에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당시에 1박 2일로 수원 연수원에서 선관위 승진 후보자 대상 교육과 강연이 있었던 건 맞지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 내용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윤건영 위원** 잠시만 시간 좀 끊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잠깐, 확인해 보고……

○**윤건영 위원** 아니, 뒤에……

사무총장님, 이것은 너무한 거잖아요. 이 정도를 확인 안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지금 그 내용이……

○**윤건영 위원** 계엄군이 주둔했던 곳의 프로그램을 확인 안 했다는 게 지금 계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제가,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윤건영 위원** 비상사태가 벌어진 지 한 달이 돼 갑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청사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고 해서 연수원에 대한 문제는 특별히……

○**윤건영 위원** 뒤에 아시는 분 앞으로 나오라고 하세요, 시간 끊었으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지금 뒤에 있는 분들도 그 부근에 교육이 있었던 건 맞는데 그날 교육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확인해서 자세한 내용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아니……

시간 가도 되겠습니다.

총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윤건영 위원** 제가 억지를 쓰는 게 아닙니다. 선관위가 속해 있는 조직과 그리고 프로그램과…… 시설에 계엄군이 주둔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었어요, 1박 2일짜리로 90명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그런 기본 사실조차 확인을 안 해 오셨다라고 하는 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죄송합니다.

○**윤건영 위원** 그리고 당시에 계엄군들이 입출입을 막았다는 겁니다. 무전기를 들고 다니면서 통제하고, 식사 마치고 들어가려는 인원들에 대해서 못 들어가게 막고 했다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런 걸 모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보고한 게 다 허위인 겁니다.

선관위가 우리한테 보고 뭐라고 했어요? 계엄군 들어온 적 없다라고 했잖아, 시설 내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윤건영 위원** 시설에서 들어가는 걸 통제하고 감금한 게 시설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총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윤건영 위원**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선관위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선관위 모든 직원들은 국회에 위증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하신 거예요.

아니, 이런 걸…… 보도가 된 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실질적으로 계엄군이 청사 내에 들어가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CCTV는 저희들이……

○**윤건영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여기 보도가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을 제대로 확인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건영 위원** 무전기를 들고 다니면서 연수받는 사람들 통제하고 입출입을 막았다는 데 그게 감금이지 통제지 뭐니까, 그러면 도대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아니, 이제 와서 확인한다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질의시간은 끝났지만 위원장님, 이 사안은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닌 것 같아서요. 선관위 사무총장께서 선관위에 지금이라도 바로 확인을 해서 우리 행안위 전체에게 보고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안위에 여러 차례 보고됐던 자료들이 다 허위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위원장께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언론 보도를 보셨습니까? 아직 못 보셨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아직 못 봤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언론 보도를 보면 이 내용이 아주 그냥 명백하게 입증될 수 있는 문제고 또 파악을 했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 문제를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입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조은희 위원** 지난 19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수사 또는 공소의 제기·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범한 직권남용, 불법 체포·감금, 가혹행위, 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법이 통과될 경우 특히 13만 경찰에 대해 부작용이 예상되는데 대행님은 알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법 제목은 제가 알겠는데요. 그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지금 알지 못합니다.

○조은희 위원 잠깐 스톱 해 주시고.

그러면 아시는 분 누구지요? 아시는 분이 나오십시오.

○경찰청수사기획담당관 전창훈 수사기획과장입니다.

○조은희 위원 알고 계시지요?

○경찰청수사기획담당관 전창훈 예, 저희들은 공문으로 해 가지고 우려 의견으로 보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런데 대행도 모르시고 지금 13만 경찰에, 이 특례법 적용대상이 너무 넓고 평생에 걸쳐 적용되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인데 대행조차 모르고 있으면 13만 경찰 직원들도 저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표현이 불분명하다며 신중검토 의견을 밝혔지요?

○경찰청수사기획담당관 전창훈 예, 그렇습니다.

○조은희 위원 실제로 부작용이 예상됩니까? 어떤 부작용이 예상됩니까?

○경찰청수사기획담당관 전창훈 수사하는 직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은희 위원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적법하게 민생수사를 담당하는 13만 현장 경찰과 그 40만 가족들조차 일방적 허위주장만으로도 평생 보복성 고소 고발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당한 민형사 비용 부담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 소송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대답 안 하시네요.

안 그래도 수사 부서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진상 피의자나 조폭 등이 매번 수사에 시비를 걸거나 또 정치적 사건에 있어서는 그 누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걱정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식 수사관 길들이기 법안이라고 보는데 대행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위원님 말씀도 일부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13만 경찰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법안에 대해서 경찰 입장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법원행정처도 직권남용, 불법 체포·감금, 범인은닉, 위증 등의 범죄를 국가 권력에 의한 반인권 범죄로 보아 공소시효를 배제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요. 헌법재판소도 이 법안이 정한 사유들이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대행님.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조은희 위원 일선에서 묵묵히 민생수사를 담당하는 현장 경찰들의 어려움을 가중시

키는 법안인 만큼 법사위에서 최종 의결되기 전에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서 대행님께서 지금 어려운 시기지만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13만 경찰 직원들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리고 지금 비상계엄 사태로 경찰 수뇌부가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인데 범죄자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경찰은 우리 신경 쓸 여력이 없다, 단속이 느슨해졌다, 지금이 기회라면서 더욱 노골적으로 혼란을 틈타 범죄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보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계엄 사태 직후 ‘방첩사 비상계엄 문건’이라는 악성 해킹메일이 대량 유포됐었고요. 정부·공공기관이나 경찰관 이름을 사칭한 각종 스팸과 가짜뉴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 상황을 악용하는 스미싱 범죄 등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보이스피싱이나 리딩방 투자 사기처럼 국민 피해를 야기해 온 국제 사기 범죄 조직들도 그간 집중 단속으로 인해 음지로 스며들었다가 지금은 느슨해진 단속에 오히려 세를 부풀리면서 수사권 공백을 파고드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캄보디아의 경우 범죄자들이 음지로 숨어들었다가 최근에는 사기범 구인공고까지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범죄자가 지금이 기회라면서 설치는 상황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대행님의 입장과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최근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사칭한 악성 메일이 확인돼서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에서 입건 전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각종 스팸과 스미싱,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과기부·방통위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도 위원 선관위 사무총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논의하는 과정에서 부정선거 유포론자에 대한 선거법 처벌 조항 신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난 12월 13일에요 행안위 현안질의에서, 그때 당시 국힘 위원님들이 불참을 해서 아마 내용을 정확히 파악은 안 하고 계실 텐데, 그때 총장님하고 부정선거 유포자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다는 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주신 고견들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처벌 조항 신설은 가능하면 당연히 지양을 해야 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하고요. 자정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저도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모두 12월 3일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확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거 없고 실체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 때문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현정질서가 파괴되는 직전까지 가는 걸 저희들이 목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21대 총선 이후에 유포된 부정선거 음모론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선관위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제가 21대 때 행안위 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행된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홍보도 참 많이 했고 투개표 시연회를 통해서 투표지 분리기로 다 검증도 그 뒤에 했고요. 많은 노력을 기울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계속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굳이 진영으로 나눠서 보수진영이 승리한 20대 대선이나 8회 지방선거는 쪽 빼놓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저는 걱정이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하고 시연회를 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대화할 수 있는 공감의 영역이 거의 없다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무슨 생각까지 드냐면 ‘극단’이라는 단어 그리고 굉장히 위험해지는, 그러니까 사고가 한 축으로만, 일체의 다른 논의나 여력이 없이 거기에만 꽂혀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계엄을 통해서 이게 나타나서, 이렇게 극단적이고 위험한 상황도 나타났지만 앞으로도 이걸 그렇게 종교처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게,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두렵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 그거는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선관위에 불신이 조장이 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결국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담으로 치부했던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도개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반드시 제도개선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뭔가 다른 방법을 찾지 않으면 이 위험과 극단의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공감과 대화가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꼭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싶고요.

저희 의원실에서 선관위의 개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선관위의 개정 의견뿐만이 아니고요 각계의 의견을 다 수렴할 겁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 토론회도 하고 의견을 많이 청취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법안 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행안위에서 선관위하고 머리를 맞대고 제도개선의 논의를 진일보시키지 않으면 앞으로가 더, 미래가 더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선관위도 저희들이 논의 사항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한병도 위원 그리고 경찰청 차장님, 이것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말씀하십시오.

○한병도 위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경찰이 이번 계엄에 깊이 관여한 이런 게, 잘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경찰에서, 과거 시대에, 권위주의 정부 때 썼던 폭력, 때로는 고문, 인권 유린 사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가 경찰의 자존심 그리고 근현대사에서 경찰이 쌓아 온 어떤 민주주의

의 성과, 인권 의식, 이게 상당히 성숙이 되고 이제 경찰에게 국민들이 수사권을 조정해서 이런…… 믿으니까 이런 권한도 주고 이러려고 하는 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번에 경찰의 위상이 극히 하락이 됐고, 아마 여기 간부들뿐만이 아니고 현장에서 일하는 경찰 모든 공무원들도 자괴감이 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의 의견을 좀 들어 봐서 국민들에게 앞으로 경찰이 거듭난다는 의견 그리고 이런 계엄에 함께 동조한 것들에 있어서 반성 이런 것들, 경찰 차원에서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어떤 입장 발표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일선 서에서 무조건 위에서 지시하는 것보다는 적법 절차에 따라서 법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모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경종 위원 인천 서구병 검단에서 온 모경종입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님!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모경종 위원 지난 남태령 상황에 대해서 전체 다 보고받으셨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받았습니다.

○모경종 위원 트랙터를 버스 차벽으로 막은 거는 막은 건데 앞쪽, 서울 방향 쪽을 막은 것과는 별개로 반대쪽, 남태령 방향 쪽은 막았습니까, 안 막았습니까, 차벽으로? 한마디로 트랙터와 시민들을 가뒀습니까, 안 가뒀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서울청장이……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 최현석 서울청장직무대리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경종 위원 예.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 최현석 처음에 트랙터가 상경할 때 말씀이시지요?

○모경종 위원 결론만 말씀하십시오.

양쪽에서 가뒀습니까, 안 가뒀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 최현석 전면을 차단했습니다.

○모경종 위원 후면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 최현석 후면은 열어 뒀습니다.

○모경종 위원 확실합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 최현석 예. 왜냐하면 저희들도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모경종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요, 그게. 제가 현장에서…… 현장에 가 보셨어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 최현석 예, 현장에서 지켜봤습니다, 모니터로.

○모경종 위원 들어가시고요.

청장대행님!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모경종 위원 저는 이 상황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경찰이 먼저 과잉 진압을 했다 또는 불법적인 집회의 모습이 있었다 이런 것 다 떠나서요 경찰이 과연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이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그 통행권을,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시내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막으셨다면서요? 그런데 남태령 고개를 전체를 다 전면 통제를 하는 바람에, 그리고 그 해결 자체에 대한 어떤 의지를 보였는지 경찰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그냥 방치한 것 아닙니까? 막고만 있었던 것 아닙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최 측하고 계속 협의를 했고요 다만 야간이, 밤이 깊어져서 그것을 어떻게 해산이나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고요. 안전 문제……

○모경종 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야간이니까 해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아니,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이 어떤 조치를 취했냐고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모경종 위원 예.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희들이 주최 측과 계속 협의를 했고 그러면서 이게 제한 통고됐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밤에 또 저체온증 위험이 있을 것 같으니……

○모경종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차장님이 직접 의원들 만나고 거기에서 어떤 협상의 여지를 가지시고 해결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그렇지요? 그거를 아까 원칙을 깰라고 말씀하시길 하셨지만 나름의 유연하게 예외를 적용해서 해결하신 것 아닙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모경종 위원 덕분에 거의 1000만에 가까운 서울 시민들이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그 통행권도 다시 확보된 것 아니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모경종 위원 경찰의 그런 유연한 사고를 저는 요청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선제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당시에 바로 하기에는 트랙터 운전하는 분들이 다 음주에 취해 계셔서 바로 이동한다든가 풀어 준다든가 이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모경종 위원 제가 불법적인 요소를 용인하라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불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이 강하게 공권력을 작동하십시오.

다만 그것과 동시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경찰, 특히 공권력에는 양면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위원님 말씀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모경종 위원 예.

인사혁신처장님!

○인사혁신처장 연원정 예.

○모경종 위원 대통령실과 소통하신 적 있습니까, 이번 계엄과 관련해서?

○인사혁신처장 연원정 전혀 없습니다.

○모경종 위원 당일 날 대통령과 행사하셨지요, 계엄 당일 날?

○인사혁신처장 연원정 예,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방문으로 인해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모경종 위원 그 당시에도 별 말씀 없으시던가요?

○인사혁신처장 연원정 전혀 없었습니다.

○모경종 위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국방부장관에서 안보실장 겸임하는 문제로 여러 가지 좀 시끄러웠었는데 기억하세요, 혁신처장님?

○인사혁신처장 연원정 예, 그전에 일정 기간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모경종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계엄의 시작점은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국방부장관으로 가면서, 즉 신원식 당시 국방부장관이 안보실장으로 오는 그 시점부터 시작됐다고 보는데 인사혁신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발언하신 적 있어요.

김용현 장관이 국방부로 오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조력을 한 것 아닙니까?

○인사혁신처장 연원정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모경종 위원 그리고 국방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바로 수용이 됐는데 이 점에 있어서 인사혁신처는 임면 절차, 면직 절차에 대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인사혁신처 한 것 없습니까?

○인사혁신처장 연원정 저희들은 정무직 관련해서는 임명과 관련해서 재가 상신 절차를 저희들이 냅아 오는 과정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모든 절차를 다 빠짐없이 했습니까, 그 두 장관에 대해서?

○인사혁신처장 연원정 예, 특별한.....

○모경종 위원 확실하게 확인하고 말씀하세요.

○인사혁신처장 연원정 특이사항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경종 위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없는 겁니까?

○인사혁신처장 연원정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확인하고 다시 보고하십시오.

정확하게 왜 그 수많은 국무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행안부장관과 국방부장관만 초스피드로 사의를 수용하고 현재 피의자 신분, 고발된 상태에서 방어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지를 면밀하게 따져 봐야겠습니다.

인사혁신처장은 관련된 절차가 정확하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하십시오.

○인사혁신처장 연원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인사혁신처장, 그 문제는요 이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상황을 파악해서 그 절차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장 연원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김성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회 위원 선관위 사무총장님, 상황 파악이 좀 되셨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상황 파악이 됐는데 자세한 것을 조금 더 요구를 했습니다.

○김성회 위원 실무적으로 답변하실 분이 하실 건가요, 아니면 시간이 더 필요한 건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아닙니다. 조금……

왜냐하면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청사 내부에 진입 안 했다는 저희의 보고는 맞고요. 그리고 기사에 나온 부분 보면 밤 11시에 청사 내에서 그동안, 그러니까 입소한 직원들에 대한 통제가 있었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상황은 그때 통제를 한 직원이 우리 선관위 직원이랍니다. 그래서 누가 왜 통제했는지를 지금 정확하게 확인해 가지고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성회 위원 아니, 수원 선관위 연수원 생활동에 머물던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12월 3일 밤 11시 민간인 강연자, 선관위 소속 승진 후보자들이 머무르던 숙소 각층에 사복 차림의 남성들이 배치됐다라고 기사가 나갔는데 사무총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 사복 차림의 기사가……

○김성회 위원 사무총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김성회 위원 기자가 취재를 하면 그 취재에 응한 수원 선관위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하기 전에 최소한 선관위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사가 나오는데? 기사 내용을 지금 전혀 모르고 계시는 거고 무전기로 소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선관위 직원일 거라고 추측하고 계시는 거지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지금 선관위 직원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누구인지, 정확하게 누구인지, 어떤 목적에서 그렇게 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김성회 위원 그러면 여기에 경찰이 출동돼 있던 것도 마찬가지로 경찰도 경내에는 진입 안 하고 바깥에서만 머물렀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은 저희가 보고한 내용에 허위는 없고 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하지 않은 내용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다시 말씀드리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성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양부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부남 위원 우종수 수사본부장, 질의하겠습니다.

계엄이 해제된 12월 4일 안가의 모임에 대해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예.

○양부남 위원 그 안가 모임 관련해서 조사했습니까, 누구누구 참석했는지?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예, 참석자 저희 CCTV를 통해서 확인하고요.

○양부남 위원 알았습니다.

거기에 김건희 여사 있었습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없어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현재까지 저희가 확인한 거에는 없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걸 좀 자세히 파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CCTV에 안 찍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석한 사람들 상대로 김건희 여사 참석 여부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해 주고, 확인해 보시고.

다음에 공조수사본부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공조수사본부에서 정보사령관 긴급체포해서 검찰로부터 불승인받았습니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예, 그렇습니다.

○양부남 위원 지금 공조수사본부 시스템에 있어서 현역 군인에 대해서는 군경찰이 조사를 해야 돼요, 현역 군인에 대해서.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공수처에서 수사했고요.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양부남 위원 아니, 제 이야기 들어 보세요.

지금 공조수사본부가 공수처하고 경찰하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있잖아요. 이게 세 기관이 수사를 한다 해서 전부 다 관할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현역 군인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할 수 있습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재판관할권은 군법원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수사권은 재판권과 틀린 문제고요.

저희가 작년에 현역 군인을 입건을 해서 검찰을 통해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서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2021년 1월 1일 이전에는 그럴 수 있지만 현재 현행 법상으로는 수사는 저희가 할 수 있고 다만 재판관할권이 있다는 게 저희의 입장이고, 작년에 실제로 저희가 현역 해군 간부를 수사를 했고 정상적으로 검찰을 통해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양부남 위원 체포도 했습니까, 그 당시에?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체포는 안 했습니다.

○양부남 위원 지금 신병에 관한 문제, 긴급체포에 대해서는 불승인했잖아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그렇습니다.

○양부남 위원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역 군인도 보안, 공안 사건에 대해서는 방첩사 군인만이 할 수 있다는 것 알고 있지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긴급체포가 승인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바로 공수처에 이첩을 했고요.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구속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군인을 수사할 때 있어서는 지금 국방부

조사본부 인력으로는 안 되고 방첩사, 군사법경찰관만이…… 지금 안보 사건이잖아요. 수사했던 거 알고 계십니까? 방첩사 직원을 파견받아야 되는데……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방첩사 직원을 파견받을 수는 없고 지금 대부분 거론된 사람들이 장성급이기 때문에 장성급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 수사권이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러면 앞으로 군 장성급에 대해서 경찰은 조사를 안 하네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저희가 불구속수사는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장이 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단계에서는 저희가 공수처로 이첩을 해서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신병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손을 대지 마시고……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래야지만이 그러한 일이 발생이 안 되니까.

지금 공수처는 군 장성을 수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수처가 수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상민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수처로 넘겼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이 수사, 조사할 계획이 있습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저희도 공수처로 이관을 했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러면 윤 대통령이 나오면 누가 조사해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공수처에서 조사를 하고요. 다만 공수처 수사 인력이나 또 인적, 물적 인프라가 저희만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합동으로 도와주도록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돼 있는 상태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지금 사건이 발생한 지가 거의 18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벌받지 않은 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경찰에서는 어떤 의지가 있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그렇지 않고요. 지금 공수처에 저희 직원들이 파견돼 있고 또 공수처가 요청하는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수사 인프라를 충분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지금 이 쿠데타의 밑에 있는 세력들은 전부 다 구속이 됐습니다. 제일 위에만 구속이 안 된 현상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그것을 수사를 빨리 진행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다음에 경찰청장직대.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양부남 위원 이번에 남태령 사건에 있어서 거기에 합류하는 시민들에게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기사를 제가 접했는데 신분증 확인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신분증 어떨 때 확인해요, 경찰이?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건 검문·검색이나 이런 거 할 때……

○양부남 위원 아니, 어떨 때 확인하냐고, 신분증을.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범죄 혐의가 있거나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양부남 위원** 그것 무슨 법에 근거해서 신분증 확인을 해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알 수가 없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이보세요, 잠깐만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신분증 확인했다는 사실 자체……

○**양부남 위원** 잠깐만요.

내가 우리 경찰청장직대 답변하는 태도를 보니까 아는 게 없어. 여기 왜 나왔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 내용은 저희들이……

○**양부남 위원** 아는 게 없어요. 경찰관을 몇 년을 했는데 신분증을 무슨 법에 의해서 하는지를 몰라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확인합니다.

○**양부남 위원**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아니지. 주민등록법에 나와 있지. 범인을 체포할 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거기에도 확인을……

○**양부남 위원** 그런데 남태령 집회에 간 사람들이 범인입니까? 왜 신분증 검사를…… 월권이에요. 공부 좀 하시고. 여기 현안질의 나올 때는 공부를 해야 돼요. 시종일관 아는 바가 없어. 모른다고 하고 있어.

그리고 남부청장 나왔습니까, 경기남부청장?

○**윤건영 위원** 안 나왔습니다.

○**양부남 위원** 안 나왔어요? 지난번에 질의할 때도 나왔는데 본인은 계엄군이 있는지 모르고 경찰병력을 동원했다고 하는데 이게 전부 통화한 내역이라든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차벽으로 중앙선관위와 연수원을 막았는데 계엄군이 있었는지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지금 수사본부장.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예.

○**양부남 위원** 수사본부에서는 남부청장을 피의자로 조사했습니까, 참고인으로 조사했습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참고인으로 진술을 한 후에 고발이 됐기 때문에 현재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양부남 위원** 그것 철저히 수사하세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양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괴담, 괴담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서 이 괴담이 얼마나 많이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고 또 사회적 비용을 놓게 하고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시키는지 여실히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멀리에서는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 오염수 괴담, 심지어 최근에는 또 이제 부정선거 관련 괴담마저 유포되어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정치인들이라도 앞서 가지고 우리 지역, 우리 사회에서 괴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괴담이 없는 나라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선관위 사무총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괴담 관련해 가지고 지금 선관위 웹사이트 가니까 아주 사실이 아니라는 그런 내용을 보도자료로 만들어서 잘 배포를 하고 있던데 사실 이런 게 좀 더 일찍 시작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힘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우리 사회에 유포되고 있는 부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취합해서 거기에 대해서 힘들지만 좀 충분한 적극적인 어떤 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어떻겠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고 있는 사안입니다. 물론 앞으로 또 어떤 증거가 나올 것 같으면 그때는 또 제 생각이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전직 총리까지 하신 그런 분께서도 앞장서 가지고 선거에 부정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아, 저런 사람들도 정말 바보가 아닐 텐데 저렇게 하는 거는 나름대로 뭘가 자료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선관위에서 전직 총리가 이렇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앞장서서 말씀하고 계신 그분들 한번 만나 가지고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설명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분 만나 뵙고 한번 말씀을 나눠 볼까 싶은 생각은 있었는데……

○**김종양 위원** 그러니까. 좀 아쉬워요. 전직 국회의원도 있고 전직 총리도 있고 또 전직 국정원장도 있고 등등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나름대로 국가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온 그런 사람인데 힘들더라도 그런 분을 만나 가지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도록 설명이라도 할 것 같으면 그런 분들이 생각을 달리할 것 같으면 이런 부정선거와 관련 괴담은 줄어들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런데 우리 직원이 한번 그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그 토론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네들의 주장만을 하고 반박하는 부분을 받아주지 않고 소란이 일어나서 서로 제대로 논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황교안 전 총리께서 12월 30일 날 대국민 토론회를 말씀을 하셨다는 그 기사는 봤습니다. 그런데……

○**김종양 위원** 하여튼 물론 그런 토론회에 가면 세에 밀려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러면 선관위가 그런 분들 몇 분을 초청을 해 가지고 설명을 하는 그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차라리 공식적으로 방송사를 동원해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거기에 일정 수의 대등한 구조에서 토론을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양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잠재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사실이 아니니까 내팽개칠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이런 괴담이 사라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계엄 선포하고 난 이후에 이제 대통령의 생각에 대해서 조목 조목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하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좀 늦지 않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참고로 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가지고 하여튼 최소한 그런 부정선거 괴담이라도 사라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괴담을 주장한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걸 시인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볼 것 같으면 사드니 광우병이니 오염수니 이런 괴담을 터뜨린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하잖아요. 얼마나 그걸로 인해서 우리 사회적 비용을 많이 치렀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치인이나 그 괴담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 단 한 사람도 그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앞으로는 개선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찰청장직무대행께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김종양 위원** 지금 오늘 남태령 행사 관련해서 많은 이런저런 지적들이 나오고 그나마 크게, 큰 불상사가 없어 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집시법은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법이잖아요. 그리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회·시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먼저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트랙터 몇십 대가 오고 있었을 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34대입니다.

○**김종양 위원** 34대, 단순하게 이동수단으로 트랙터를 몯 겁니까, 아니면 집회·시위 플래카드라든지 집단 시위의 어떤 형태로 그렇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플래카드하고 이런 것 다 부착된 상태에서……

○**김종양 위원** 그건 단순하게 이동수단이 아니고 그냥 시위의 형태로 전진하는 시위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현장에서 바로 막은 게 아니고 사전에 그런 부분에 해서는 안 된다고 제한을 했지요? 사전 제한 통고를……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현장에 제한 통고했습니다.

○**김종양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오늘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냥 무작정 합법적인,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경찰이 앞장서서 막았다는 분위기로 지금 느낄 수 있고 그래서 그러는데, 사실 경찰은 평화적인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누구보다 앞장서 보호해 주는 기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왜 경찰에서 이렇게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 좀 설명해 가지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알겠습니다.

○김종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대전 대덕구 박정현 위원입니다.

앞서 김종양 위원께서 농민 집회가 마치 폭력 집회인 것처럼 잘못 오도될 수 있는 발언을 하셔서……

농민 집회가 폭력 집회였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

○박정현 위원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경찰에서는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거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박정현 위원 그거는 명확하게 하셔야지요. 이게 잘못하면 마치 폭력 집회였기 때문에 경찰이 막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저도 존경하는 양부남 위원께서 그날 당일 신분증 확인……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제가 그걸 보고받지 못해서……

○박정현 위원 그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저는 어떤 제보를 받았냐 하면 신분증 확인을 해서 시민들이 항의하니까 어떤 경찰이 ‘계엄이라서 신분증 확인을 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혹시……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 최현석 위원님……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서울청장 답변……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 최현석 제가 당시에 지휘를 할 때요, 시민들이 내려올 때 일체 통제하지 말고 자유롭게 통행하게 다 받아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박정현 위원 그런데 왜 신분증 확인을 합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 최현석 혹시…… 신분증 이야기 나온 거는 저도 확인 중인데 그건 아마 경직법상 일부 시민한테만 좀 직무 질문 한다는 차원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일부 시민을 가려서, 폭력 집회라도 하실 분이라고 가려서 하는 거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 최현석 예, 저도 그 사항은 확인 중인데……

○박정현 위원 그날 그런 사안이 있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 최현석 예, 어쨌든 확실한 거는 저희들은……

○박정현 위원 그 부분은 명확하게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 최현석 예.

○박정현 위원 우종수 본부장님.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예.

○박정현 위원 윤석열 씨가 또 출석요구서 거부했네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25일까지이기 때문에요.

○박정현 위원 오늘……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아닙니다. 25일까지입니다, 25일 10시까지.

○박정현 위원 25일 날 나오라고 했는데 아직 거부하는 걸로 지금 드러났거든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제가 이 자리에 있어서……

○박정현 위원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하고 부속실에서는 수취인 불명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 관저에서는 수취 거절을 했어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수취 거절을 한 거는 알고 있고요. 그게 명시적으로 25일 날 출석하지 않겠다 하고……

○박정현 위원 안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그러니까 보는 문제하고 명시적으로 출석을 거부한 의사 표시를 한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출석 거부를 했으면 안 나오지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출석 거부를 한 게 아니라 수취 거부.

○박정현 위원 수취 거부 자체가 출석 거부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그건 이제……

○박정현 위원 어쨌든 25일 날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출석요구서를 보낸 주체는 고위공직자수사처, 공수처입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일차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박정현 위원 공수처랑 지금 공조하시는 거지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공조하고 있고 공수처에서 저희의 의견을 물으면 저희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체포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박정현 위원 체포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야지요. 지금 압수수색도 계속 거부를 했고 대통령실에서 임의 제출은 한 걸로 나오는데, 압수수색할 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임의 제출한 거라는 것이 진짜 A4 용지 몇 장……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주고 싶은 것을 준 거잖아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거는 출석요구서도 거부하고 증거 인멸의 상황이 굉장히 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헌법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여야 추천 후보자 모두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의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라고 다

의견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공무집행 방해나 이런 걸로 문제를 삼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형사소송법상 국가중요시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군사상 비밀하고 공무상 비밀 때문에 그런 건데 실제로 내란 사태 때문에 오히려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이 더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어쨌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강제 구인을 한다든지 체포영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 부분에 있어서.....

○박정현 위원 동의하시지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상당히 고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정현 위원 하셔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진석 비서실장 수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빨리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여기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혹시 추경호 전 대표 소환 조사하셨어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저희가 계속 출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출석에 안 응합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출석에 계속적으로 응하지 않으면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박정현 위원 필요한 조치를 취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난 12월 9일 날 행안위 위원들이 국수본에 가지 않았습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때 제가 발언한 것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서울청 수사부장이 지금 공조본 경찰청 수사 실무책임자로 되어 있지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초반에 왔다가 서울청의 부장과 광수단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냈습니다.

○박정현 위원 바뀌었나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전방위적으로 내란 공범들이 권력기관에 다 편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요. 다시 내란 사태가 발생할 거라는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 내부에서도 지금 공수처랑 공조도 하고 어쨌든 특별수사본부도 만들어서 활동하시는 데 그 안에 관련자들이 있는지는 확인하셔서 정말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좀 드러내 보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김종양 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20초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잠깐만요.

김종양 위원님.

○김종양 위원 조금 전에 박정현 위원님께서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신 것 같아 가지고 내가 바로 잡고자 합니다.

남태령 고개 트랙터 시위를 제가 '폭력 시위'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박정현 위원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김종양 위원 왜냐하면 그것은 잡시법상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는 시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한을 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 그래서 경찰에서는 그 제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위를 강행하려고 한 것을 제재했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물었는데.....

○박정현 위원 입장에 따라서 해석이 다른 거지요.

○김종양 위원 아니,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지요. 정확하게 알고 해석을 해야지요. 동료 위원의 질의 내용을 갖다가 그렇게 편안하게 해석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생 위원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케이블타이를 들어 보이며)

김용빈 사무총장님, 이게 뭘지 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게 구속 용도인가요?

○정춘생 위원 예, 이것을 묶으면 이렇게 됩니다. 팔에 껴서 잡아당기면 수갑이 되는 겁니다. 바로 계엄군이 선관위 직원들 30명을 체포해서 손발을 묶고 두건을 써워서 B1 병커에 실어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심각한 상황, 무서운 상황에 비해서 그 상황에 대한 총장님의 인식 그리고 그것의 대응이 굉장히 너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연수원에서 감금되고 이런 상황이 파악되지도 않고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고 선관위 차원에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지 이런 후속 대응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엄 선포, 윤석열의 계엄 선포 당시 워딩이나 아니면 12월 12일 담화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내란수괴 윤석열 씨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성추행으로 불명예 퇴역한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 현재는 점집을 운영하고 있는 남자 보살로 불리는 무속인입니다. 이분이 롯데리아에서 전현직 군인들 앞에서 '선관위 전산 서버를 확인하면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총장님은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선거 부정이 가능합니까? 구체적으로 개표 부정, 결과 조작이 가능합니까? 우리나라의 선거시스템이 그렇게 허약합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불가능하다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선거, 예를 들어서 정보, 전산 서버를 조작했다고 해서 선거 결과가 조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저희는 실물 투표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개표 과정에서 실물 투표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정춘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것보다 정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독버섯 같은 이 영향력, 대통령 지위에 있던 사람까지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근거로 계엄까지 선포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비하면 선관위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선거가 있을 수 없음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선관위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자극적인 허위 사실을 무분별하게 확대·생산해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 허위 사실에 기반한 부정선거 의혹 유포 행위를 제한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법적 공백 때문에 발생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접근을 하는데 국민의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이 되기 때문에 한병도 위원님도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듯이……

○**정춘생 위원** 조심스러운 것 저도 인정을 하고요. 처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게 독버섯처럼 번지고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다 퍼져서 이 대한민국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것까지 오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래서 한번 논의는……

○**정춘생 위원** 이것은 처벌 조항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논의를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정춘생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정춘생 위원** 요즘 단체장들, 단체장들이 윤석열 탄핵 집회에 참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당의 문제 제기도 있고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장들이 윤석열 탄핵 집회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까? 공직선거법 위배가 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단체장들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그 부분이 약간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즉답 드리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아서 검토해서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 의사 표현은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선출직 단체장이 아니고 공무원조차도 그런 의사 표현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런데 공직선거법상……

○**정춘생 위원** 다만 그 현장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아니면 반대하거나 이런 의사 표현을 하지 않고 윤석열 탄핵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 하나로 그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틀렸다고 보고 있기 때

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명확하게 해석을 내려 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검토를 해서……

○**정춘생 위원** 왜냐하면 각각의 자치단체에서 내리는 해석들이 달라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 적용이 많이 혼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명확하게 검토해서 답변을 내 주시길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선관위 사무총장님, 선거가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에서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결국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소위 국민의 의사의 총의를 합해서 국정을 운영하게 되는 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근간이지요, 민주 제도라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왕정과 귀족정과 다른 것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을 통해서 주권자의 대리자를 뽑는 이런 것이 민주 제도인 거잖아요, 그것이 다수결의 원칙이고. 그런데 이 선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 없이, 아무런 근거 없이 선거 자체가 불법이다, 조작이다 이 것은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관위가 입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거 과정에서, 작은 선거 과정에서 부정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조사하고 부정선거를 할 수 없게끔 처벌해야 되지요. 그런데 막연하게 선거가 조작되었고 부정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국익을 해치는 행위지요. 그것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보다 더 명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고 저는 국수본에서도 관련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헌법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선 질의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 축구를 제가 드렸는데요. 대통령실과 경호처에서는 형사소송법상 군사적 비밀 그리고 공무상 비밀에 관한 조항을 근거로 수사에 협조하고 있지 않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보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11조 2항에도 마찬가지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를 협조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적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2기가 출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지 못합니다. 경제는 불확실성의 증가로 증시와 환율이 크게 충격을 받고 있고 기업은 물론 국가신인도 추락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국가의 이익이, 중대한 이익이 해를 당하고 있고요. 민생에 있어서도 내란 사태 이후에 전국 모든 시도의 신용카드 이용 금액이 26.3%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계엄 트라우마로 불리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사회는 쑥대밭이 된 의료 현장, 연금 개혁, 국가 전력망 구축, AI 산업 등 국가 관련된 산업들이 올스톱된 상황입니다. 그들이 조사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피의자를 보호하고 그곳에 보호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적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수본에서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근거해서 대통령실과 경호처를 수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다만 승낙을 거부할 경우에 이를 강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서 저희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위성곤 위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위반하고 있잖아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기관에 고지를 하고 관련된 수사를 하겠다라고 통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의 이익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계속 버티고…… 최소한의 염치는 있고 양심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통령 자리 해 먹었으면. 국민들이 왜 분노하겠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잡범 수준도 안 돼요.

○위성곤 위원 잡범도 안 되지요, 잡범도.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국수본부장님, 김용현 전 장관 조사 못 했지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예.

○이상식 위원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검찰이 협조를 거부해서 못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저희가 피의자들의 공범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모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쨌든 김용현 장관의 조사 자료를 요청을 했지만 아직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이상식 위원 아니, 검찰 이분들은 왜 경찰 수사에는 이렇게 철저하게 비협조를 하면서 체포조 이것을 과장해 가지고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간부를 두 번씩이나 부르고 국가수사본부장 휴대폰을 압수수색하고 참 희한한 분들인데요.

여기 KBS 뉴스에 의하면 국방위의 조국 위원께서 ‘검찰에서 윤이 아닌 김용현 중심으로 주모자를 몰고 간다라는 이런 질문을 했느냐’ 이런 질문에 꽈종근 특전사령관이 ‘그렇다’ 이렇게 대답한 그게 있는데 본부장님 보셨습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저는 그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상식 위원 아니, 기록 말고 언론 보도, 이 언론 보도 있습니다. 이것을 못 봤다는 말입니까, KBS 언론 보도에 나왔는데?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언론 보도는 봤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러니까 검찰에서 유도 신문을 하기를 김용현 장관이, 그러니까 윤 통이 아니고, 윤석열이 아니고 김용현이 몸통이다라고 진술을 그렇게 유도했다는 조국 위원의 질문에 꽈중근 특전사령관이 ‘그렇다’라고 대답했다는 게 언론 보도의 요지거든요. 그렇다면 더욱더 김용현 전 장관을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 플러스, 아니, 경찰이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이런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경찰 간부들 10명의 휴대폰을 통째로 압수수색한다면 이 조사한 검사 또 위에 박세현입니까? 고검장·본부장 그 양반 휴대폰 당연히 경찰에서 공수처 검사를 통해서 압수수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들끼리 내란수괴들하고 잔당들 간에 어떤 공모가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본부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제가 타 기관에 대해서……

○이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전혀 틀립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어쨌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현재까지, 계엄 전부터 현재까지 대통령실이나 군 관계자나……

○이상식 위원 아니, 우 본부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에 대해서, 검찰이 이런 행태를 보이면서 경찰에 대해서는 새로남불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검찰에 대해서, 검찰 간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한번 신청할 용의가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

○이상식 위원 대답 안 해도 좋습니다.

두 번째,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석열이 대한민국의 최대의 리스크이자 반국가세력의 수괴이자 대한민국의 보통 국민들의, 절대 다수 국민들의 정신 건강에 막대한 악영향을 제공하고 있다. 이분이 지금 바깥에 이렇게 관저에 계시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것 제 주장이 아니고 여러 보도를 통해 나온 건데, 이것 25일까지 2차 출석 요구했는데 저는 100% 안 나온다고 보고요. 2차까지 안 나온 사람이…… 원래 수사규칙에 의하면 세 차례에 걸쳐서 출석 요구를 하도록 돼 있는데 25일 날 안 나오면 저는 안 나온 것으로 간주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에서도 보면, 오전 보도에 보면 송달 서류를 안 받으니까 수령 간주한 것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고 변론기일도 12월 27일로 다시 확정을 했다 이 말입니다, 현재에서.

그래서 본부장께서 아까도 계속 ‘공조본에서, 공수처에서 의견을 요청하면, 물어온다면’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국수본부장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 하십시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예,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공수처…… 표현이 적당한지 몰라도 공수처는 그냥 명목상의 대표이사일 뿐이고 최대 주주는 경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증거 다 가지고 있지 지금 수사인력 다 가지고 있지 압수수색 다 해서 신병도 다 확보하고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두려워 가지고 지금……

국가수사본부장이 하여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올 연말 내에, 연내에 윤석열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제가 주저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지금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 이것 여론조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그것을 집행하면 압수수색영장하고 달리 경호처의 보안 규정이나 이런 게 무용지물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항거하면 그야말로 공무집행방해의 혐행범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호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차장께서 경찰력을 지원해 가지고 그것을 단호하게 제압하셔야 된다.

저는 지금 앞에 나오신 국가수사본부장하고 경찰청 차장님, 두 분에게 경찰의 명예가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달희 위원 저는 아까 질의에 이어서, 우리 사회 혼돈을 가장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은 모든 기관과 모든 사람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고 원칙에 따라서 해야 우리 사회를 지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영 경찰청장직무대행님, 아까 동료 위원께서 다시 내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국민들이 우려하신다는데 가능합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달희 위원 선관위 사무총장님, 총장님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명하셨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저희 기관은 임명권자가 따로 없습니다. 위원회가 독자적인 헌법기관이라 결국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

○이달희 위원 그러면 평소에 대통령께 선관위 관련해서 업무는 직보를 절대, 전혀 하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대통령에 대해서 보고하거나 그럴 의무가 없습니다.

○이달희 위원 KISA와 국정원의 발표가 있고 난 뒤에 아까 국정원에서 한 것도 용산이나 그런 곳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렇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러면 사전에 대통령께서 이렇게 비상계엄을 내릴 정도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것 모르셨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래서 의아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달희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저희들이 우선, 문제가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부분이 아니고 일부분에서 일어나도 고위직 하신 분들이 많이 제의를 하고 이러는데 이럴 때는 문제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이달희 위원** 유튜브나 이렇게 문제 제의하는 분들이 문제 제의하는 가장 큰 세 가지, 제일 큰 것 한 세 가지 차례대로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일단 서버 보안에 의해서 부정선거의 의혹이, 서버 조작이 가능하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다음에 서버 조작만 가지고 가능하지 않…… 자세한 내용은 서버 조작이 됐다고 하는 부분은 일정 선거에서의 수치가……

○**이달희 위원** 내용만 말씀하시지요.

서버 조작,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다음에 분류기 조작을 통해서 투표지 개표할 때 조작이 가능하다는 그런 주장하고 그다음에 조작된, 그러니까 서버에 의해서 조작된 수치에 따른 투표함 바꿔치기 등에 의해서 부정투표지를 산입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이런 3개인데 저는 오랫동안 정당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부정선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야 선거참관인들이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여러 군데서 국민의 일부분이 이렇게 확산하고 이럴 때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나름대로 부정선거론자들이 주장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고요.

○**이달희 위원** 반박을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보도자료나 그다음에 홍보물 영상까지 저희들이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상영하도록 했습니다.

○**이달희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교안 전 총리나 이런 분들 다 이렇게 모아서 한번 직접 그런 부분에서…… 직접 거기 가 보면 우리 선거개표기 보면 최종 마지막으로 선거사무원들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이달희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내용이 있을 때는 확실하게 먼저 선제적으로 정리를 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실제적으로 일선에서도 많이 노력했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런 행위들을 우리가 할 때는 법적으로 아주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법적 집행을 할 때 이 기관이 윤리적으로 국민적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선관위에서 여러 가지 감사원 감사의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조직의

어떤 혁신안이 있는지 좀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이달희 위원** 전체 서버에, 4428만 11명이 지난 총선의 서버 안에 들어 있지요? 이게 해킹됐을 때 저는 선거 조작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자료 유출은 확실하게…… 그 안에 들어 있는 게 사람 남녀 구분일 거고 주민등록번호일 거고 주소일 거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이달희 위원** 많은 보이스피싱도 있고 이런데 이 서버가 탄탄하지 못하면 우리 국민 전체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거지나 이런 모든 게 다 외국이나 이런 데 해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보안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문의하신 기존의 채용비리 등과 관련한 인사혁신안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독립적으로 감사관 제도를 만들고 감사위원회를 설정해서 인사감사, 소위 과거에는 하지 않았던 인사감사 부서까지 만들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내용이, 과거의 정계 사유에 비해서 금년도의 인사비리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수 정리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나름 지금 감사원 감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정계 절차가 진행할 수 없어서 중지되었을 뿐이지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거의 비리에 대한 부분은 염중히 저희가 정계 절차를 밟아서 정리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는 새로운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쭈촘하게 지금 인사감사 라인을 재정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달희 위원** 그리고 서버 보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리고 두 번째, 보안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사태 즈음에서 정말 우리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서버를 그냥 공개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일반 국민들도 이번 사태를 말씀하시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니네들이 까’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세요.

그런데 저희가 선관위 서버를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는 할 수 없으니 법적인 조치에 따라서 공개하겠다는 게 저희 공식적인 의견이고요. 즉 이번 수사 과정에서 필요해서 서버의 증거 수집 차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이 발령되거나 아니면 탄핵이나 또한 법원의 선거 소송에서 그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결정해서 하시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응할 의사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극적으로 서버를 만약 공개하게 되면……

○**이달희 위원** 저는 서버 공개를 묻지 않았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이달희 위원** 해킹에 대한 보안을 얘기했지, 다른 얘기를 하시네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지금 이 서버 보안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에서 얘기한 부분에 대한 부분도 금년에 1·2차 해서 나름 22대 국선을 준비하면서 보안은 완전히 강화된 상태에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관위의 입장은 어느 국가 조직보다도 선거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보안망은 완벽하지 않느냐, 100% 절대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도 그래도 믿고 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4월 22대 국선을 맞이하면서 선거보안자문단이라고 하는 사계의 IT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 대비책을 전부 마련해서 검증도 한 상태에서 치렀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여러 차례 질문이 계속되고 진술이 또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선관위의 서버라든가 데이터가 오염돼서 부정선거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런 오해와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 대한 해소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계속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선관위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제가 사회자로서 지금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지금까지 선관위의 조치가 대단히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그런 측면에서 이후 계엄 사태에 대한 조치사항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이후의 의사일정 진행에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 이해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 주셨고 또 이달희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이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압수수색을 통한 서버 공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잘못한 게 있어야 압수수색을 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해식 위원** 그런데 그렇게 총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약간 뭔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저희들은 국민들한테 선거관리에 대한……

○**이해식 위원**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충분히 투명성을……

○**이해식 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또 그런 것을 압수수색 이렇게 표현하면 무슨 잘못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데 다만 지금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전광훈 목사라든지 황교안 전 총리라든지 민경욱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증인 신청을 하든지 해 가지고 증인으로 부르고, 또 사계의 전문가들의 검증을 다 마치셨다고 아까 총장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분들도 증인으로 부르고 해 가지고 한번 청문회를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우리 상임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식 위원** 도대체 정말 황당한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지난 토요일 날 광화문 집회에 나갔는데 저쪽 이순신 동상 근처에는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광훈 목사 쪽이 집회를 하고 있어 가지고 제가 일부러 한번 가 봤어요. 그런데 거기 나오는 방송이 다 부정선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그게 또 하나의 어떤…… 또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계엄 발동의 요인이 됐다고 하니까 한번 그렇게 증명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총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국회 청문회 부분은 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식 위원** 물론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래서 여야 국회의원분들이 행안위 차원에서 논의를 해 주실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해식 위원** 위원장님께 제가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아까 말씀드린 것은 차라리 공인된 방송사에서 생방송으로 일정한 수의 패널을 갖고……

○**이해식 위원** 그런 것도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겠네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국민들한테 공개토론을 해 보는 게 어떠냐 이런 정도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해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영등포경찰서장 나와 계세요?

서장님, 대통령실에서 언제 근무하셨어요?

○**서울영등포경찰서장 강상문** 근무한 적 없습니다.

○**이해식 위원**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적 없어요?

○**서울영등포경찰서장 강상문** 예, 없습니다.

○**이해식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착각했나 보네요.

강상문 서장님 아닙니까?

○**서울영등포경찰서장 강상문** 맞습니다.

○**이해식 위원** 서장님, 무전을 제가 보니까 당일 23시 1분에 형사과장에게 형사 비상소집을 지시했다. ‘형사들과 각 지역 순찰대 1대씩 지원해서 국회와 각 당사에 최소 1대씩 배열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해라’ 이렇게 무전을 했어요?

○**서울영등포경찰서장 강상문** 예, 했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리고 20분 후에 영등포서 형사과장 무전을 보니까 ‘지능팀 직원들을 현재 비상소집해서 조사 대기 준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형사과장 무전이 있습니다. 서장님한테 한 거예요?

○**서울영등포경찰서장 강상문** 예.

○**이해식 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이미 11시경에 형사과 비상소집이 됐고 20분 후에는, 지능팀이라는 건 예를 들면 어떤 범죄 혐의자가……

○**서울영등포경찰서장 강상문** 집회·시위 사범……

○**이해식 위원** 집회·시위 사범에 대한 조사를 하는 인력 아닙니까?

○**서울영등포경찰서장 강상문** 그렇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영등포서가 누구를 체포해서 수사를, 조사를 하려고 했던 건가 이런 의문이 드는데 어떠세요?

○**서울영등포경찰서장 강상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해식 위원** 어떻습니까? 왜……

○**서울영등포경찰서장 강상문** 당시에 계엄 선포 사실을 인지했을 때 형사과장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던 참모들이 계엄 상황이고 국회 앞에 시민들이 많이 몰려 있다고 하니까 일단 참모들을 비상소집을 합시다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고 형사과장이 그러면 형사들도 비상소집을……

○**이해식 위원** 보통 그런 큰 집회가 있으면 으레 형사과 소집을 하니까 했던 거다 그런 얘기지요?

○**서울영등포경찰서장 강상문** 그러니까 집회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요. 계엄이 나고 시민들이 몰려오고 저희 영등포 관내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20분에 지능팀이 왔다고 하는 건, 그때쯤에 전 직원 비상소집을 지시했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 전 직원 비상소집은 10분 후예요. 10분 후라고요.

○**서울영등포경찰서장 강상문** 그때 논의가 돼 가지고 무전에는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이해식 위원** 특별히 문제 될 소지는 없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서울영등포경찰서장 강상문** 예, 그렇습니다. 체포조 얘기가 나온 건 그 뒤 시간이고요.

○**이해식 위원** 옆에 이상식 위원님이 그렇다고 자꾸 강조를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인사 관련해서 잠깐 짧게 묻겠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님.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해식 위원** 총경 이하 인사에 대해서는 어떤 방침을 세우고 계세요? 총경 이상은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경찰 인사가 지금……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통상 경찰 인사를 12월에서 2월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먼저 승진심사를 상위직부터 하고 그다음에 보직 인사하는 체제입니다. 통상적으로 위의 자리가 비어야 밑의 사람이 올라가고 지방하고 서울하고 이렇게 순환 인사하는데요. 총경 이상 승진심사 같은 경우는 저쪽 정부 인사 개념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직인 총경……

○**이해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통령 결재까지 나야 되잖아요, 최소한 총경 이상은?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총경의 전보는 대통령 결재는 나지 않아도 됩니다. 경찰청장 전결사항입니다.

○ 이해식 위원 총경 이상.

○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총경 이상 승진에서는 그렇습니다.

○ 이해식 위원 승진, 그렇잖아요?

○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 이해식 위원 그러니까 승진 인사나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현재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연초에 교육이라든가 하면 총경 정도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올해 인사를 안 하면 내년에 한 100석 이상 공석이 발생을 합니다.

○ 이해식 위원 아까 2월 달까지 인사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통상적으로 매년 2월……

○ 이해식 위원 어떻든 지금 상황 자체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충분히 조치를 한 이후에 그런 걸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특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행안부장관직무대행께 여쭙겠습니다.

행안부가 전국 지자체에, 12·3 계엄령이 발동을 하고 광역시·도에 계엄 포고령 관련 청사 출입자 통제 및 폐쇄명령 내렸습니까?

○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인사혁신처에 있는 당직총사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그 내용 전파를 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어디서 받았다고요?

○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당직총사령으로부터 받았습니다.

○ 이광희 위원 당직총사령?

○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당직을…… 말 그대로 총사령 그분이 복무 관련된 사항을 지시합니다.

○ 이광희 위원 어떤 지시였습니까?

○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출입문을 폐쇄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에?

○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지자체는 아니고 당직실에 일단 전파가 됐고요. 저희도 행안부 차원에서는 지자체에 전파를 했습니다만 단 2시간 후에 다시 그건 지자체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몇 곳……

지자체는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래서 됐다고요? 그러면 스스로 잘못한 걸 시인하시는 거지요? 대상이 안 된 곳을 폐쇄를…… 어디에서 지시를 받았다고 그랬지요?

○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인사혁신처에 있는 당직총사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당직하시는 총사령이……

○**이광희 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전국의 지자체까지 전부 폐쇄명령 내리고 장악하려고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위원님.

○**이광희 위원** 아니, 그리고 나서 2시 21분에…… 국회에서 해제명령 내고 나서 2시 21분, 그러니까 2시 넘어서 다 해당 없다고 다시 연락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그 사이에 여러 지자체로부터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광희 위원** 여러 지자체 중에서 그러니까 연락이 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됐었던…… 보고가 안 된 곳들이 좀 있어서, 보고가 된 답변했던 곳 열두 곳 중에서 여섯 곳이 응했고 일곱 곳은 이건 우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머지 연락 안 한 곳을…… 그러니까 지자체는 해당 없는데 왜 이걸 행안부에서 지시를 하느냐 이렇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거기에 따라서 해제를 한 겁니다.

○**이광희 위원** 어떤 근거로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나요? 처음에 이렇게 명령을 내렸을 때 뭔가 점검을 해 보고 하셨을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인사처 총당직으로부터 지자체까지도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전파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 후에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광희 위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까지 포함된다고 했는데 아마 포고령에 의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포고령에 의하면 포고령 1호 1항의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이것은 헌법 77조와 계엄법 7조, 계엄법 8조를 위반한 위헌인 것 아시지요? 이 안에는 어떠한 내용도, 국회도 지방의회도 정당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포고령 자체가 위헌이라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제 판단으로는 포고령보다는 아마 당직실에서 당직 차원에서 전달하고 전파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광희 위원** 아니, 그러면 행안부 차원에서는 책임이 없다? 그냥 당직실에서 당직 실무자가 알아서 했다? 그렇게 믿으라는 겁니까, 지금?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사실이 그렇게 전파가 된 사항이고 다시 수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광희 위원**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 전파한 분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주셨습니까?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전부 계엄령하에 통제하려고 했었던 시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전파도 어떤 통로로 하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당직시스템을 통해서 전파도 하고 유선……

○**이광희 위원** 전화로 하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전화도 함께 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전화하고 또 뭘로 하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당직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갔습니다.

○**이광희 위원** 당직관리시스템으로 하셨어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이광희 위원** 이것 통해서 일부 지역은 또 해제 통보 이런 게 전파도 안 돼서 그다음에 듣지도 못했다고 얘기도 듣고요. 각 지자체마다 전부 굉장히, 이것 때문에 긴급회의를 연 곳도 있고요. 이렇게 됐어요. 이런 혼란스러움을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여러 가지 혼란, 국민들 불편드린 것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광희 위원** 국민들의 불편 정도가 아니라요 이건 행안부에서 법적 근거 없는 계엄포고령에 휘둘린…… 이것 단순하게 무슨 실무자 책임이라고 그냥 몰아가시면 안 돼요.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잖아요.

행안부에서 앞으로도 불법적 어떤 것 나오면 그 근거 규정도 확인 안 하고, 기본 사실도 확인 안 하고 그냥 내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당직총사령이 복무규칙에 따라서 한 사항입니다만 그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광희 위원** 이것 다시 한번 재발이…… 재발이 되면 안 되지요.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행안부는 계엄령을 과도하게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하려고 폐쇄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책임을 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조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환 위원** 위원장님, 30초만 의사진행발언 먼저 쓰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조승환 위원** 제가…… 마침 안 계시네, 또.

제가 내란죄라는 게 굉장히 중한 죄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중하게 정치적 요소를 배제하고 사법적, 법리적인 판단을 해 달라, 그 사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항상 변할 수 있고 그 신빙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진영 논리에 의해서 가짜뉴스로써 계속, 끝나고 난 뒤에도 계속 발전이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성곤 위원님께서 여당 위원들 자체를 아주 비난하셔 가지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님, 내란죄라는 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윤건영 간사님께서 ‘총을 들고 국회에 진입했다. 그거 자체만으로 내란죄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들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총을 든 목적이 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폭동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범죄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조승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해 드리자면 의도성과 목적성, 그다음 국현 문란의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가 판단이 돼야 된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그렇습니다.

○조승환 위원 저는 그 부분을 분명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위성곤 위원님께서 참 국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탄핵은 탄핵심판 재판소로 넘어갔고 내란 부분도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특검법들이 계속 줄줄이 발의돼 가지고 일단 사법의 영역으로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여의도에서는 탄핵의 강도, 내란의 강도 건넜다. 우리 여야가 수사기관과 사법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국가신인도 향상과 민생 경제를 비롯한 국정 안정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지금 제일 걱정스러운 것 중의 하나가…… 행안부장관직무대행님, 지금 우리가 국무위원이 몇 명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지금 세 분이 공석이시고 한 분은 직무 정지되어 있습니다. 15인입니다.

○조승환 위원 15인이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국무회의 구성이 국무총리하고 국무위원으로 돼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헌법에는 15인 이상 국무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국무위원이 한 사람이라도…… 뭐 이건 탄핵이 아니라, 단순 월위뿐만이 아니라 유고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데, 어디 구속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아마 헌법적 해석이 충분히 따라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도 정부가 바뀔 때 최소한도 15인 이상 국무위원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조승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무정부 상태가 된다…… 국무회의가 아무리 통상적인 통과적 의례를 거치지만 우리가 이번 계엄 사태에서 보듯이 상당히, 절차적인 요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인 탄핵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말 국가가, 정부가 돌아가지 않는 위기 상황이 온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헌법적 해석을 어떻게 할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 먼저 드리고.

선관위원장님, 저도 선거법에 대해서 관심을, 여러 차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하고 여러 차례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좀 바람직한 선거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노력하자고 해서 저희 방하고 협의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하고는 한 번도 협의한 적이 없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죄송합니다. 바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환 위원 저는 선관위가 헌법기관적 오만에서 좀 벗어나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감사원하고 권한쟁의심판 하고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조승환 위원 거기에서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은, 지금 12·3 사태가 헌법기관성을 강조하는, 아주 독립성을 강조하는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던데 저는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전형적인……

좋습니다. 저는 위원장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여야 또 민간, 사계 다 합쳐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털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헌법기관적 오만성 부분에 관해서 제가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이 사전투표제도, 그러니까 서버나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프로세스적인 요소에서의 선거 투표함 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부정선거에 대한 하나의 빌미를 다 주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자체가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정보 수집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조사, 수사까지 다 선관위에서 하고 있고 지방선관위에서 하고 있으면 중앙선관위는 아주 그냥 해태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을 현 인력이나 이런 것에 최대한 맞춰야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일단 지금 헌법기관의 오만성이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협행 헌법상 구조가 그렇다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제도는 각국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협행 헌법 구조상으로 헌법기관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행정기관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차후 개헌이 되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나라에 맞는 선거관리위원회 제도가 어떤 것인지는 충분히 국회에서나 국민들 전체가 한번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일 위원 서울경찰청 차장님 나와 주세요.

혹시 대학에서 전공은 뭐 하셨어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 최현석 저 변호사 출신입니다.

○채현일 위원 그러면 법을 잘 아시겠네요, 헌법도 잘 아시고?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 최현석 예.

○채현일 위원 비상계엄을 발동하면 국회의 기능을 정지할 수 있습니까, 헌법상?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 최현석 없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런데 왜 계엄선포 당일 날 김봉식 서울시장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논의할 때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본인은 왜 원천봉쇄를 주장하셨습니까?

○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 최현석 김봉식 청장 말씀이십니까?

○ 채현일 위원 예.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날 왜 이게 중요하냐면 11시 37분에 계엄 포고문이 있고 나서 국회의원들이 그 전까지 30분 동안 출입이 가능하다가 그때 이후로 봉쇄가 됐습니다. 담장을 넘고 난리 났어요.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변호사님이라니까 이걸 인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 포고령이 앞섭니까, 헌법이 앞섭니까?

○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 최현석 헌법이 앞서지요.

○ 채현일 위원 그런데 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왜 원천 봉쇄를 주장해 가지고 국회를 이렇게 아비규환으로 만든 이유가 뭐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내부에서 이미 다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 최현석 사실 내부에서 저희들도 논의를 제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건 너무나 아쉬운 부분인데……

○ 채현일 위원 아니, 본인이 그렇게 원천 봉쇄를 해 가지고 서울청장이 그렇게 결정하고 통제를 했다고 다 나왔는데요, 이미.

○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 최현석 그래서……

○ 채현일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말을 돌리십니까?

○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 최현석 아니요, 돌리는 게 아니고요. 당시에 저희 서울 청 지휘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 채현일 위원 누가 결정했어요, 그러면?

○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 최현석 서울청장……

○ 채현일 위원 본인이 했어요, 아니면…… 서울청장이 원래 단독으로 한 겁니까, 본인이 제안해 가지고 한 겁니까?

○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 최현석 저 본인 말씀입니까?

○ 채현일 위원 예.

○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 최현석 저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때 행안위에서 현안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굉장히 논란이 많은 사안이니까……

○ 채현일 위원 이것 나중에 만약에……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국수본의 수사를 받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참고인 조사는 받으셨어요?

○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 최현석 예,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 채현일 위원 국수본부장,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것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봉쇄하자고 결정한 겁니까?

○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서울청장이 결정을 했습니다.

○ 채현일 위원 서울청장이 결정했지만 누가 그것을 결정해도 된다고 조언을 한 거예요, 그 내부 회의에서, 비상상황실에서? 서울청 내부에서 저희들한테 이미 제보가 들어왔어요. 되게 공분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내부에서 반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지금 차장님—변호사인지는 제가 몰랐는데—‘계엄 포고령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완강하게 해 가지고 서울청장이 국회 봉쇄를 다시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 최현석 아닙니다. 그건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런 적도 없고……

○채현일 위원 나중에 확인을 할 테니까요 그것은 책임을 지세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 최현석 예.

○채현일 위원 사무총장님, 오늘 시사IN 보도가 나왔는데 직원 90여 명이 이렇게 감금 당했는데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지금 확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채현일 위원 아니, 그런데 지난번 현안보고 할 때 선거연수원 상황보고는 없었어요. 단지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렇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선거연수원과 사당 청사는……

○채현일 위원 선거연수원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니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사당 청사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한 내용은……

○채현일 위원 그런데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사무총장은 선관위 조직의 최고 책임자이고 조직 전반을 감독하는 거고요. 대통령이 부정선거 망상으로 내란을 일으키고 선관위 침탈하고 선관위 직원을 체포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선관위가 되게 소극적이에요, 전반적으로 어떤 적극적인 대응 같은 걸 했나요? 선관위 침탈 관련해서 형사고발을 했나요, 어디 뭐…… 적극적인 뭐 한 것 있으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동기시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채현일 위원 석동현 변호사도 서울대 법대 79학번이고 지금 사무총장님도 79학번이시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채현일 위원 처음에 임명이 됐을 때도 물론 공정하게 했겠지만 그런 오해와 우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그런 걸 보면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채현일 위원 아니, 조금 이따가 시간이 될 때요.

직원 30명 명단, 체포할 때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는 과장급 이상 직원만 공개돼 있는데 보안사가 확보한 명단에는 이름과 사진까지 포함됐습니다. 내부 협조 없이 이게 가능한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채현일 위원 보안사, HID 해 가지고 직원들 명단 해서 이름과 사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것 아까 보여 준 바와 같이 CCTV 영상에서 그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내부 조직도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채현일 위원** 내부의 명단 유출 가능성에 있어요, 없어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지금 3층에 있는 조직도, 그 사진에 붙어 있는 조직도가 유출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채현일 위원** 선관위 차원에서 내부조사나 그런 것 좀 해 봤나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래서 발견한 겁니다.
- 채현일 위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선관위가 엄정 중립을 하고 헌법기관으로서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 정황, 아까 기사 같은 경우도 선관위 현안질의를 하면 이것 분명히, 한 시간 전에 나온 거면 이미 직원들이 알고 보고를 했어야 돼요. 아니면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기사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전혀 대응을 않고 있다가 저희가 먼저 알고 질의하니까 그때서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엄중한 시기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조금 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 채현일 위원** 알겠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채현일 위원** 예, 그것 말씀해 주세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저희 조치가 소극적으로 보일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총장으로 들어와서 생각했던 부분이 공정한 선거관리의 전제조건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사무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정치적 중립성의 시비에 걸리지 않는 방안까지 생각을 하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는 좀 소극적이고 그렇게 비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과 같이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질책을 해 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잘 고치든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선관위사무처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위원회의 잘못이 정치적 중립성의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신뢰가 좀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저희 선관위 업무, 소위 선거관리 업무를 공정하게 할 수 있게 여당이나 야당이나 위원님들께서 신뢰를 좀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정훈** 마치셨습니까?
- 채현일 위원** 예.
-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오늘 회의 과정에서 나온 몇 가지 것들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 인혁처.
- 인사혁신처장 연원정** 예, 위원장님.
- 위원장 신정훈** 보고할 수 있습니까?

○ **인사혁신처장 연원정**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정무직 면직 절차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마는 정무직이 사의를 표명하면 다 이렇게 사표 수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인사권자가 수용할 경우에 한해서 해당자에 대한 면직 절차가 전자결재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 인사처에서는 면직 절차 진행되는 것의 형식적인 절차를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고요. 이 2건 모두 면직 재가 절차가 완료되어서 면직 발령 통지를 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을 국회에도 통지한 바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진실화해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행안부 그리고 국방부 이런 것들이 현행법 수준에 가까운 그런 범죄 혐의가 만천하에 공개돼 있잖아요. 그게 인혁처에서 아무런 제안과 심사 없이 그냥 그렇게 행정절차만 마무리하는 겁니까? 그게 인혁처의 할 일입니까?

이를테면 범죄 혐의가 있는 일반 공직자들이 그래서……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도피의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퇴직금이라든가 다양한 이익의, 이해관계의 이유도 있고…… 이 부분은 그것보다 훨씬 더 염중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사표 내면 다 수리되는 것이 합리적인 절차라고 생각돼요? 인사혁신처가 그런 상황들을 관리하라고 있는 것 아니에요?

○ **인사혁신처장 연원정** 위원장님,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희 인사혁신처는 직업공무원에 관해서는 그런 부분은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정무직 인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한 바가 없습니다. 이런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왜 그런 절차를, 인사혁신처에서 절차를 대행합니까?

○ **인사혁신처장 연원정** 그것은 인사권자의 보좌기관으로 형식적인 절차만 대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모경종 위원님,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모경종 위원** 인사권자의 보좌기관으로서 업무를 대행만 하고 있다고요?

○ **인사혁신처장 연원정** 예, 정무직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 **모경종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다른 분께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인사혁신처장은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지적 한마디라도 하셨습니까? 문제 제기를 하시길 하셨어요, 보좌하면서? 말 그대로 보좌기관이라고 합시다. 보좌를 그러면 제대로 한 겁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십니까, 처장님?

○ **위원장 신정훈** 행안부장관 직무대리에게 한 거지만 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무회의 관련 소집 통보는 누가 합니까?

○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저희 실무적으로는 의정관이 하고 있고요…… 의장이 소집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의장이 누구입니까?

○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대통령입니다.

○ **위원장 신정훈** 대통령이 소집을 하는데 그 과정을 어떻게, 실무적인 통보의 절차가 어떻게 돼요? 대통령이 직접 전화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실무적으로 대통령실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국무총리실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렇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위원장 신정훈 두 번째로는 이런 회의 절차에 증명하는 서면, 서류적 조건들이 완비 돼 있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회의록이 지금 없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위원장 신정훈 이것은 어떻게…… 국무회의 회의록을 관리하는 행안부 입장에서는 이런 회의록이 없는 국무회의, 특히 반드시 법령에 규정돼 있는, 소위 말해서 계엄령에 대한 심의 과정의 회의록이 없는 회의는 어떻게 봅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일단 흠결이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장 신정훈 흠결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정확히 표현 한번 해 보세요. 아마 법률전문가로부터 자문도 얻었을 테고 내부에서 지금 분명히 거기에 대한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제 판단으로 이게 국무회의 여부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무회의인지 아닌지 자체가. 거기에 따라서 국무회의면 아마 회의록을 작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국수본부장님, 이 회의가 소집권자가 아닌, 소위 말해서 총리에 의해 소집된 회의예요.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심지어는 ‘이 회의가 계엄령 자체에 대해서 부당하기 때문에 말리기 위해서 했다’ 이런 웃기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전혀 법적 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을 한 회의가 정상적으로 국무회의 절차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저희는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저는 총리의 여러 가지 발언 과정에서도 확인했지만 심지어는 본인은 이게 계엄령이 합법적이거나 또 헌법에 부합하거나 그러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치 온몸으로 막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사실상 절차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것은 계엄령 사태를, 계엄령을 합법적으로 용인하고 거기에 동조하고 방조하고 그런 국무회의 소집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도 흠결이 있는 국무회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회의를 여러 가지로 서로 알리 바이가 성립하지 않는 자기 주장을 하면서 국무회의 소집을 했고 또 국무회의 소집 이후에 아무런 합법적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리고 국가의 부처를 통할하는 그런 총리로서의 자기 역할을 전혀 방기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에 동조하고 함께 공조한 그런 총리의 책임에 대해서 엄중히 법률적으로 헌법적으로 규명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마지막으로요, 지금 존경하는 조승환 위원님 안 계셔서 좀 그렇지만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또 내란죄에 대해서는 의도성과 목적성, 국헌 문란의 정도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줬습니다.

그런데 ‘탄핵과 내란의 강은 건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란은 형사적 범죄임과 동시에 정치적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이 문제가 법률로서 또 정치적으로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국회가 본연의 역할들을

충분히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도 죽 회의 진행 과정에서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치밀하게 준비된 치 떨린 비상계엄의 실체, 추악한 전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총칼로 그리고 장갑차로…… 총입니다, 총기, 칼은 못 봤으니까. 장갑차를 앞세운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보고도 내란이 아니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상식과 기본만 알면 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란의 행위를…… 심지어는 자당의 대표를 체포하라는 그런 발언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우리가 임명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한 그 당사자들에 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이라고 하지 말자, 아직 판단이 이르다……

저는 사법적 판단을 더 받아 보자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사법적으로 판단에 의해서 완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 장악, 서버 탈취 준비 과정이나 출근하는 직원들을 두건을 씌워서 수갑을 채워서 체포하라는 진술도, 엽기적인 그런 진술도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부끄럽고 치 떨리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을 했다고 해당 판사를, 현직 판사를 체포하라는 명령이 지금 행안위의 수감 대상자였고 항상 주요한 기관의 책임자였던 조지호 청장으로부터 확인되고 있습니다.

부끄럽고 치 떨리는 것은 최소한의 행정절차도 회의록도 없는 불법적인 쿠데타를 보고도 내란인지 아닌지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주술과 점괘, 점집 이게 내란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참 부끄러운 반란의 어떤 모습입니다.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이렇게 통쳤듯이 비상계엄을 국회에 대한 경고였다 이렇게 통친다고 있는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밝히는 것은 사법적 판단 이전에 정치적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묻고 또 묻는 겁니다.

5000만 일반 국민이 이 사실을 똑똑히 보고 있고 또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탄핵의 강을 건넜다, 내란의 강도 건넜다 이렇게 해 버린다면 어느 국민이 우리 국회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을 밝히는 것은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정당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끝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정말 저희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저는 함께하고 있는 동료 위원님들의 인격이라든가 또 이것을 빙자해서 정치적인 부당한 책임을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진실을 접근하고 국가 최고의 비상사태, 이 불행한 역사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국회가, 특히 행정안전위원회가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기관의 중인들이 정말 한 치의 숨김도 없이 이것을 드러내고 규명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런 과정에서 형사적 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장은 엄중한 사명감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특히 오늘 지적된 대통령비서실·경호처 그리고 정당의 대표이면서도 국회 침탈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추경호 원내대표 등등 지적되는 그런 어떤 사람도 주저함이 없이 또 가림이 없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거기에 걸맞는 형사적·역사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모경종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30초만 딱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모경종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경종 위원**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는 과정 중에 이호영 경찰청장직무대행이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한 게 있어서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 확인을 요청드리고 정정을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 트랙터를 운전한 사람이 음주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버젓이 했는데 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저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개탄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주요 도로여서 집시법에 따라서 통제를 했다라고 했는데 집시법 12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에 의한 주요 도로를 이야기하고 있고 대통령령을 확인해 본 결과 남태령 도로는 주요 도로가 아닙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경찰청장직무대행이 확인되지 않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꾸짖어 주시고 정정을 하길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상식 위원님 똑같은 이야기면……

○**이상식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30초만……

○**이상식 위원** 예.

위원장님이 아까 안 계셔서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면서 검찰의 국수본에 대한 부당한 수사 방해 의도 이것을 면출 것을 우리가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달라고 제가 아까 간사님을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정춘생 위원님.

○**정춘생 위원** 첫 질의에서 제가 남태령 차벽 봉쇄에 대해서,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차벽 봉쇄에 대해서 경찰청장직무대행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주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마지막 부분에 정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지금 두 분의 위원님들에 대한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위원장님, 지금 선거연수원 관련한 기사에 대해서 확인하고 보고해 달라고 하셔서 지금 내용이 전부……

○**위원장 신정훈** 먼저 해 주십시오. 간단히 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일단 기자가 민간인 관련자로부터 제보받아서 기사를 작성했는데 저희 위원회에 사실 확인이나 이런 사전 취재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기자에게 기사가 오보이니 정정을 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당시 96명의 연수, 선관위 공무원들이 있었고 이 중 민간인 8명까지 포함해서 104명이 숙박 중이었습니다.

연수원 직원 2명, 무전기 소지자 당직자와 생활지도 교관이 주차 관련으로 생활관 이용자에게 차량 이동 주차의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3층으로 올라간 사실이 있습니다.

계엄군은 연수원 청사 내에 들어온 사실도 없고 사복 차림의 남성들이 그 두 사람 이외에 무전기를 들고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통제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 외부에서 식사를 하고 늦게 복귀한 직원 2명은 경찰이 신분 확인 후에 출입을 하였고 별도로 숙박자들에 대해서 감금한 사실이 없음을 지금 확인하였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총장님, 두 분의 위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김종양 위원 저 10초만 이야기할게요.

○위원장 신정훈 그래요? 예.

○김종양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하셨는데 사실 경찰이 그것 관련해서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거나 오히려 지나친 면이 있다고 그러면 또 모르지만 사실 경찰 입장으로서는 자기들의 어떤 정당한 직무 집행이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 그래 가지고 무조건 경찰에게 책임을 지우고 경찰청 최고 책임자에게 사과하라 하는 이런 이야기는 좀 신중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기에서 문제 발생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발생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야말로……

○이광희 위원 위원님, 계엄군과 함께, 경찰이 함께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종양 위원 제가……

○이광희 위원 지금 무슨 얘기…… 처음부터 다시 얘기할까요?

○김종양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이광희 위원 아니, 지금 의사진행발언이라 할지라도 그 얘기는 취소해 주세요. 지금 계엄군과 함께 작전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못 한다고요? 당연한 일을 했다고요?

○김종양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집회·시위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경찰의 어떤 그런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광희 위원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잖아요!

○위원장 신정훈 이광희 위원님, 잠깐만요.

○김종양 위원 무조건 옹호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모경총 위원님이나 정춘생 위원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해야 된다라는 경찰의 기본적인 업무를 다시 한번 촉구하셨고 또 그때 당시의 현장 상황이 경찰로서는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청장께 앞으로 경찰의 시위 관련해서 진압이라든가 시위를 관리함에 있어서 최소한 국민들의 기본권이 실현될 수 있는 방향에서 집회를 관리해 주시고, 차벽과 같은 방식으로 강압적·강제적 이런 집회를 차단하는 것은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거든 최소한 보장을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직무대리께서 의지를 한말씀 해 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모경총 위원님 말씀하신 주요 도로 문제는 남태령이 아니

라 신고된 한남대로가 주요 도로인데 저희들이 그것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음주는 현장 경찰관이 현지에서 확인해서 했다는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사과 문제는 저희들은 집시법에 따라서 사실 법 집행을 현장에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직무대행인 제가 사과까지 하기에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시시비비가 다 가려졌을 때 그때 사과하게 되면 하겠습니다.

○모경종 위원 현장에서 음주를 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아니, 증거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경종 위원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고만 받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모경종 위원 음주 측정을 한 것도 아니고.

○위원장 신정훈 모경종 위원님, 우선은 이 정도로 하고.

그런 발언도 여러 가지 집회 주최 측에 대한 명예와 관련돼 있는 문제니까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신정훈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모든 질의가 끝났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현안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셨던 자료를 국회법에 따른 위원회 의결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 간사님들 간에 논의가 있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으로서 향후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의 보다 충실한 운영을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의결로써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8시29분)

○위원장 신정훈 이에 국회법 제77조와 제71조에 따라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사일정 제88항으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88. 현안 질의 관련 서류제출 요구의 건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88항 현안질의 관련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조은희 위원 지금 민주당 등 야당이 현안질의 관련해서 위원회 의결로 채택하려는 서류제출 목록을 봤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 자료 요청 근거를

벗어난 내용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권한을 넘어선 일방적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문재인 정권 등 과거 정부에서 관련 자료 목록들이 국회에 제출된 선례가 있는지 위원장께서는 먼저 확인해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엄중한 시국이라 해서 요청하는 자료를 다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감정에 호소하는 것 이지 법적 정당성이 뒷받침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장관 관용차의 블랙박스, 청사 본부 통신 내역 등을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경찰청과 공조해서 직접 수사를 하겠다는 의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둘째, 경찰·검찰에 출석하여 진술한 행안부, 경찰, 선관위 등 직원 명단 및 해당 직원의 인사기록카드를 비롯하여 관련된 수사관 전체 명단 등 수사와 관련된 대부분의 진행 상황을 국회가 상시 보고받으려 하는 점,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야당이 수사 개입을 하겠다는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셋째, 국가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각종 군·경찰의 문자 내용 및 통신기록 일체 등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기밀 자료를 무단 열람하려는 것은 위헌적인 결정입니다.

오늘 여야 합의 없이 위법적인 자료 요청이 위원회 의결로 채택된다면 국민의힘은 절대 동의할 수 없고 향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조승환 동료 위원에 대해서 이름을, 실명 거론하면서, 지금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 ‘대도시 출신 국회의원은 인구소멸지역의 문제를 모른다’ 이렇게 해서 신상 발언까지 하고 정회가 되고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 동료 위원인 조승환 위원의 발언을 빌미로 삼아서 말씀하시는 것은 같은 위원회 활동을 하는 동료 위원에 대한 예의가 저는 좀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동료 위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조은희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신 자료제출 요구 그 내용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어느 누구도 개인정보라든가 아니면 수사상에 무언가 좀 압력을 가하는 부당한, 소위 말해서 수사상의 무언가 좀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충분히 관련 법에 의해서, 또 증언감정법에 의해서 제한을 두는 규정 내에서 판단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 열람의 방식이든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제출 요구가 이 엄중한 상황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고 다만 개인정보, 부처에서 판단을 하고, 관련 법에 의해서 판단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수사상 여러 가지 제출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들은 함께 사유를 적어서 명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비공개가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열람의 방식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だ. 다만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수사기관의 판단까지 또 이렇게 침해하는 그런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함께 주의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발언하는 과정에서 동료 위원에 대한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그분도 지

금 우리 위원님들의 발언이라든가 위원회 운영에 따르는, 내란죄에 대한 규정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규명 노력에 대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함께 제기하고 있고 또 그런 내용들을, 내란죄를 사법의 영역으로 맡기자 하는 그런 내용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승환 위원님 개인에 대한 비난과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유감의 말씀 드리고, 회의록에 대해서 제가 뭐 특정인을 거론했다면 그 부분 까지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회가 치열한 정치적인 의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다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서류제출 요구는 총 93건입니다. 현재 접수된 서류제출 요구는 의결되는 즉시 각 기관에 송부해서 12월 31일 화요일 정오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28조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은희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의가 있으셨기 때문에 표결로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거수로……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나뉘므로 표결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국회법 71조와 112조에 따라서 거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22인 중 출석 12인, 찬성 12인으로 의사일정 88항 현안질의 관련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중에 이상식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결의안 채택은요 우리 위원회가 별도의 협의를 거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중에 윤건영 위원님, 배준영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은 서면답변서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정기회로부터 시작된 행정안전위원회의 올 한 해 법안심사 일정이 끝났습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모두는 정기회 기간 동안 열흘간 또 총 35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두텁게 지키기 위한 정책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네 차례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일곱 차례의 법안1소위원회, 세 차례의 법안2소위원회를 거치면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통해서 2023회계연도 결산과 2025년도 예산안 그리고 총 193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어느 상임위원회보다도 두드러진 성과를 내 주신 윤건영 간사님과 조은희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를 함께 하면서 국회의 안건 심의를 지원해 주신 정부부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회 직원 여러분과 보좌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고 각자의 자리에서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의정기록과와 경호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산회)

○출석 위원(22인)

김상욱 김성희 김종양 모경종 박정현 배준영 신정훈 양부남 용혜인 위성곤
윤건영 이광희 이달희 이상식 이성권 이해식 정동만 정춘생 조승환 조은희
채현일 한병도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문상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디지털정부혁신실장 이용석
지방재정경제실장 한순기
안전예방정책실장 김용균
국가기록원장 이용철
의정관 김한수
경찰국장 박현수
지방행정국장 조영진
대통령기록관장 이동혁
정책기획관 임철언
기획재정담당관 박성민

인사혁신처

처장 연원정
기획조정관 김성훈
인사혁신국장 유승주
윤리복무국장 이은영
경찰청
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기획조정관 도준수

수사기획조정관 윤승영
혁신기획조정담당관 어윤빈
수사기획담당관 전창훈
서울특별시경찰청
청장직무대행 최현석
수사부장 임경우
서울영등포경찰서
서장 강상문
소방청
청장 허석곤
화재예방국장 홍영근
장비기술국장 윤상기
기획재정담당관 고영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박선영
상임위원 이옥남
기획운영관 한성원
운영지원담당관 김민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용빈
기획조정실장 조규영
정보관리국장 김수연